

해외 저작권 보호체계 효율화를 위한 방안 연구

(A study on measure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copyright protection system abroad)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전 성 태

2022. 12.

최종보고서 초록

관리번호	KP 연구 2022-02	연구기간	2022년 7월 18일 ~ 2022년 11월 15일		
정책과제명	(한글) 해외 저작권 보호체계 효율화를 위한 방안 연구 (영문) A study on measure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copyright protection system abroad				
연구책임자 (연구수행기관)	전성태	참 여 연구원수	총 4명	연구 용역비	25,000천원
요 약				면수	130면
<p>○ 정부정책기조 및 대내외 환경 분석결과를 토대로 해외 저작권 보호 체계 효율화를 위한 단계적, 장기적 방안을 도출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단기 방안으로 (i) 해외 저작권 보호 업무에 대한 충분한 파악 등 내실 강화, (ii) 해외 저작권 보호 및 침해대응 컨트롤 타워 구축, (iii) 국내 저작권 보호 중심에서 해외 저작권 보호와의 균형을 맞춘 체제로 전환 방안을 제시함 - 장기적 방안으로 (i) 해외 국가의 저작권 정보제공 기반 구축 강화, (ii) 권역별 거점 저작권 해외 사무소 신설/확대 방안을 제시함 - 각종 지표/지수를 활용하여 해외 사무소 확대지역에 대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함 <p>○ 본 연구를 토대로 해외 저작권 보호체계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제언함</p>					
색인어	한글	저작권, 보호체계, 해외사무소, 침해방지			
	영어	Copyright, Protection System, Overseas Offices, Infringement Prevention			

〈요약문〉

□ 연구의 목적 및 배경

- 한류 콘텐츠의 지속적 성장 및 확산에 따른 저작권 침해피해 증가에 따라 해외에서 우리나라 저작권의 보호를 위한 대책에 대한 요구가 증가
- 2020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국내외 필요한 곳에 사무소, 지사 또는 주재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
- 저작권 해외 사무소 중 중국(북경) 사무소를 제외하고 베트남, 필리핀, 태국 사무소가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 이관되어 운영
-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우리나라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효율적인 체계 구축 필요성 증대
- 또한 2022년 7월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미디어·콘텐츠산업의 컨트롤타워 설치 추진, 저작권 보호로 문화주권 강화 등이 포함
-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른 국내외 저작권보호 전문기관으로서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성 증대
-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에서 우리 콘텐츠나 저작물의 저작권이 보호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해외에서의 저작권 보호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한 중장기적 발전방안 마련하는 것임

□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우리나라와 주요국(미국, 유럽, 일본)의 해외에서의 저작권 보호체계를 조사하여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
- 국내 기관 중 해외사무소를 두고 있는 기관의 해외 사무소 운영 현황을 조사하여 비교 분석
- 저작권 해외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콘텐츠 기업 대상 설문조사를 통한 시사점 도출
- 해외사무소를 두고 있는 국내 기관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해외 저작권 보호체계 효율화 방안을 모색

- 정부의 정책기조 등을 살펴보고, 해외 저작권 보호 체계의 효율화하기 위한 단계적, 장기적 방안을 도출

□ 주요 연구 내용

-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저작권 보호체계 현황 분석

- **(미국)** 대통령실 소속의 지식재산집행조정관을 중심으로 각 정부부처에서 지식 재산 보호집행 관련 전문기관을 두고 해외에서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 감시, 집행 업무 수행하고 있으며, 각 부처에 지식재산 집행 부서라는 내부조직을 두는 전략을 취함
- **(유럽)** 하나의 지역 공동체로서 유럽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EUROPOL, Eurojust 등 관계 기관 및 각 국가별 협력을 통하여 해외에서 유럽연합 국가들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시스템
- **(일본)** 콘텐츠 및 저작물의 육성, 보호 등의 정책 수립과 지원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가 중심이 되고, 그 부처를 지원하는 지원기관을 두고 해외에서의 자국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시스템
 - 일본은 공공기관을 두지 않고 회원사를 가진 민간 기구가 해당 부처의 지원을 받아 운영
- **(한국)** 정부부처 산하의 공공기관과 회원사를 가진 민간 기구가 협업하여 해외에서의 자국민의 저작권 보호업무를 수행
- 이상을 정리하면 주요국의 해외 저작권 보호체계는 이하와 같음

〈국내·외 주요국가의 해외 저작권 보호체계 비교〉

구분	한국	미국	유럽	일본
관계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집행조정관 (고위자문위원회, 집행자문위원회) - 법무부, 국무부 및 상무부는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에 중점을 두고 전담하는 전문 부서 및 프로그램을 운영 - 저작권청(Copyright Office)과 특허청(USPT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집행위원회 - 유럽지식재산청 - 유럽특허청 	지적재산전략본부, 문화청, 경제산업성

구분	한국	미국	유럽	일본
관계 기관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해외진흥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HS/ICE 주도의 국가 지식재산권 조정센터(NIPCC) - 법무부 형사과의 컴퓨터 범죄 및 지식재산권 부서(CCIPS) - 미국 국무부 국제지식재산권집행 사무소(IPE) - 미국 상무부 표준 및 지식재산 사무소(OS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연합 법집행협력청 (EUROPOL) - 유럽연합 형사사법협력청 (Eurojust) - 유럽사기방지청 (European Anti-Fraud Office) - 공동 조사팀에 대한 국가 전문가 네트워크 (JITs 네트워크) - 유럽 사법 사이버 범죄 네트워크 (EJCN) - 민사 및 상업 문제의 유럽 사법 네트워크(EJN) - 유럽 지식재산권 검사네트워크 (EIIPN) - 유럽이사회의 관세협력작업반 (CCW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해외 유통촉진기구 (CODA) - 일본무역진흥 기구(JETRO)
주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저작권사무소 구축운영 - 해외 불법복제물 침해대응 지원 - 국제 저작권 보호인력 워크숍 -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 - 민간주도 해외저작권 보호체계 기반 구축 사업 - 해외 저작권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기관별 해외에서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 감시, 집행 업무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권 등 지식재산 범죄에 대한 수사 등 다양한 관계 기관과 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권 교육 및 인식제고 - 디지털포렌식 등 국제 집행 및 교류 - 광고억제, 필터링 등 - 주요국 저작권 등 정보조사 및 제공

○ 우리나라의 해외 저작권 보호 현황 분석

- (국내 주요기관의 해외 사무소 운영사례 조사) 주요 기관별 역할, 운영 인력, 운영방식, 지원사업을 비교하면 이하와 같음

〈주요 기관의 해외사무소 운영 현황 비교〉

	역할	운영인력	운영방식	지원사업
KOTRA IP-DESK	해외에서 우리나라 산업재산권 보호 관련 각종 지원 사업 실시	해외사무소 인력 (17개 사무소: 총 30명)	- 주요국에 해외사무소 설치 - 특허청 예산지원(현지인 인건비+지원사업비)	- 지식재산 상담지원, 협력채널 구축 등 직접수행사업 - 상표디자인 출원비용 지원 등 비용지업사업 실시
해외문화홍보원 (정부기관)	세계속 한국문화 확산 및 정책 소통을 위한 국가 이미지 제고	- 28개국 33개소에 재외문화원을 운영 - 8개국 9개소에 문화홍보관을 운영	- 총 32개 문화원 중 23개 문화원이 소규모 임차건물 사용, 코리아센터 5개소 운영(LA, 북경, 상해, 동경, 파리)	-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 K-POP 아카데미 운영, 한식문화교육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비즈니스 센터	콘텐츠 관련 해외 진출 기업 지원	8개국(28명)에 해외비즈니스센터를 두고 있으며, 2개국(2명)에 마케터를 운영	- 현지건물 임차	해외 바이어 매칭, 해외동향정보 제공, 해외진출상담, 현지네트워크 구축 등의 업무
한국저작권보호원/한국저작권위원회	해외진출 기업 등의 저작권 보호지원	태국, 필리핀, 베트남 3개국 11명(이상, 한국저작권보호원), 중국(북경) 사무소(한국 저작권 위원회)	- 현지건물 임차	저작권 등록지원업무, 네트워킹 및 교류업무, 저작권 관련 정보제공 및 기타업무지원, 저작권 인증업무(중국)

- (한국저작권보호원의 해외저작권 보호체계분석)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주요 사업 현황을 토대로 해외 저작권 보호체계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 불법복제물 신고 COPY112 사이트를 통한 해외 저작권 침해신고 및 상담, 보호 요청과 결과 피드백 등과 관련한 업무가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원스톱 피해구제를 희망하는 민원인 입장에서 창구가 불명확하게 느껴질 수 있는 측면이 있음
- 해외 저작권 침해나 보호 관련 민원이나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내용을 접수하고 기관의 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아 처리하는 컨트롤 타워 필요

- 추후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대응을 위해, 해외 저작권 관련 분쟁정보 등 해외 현지 정보를 제공할 필요 있음
- (해외 사무소 근무 경험자를 통한 심층인터뷰(서면)) 태국, 필리핀, 베트남, 중국의 저작권 해외 사무소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사업 운영상의 애로점, 한국저작권보호원 및 정부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함
- (시사점) 한국 정부와 현지 정부와의 MOU 등 적극적인 사전협력 체계구축, 지원사업의 적극적인 홍보 및 저작권 교육, 예산집행의 활용성 제고 등의 시사점을 도출함
- (콘텐츠 기업 대상 설문조사) 해외 저작권 보호 일반, 해외저작권보호지원사업의 현황, 요구정책 및 지원제도 등에 관해 설문조사 실시(총 142개 기업 중 38개 기업이 응답하였고, 최종설문문항까지 응답을 완료한 기업은 28개임)
- (시사점) 해외저작권보호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 현지 정부 및 기관별 대응체계 마련, 국가별 저작권보호 가이드라인 개발 보급 필요

주요 항목	내용
해외저작권보호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맞춤형 해외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前해외저작권보호 이용권 지원사업)”에 대해 아는 기업은 30%정도에 불과 -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마련 필요
현지 정부 및 기관별 대응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현지 기관과 바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 사전에 현지 정부기관, 법무법인 등 직접 대응 가능한 곳과의 협업을 위한 관계망 구축이 필요 - 해외에서의 관련 기관과의 교류 협력을 위한 컨택 포인트에 대한 요구가 있으므로, 전담데스크의 설치가 필요 - 개별 회사가 대응하기 어려운 대상들이며 공동 대응을 위한 중심적인 역할에 대한 기대가 있는 만큼 관련 기업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원 사업 마련 필요
국가별 저작권 보호 가이드라인의 개발 및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별로 저작권 보호에 대한 제도와 정책이 상이한 만큼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공될 필요 - 저작권 보호체계, 징수규정, 분쟁발생시 대응가이드전략이나 매뉴얼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각 기업에 제공

○ 해외 저작권 보호 체계 효율화 방안

- **(중·단기 및 장기적 방안)** 한국저작권보호원의 해외 저작권 보호 체계 분석, 해외 사무소 직원 대상 심층인터뷰, 콘텐츠 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해외 저작권 보호 체계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면 이하와 같음

〈중·단기적 저작권 보호체계 효율화 방안〉

주요 항목	내용
해외 저작권 보호 업무에 대한 충분한 파악 등 내실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사무소의 주된 업무 프로세스, 현지 수사기관, 정보기관과의 네트워크 체계, 현지에서 주로 협력가능한 법무법인 등을 정리할 필요 - 해외 사무소에서 일정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몇 가지 성과지표를 도입하고, 관리할 필요
해외 저작권 보호 및 침해대응 등 컨트롤 타워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저작권 침해나 보호 관련 권리자의 민원이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요청내용을 접수하고 기관의 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아 처리하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 - 해외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업무처리지침’ 등과 같은 내부규정을 만들어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 - KOTRA 해외지재권실(해외사무소),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비즈니스센터 등과 주기적인 교류와 협력
국내 저작권 보호 중심에서 해외 저작권 보호와의 균형을 맞춘 체제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복제물신고 COPY112 사이트 내 해외에서 저작권 침해대응이나 신고를 전담하는 별도 메뉴 구축 필요 -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상의 해외 OSP에게도 경고장 발송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사업 등을 개발

〈장기적 저작권 보호체계 효율화 방안〉

주요 항목	내용
해외 국가의 저작권 정보제공 기반 구축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국가의 정보를 담은 ‘해외 저작권 보호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현지 법제도, 주요 법무법인, 모니터링 회사, 관계 기관의 컨택포인트 등 핵심 정보를 제공할 필요
권역별 거점 저작권 해외 사무소 신설/확대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지부, 지사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 -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에 저작권 침해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 - 설치의 필요성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당위적 근거를 마련 - 해외 사무소 설치기준 등이 필요
유관기관의 해외사무소를 활용하는 방안(파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문화홍보원이나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해외비즈니스센터 등 이미 해외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파견 - 한국에서 파견되는 경우 비자발급 이슈, 해외 노동법이 적용될 경우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해야 하는 경우와 같은 이슈 발생 가능성이 있음

- (해외 사무소 설립 고려 대상국가 도출) 주요국별 저작권무역수지 및 콘텐츠 수출액, 국가별 한류지수 현황. 주요국가의 불법사이트 서버위치 및 국가별 트래픽, 콘텐츠 기업 대상 해외 사무소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설문을 종합하여 향후 저작권 해외 사무소 확대가 필요한 지역을 도출

* 해외 저작권 침해 실태조사 등이 면밀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통계나 지표를 활용하여 파일럿 테스트로서 도출된 것이므로 한계 존재. 향후 보다 정확한 침해실태 조사 등의 자료를 가지고 다양한 변수를 활용해서 다시 분석할 필요가 있음

〈해외사무소 설립이 고려되는 국가〉

구분	국가명
1그룹	미국, 일본, 아랍에미리트, 대만
2그룹	러시아, 말레이시아, 영국, 인도
3그룹	브라질, 인도네시아, 터키

〈 차례 〉

제1장 서론	1
I. 연구의 목적	1
II.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
제2장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저작권 보호체계 현황 분석	5
I. 개관	5
II. 우리나라의 해외 저작권 보호 체계 조사·분석	5
1. 문화체육관광부	5
2. 외교부	6
3. 관련 기관	7
III. 주요국의 해외에서의 저작권 보호 체계 조사·분석	13
1. 미국	13
2. 유럽	23
3. 일본	39
IV.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해외 저작권 보호 체계에 대한 비교·분석	47
제3장 우리나라의 해외 저작권 보호 현황 분석	51
I. 개관	51
II. 국내 주요기관의 해외사무소 운영 사례 조사	51
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51
2. 해외문화홍보원의 재외문화원	56
3.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비즈니스센터	57
4. 한국저작권보호원/한국저작권위원회 해외사무소	58
5. 주요 기관별 해외사무소의 운영인력, 방식, 특징, 역할 등 비교	62

III. 해외 저작권 보호 현황 조사	63
1. 한국저작권보호원의 해외저작권 보호체계 분석	63
2. 해외 사무소 근무 경험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설문)를 통한 사례조사 ..	65
3. 해외 저작권 보호 체계 효율화를 위한 콘텐츠 기업 대상 설문조사 ..	69
IV. 소결	79

제4장 해외 저작권 보호체계 효율화 방안 81

I. 개관	81
II. 정부의 저작권 산업분야의 정책과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역할	81
1. 정부의 정책 기초	81
2.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역할	85
III. 해외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한 단계적 전략 방안	86
1. 중·단기적 방안	86
2. 장기적 방안	88
IV. 저작권 해외 사무소 확대 가능 지역 도출(시뮬레이션)	90
1. 주요국별 저작권 무역수지 및 콘텐츠 수출액	90
2. 주요국별 한류인기도 및 한류성장도	93
3. 주요국가의 불법사이트 서버위치 및 국가별 트래픽 발생	95
4. 콘텐츠기업 대상 해외 사무소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설문	97
5. 종합	98

제5장 결론 및 제언 101

I. 요약	101
II. 제언	103

〈표 차례〉

〈표 2-1〉 2020년 본부-공관 및 공관들 간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7
〈표 2-2〉 한국저작권보호원의 해외사업부 소관 주요 사업 현황	8
〈표 2-3〉 한국저작권보호원 해외사무소	8
〈표 2-4〉 해외 불법복제물 침해대응 절차	8
〈표 2-5〉 최근 국제 저작권 보호인력 워크숍 등 사업성과	9
〈표 2-6〉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	9
〈표 2-7〉 한국저작권보호원의 해외 저작권 보호 관련 주요 업무	10
〈표 2-8〉 최근 5년간 해외 법률 컨설팅 및 구제조치 지원 현황	11
〈표 2-9〉 해외 저작권 합법이용 활성화 서비스 절차	12
〈표 2-10〉 IP 집행에 관한 미국 부처 간 전략계획위원회의 구성	15
〈표 2-11〉 USTR의 지식재산 집행	18
〈표 2-12〉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해외 저작권 보호체계 비교	48
〈표 3-1〉 연도별 IP-DESK 설치 현황	52
〈표 3-2〉 2021년 현재 IP-DESK 설치 국가	53
〈표 3-3〉 IP-DESK 전체인력 : 총 30명	53
〈표 3-4〉 해외지재권실 전체 인력	53
〈표 3-5〉 IP-DESK 사업내용	54
〈표 3-6〉 '21년 IP-DESK 사업실적 총괄표	55
〈표 3-7〉 2022년 재외문화원 예산현황	57
〈표 3-8〉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비즈니스센터 및 마케터 인력현황	57
〈표 3-9〉 저작권 해외사무소 현황	58
〈표 3-10〉 모니터링을 통한 침해 대응조치	59
〈표 3-11〉 태국 내 합법 및 불법 사이트 현황	60
〈표 3-12〉 모니터링을 통한 침해 대응조치	60
〈표 3-13〉 모니터링을 통한 침해 대응조치	61
〈표 3-14〉 주요 기관의 해외사무소 운영 현황 비교	62
〈표 3-15〉 설문지 구성	69
〈표 4-1〉 220428_김도식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회 전문위원 브리핑내용	82
〈표 4-2〉 'K-콘텐츠의 매력을 전세계로 확산' 국정과제의 목표 및 내용	84
〈표 4-3〉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	85
〈표 4-4〉 유형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90

〈표 4-5〉 저작권 무역수지(국가별)	91
〈표 4-6〉 음악·영상 저작권 무역수지(국가별)	92
〈표 4-7〉 콘텐츠산업 지역별, 연도별 수출액 현황	93
〈표 4-8〉 국가별 한류현황지수 변화	94
〈표 4-9〉 한류심리지수 변화	95
〈표 4-10〉 불법사이트 서버위치 및 국가별 트래픽 발생국	96
〈표 4-11〉 저작권 트래픽 발생 사이트(침해) 상위 10개국	97
〈표 4-12〉 해외사무소 선호지역	97
〈표 4-13〉 무역수지, 한류지수 및 저작권 침해 주요국 요약	98
〈표 4-14〉 범주 범위에 따른 국가구분	98
〈표 4-15〉 해외사무소 설립이 고려되는 국가	99

〈그림 차례〉

[그림 2-1] 미국 지식재산집행조정관실	14
[그림 2-2]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국가지식재산조정센터	17
[그림 2-3] IPR 센터의 공동협력 파트너사	17
[그림 2-4] IPR 센터의 민간 영역 파트너사	18
[그림 2-5] 미국 법무부	19
[그림 2-6] 국제지식재산집행 사무소	21
[그림 2-7] EU의 지식재산 정책 추진체계	24
[그림 2-8]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 및 지식재산 보호체계	39
[그림 2-9] 일본 문화청 조직도	40
[그림 2-10] JETRO 지식재산보호 홈페이지 화면	47
[그림 3-1] IP-DESK 소재 현황	52
[그림 3-2] 재외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현황	56
[그림 3-3]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비즈니스센터 현황	58
[그림 3-4] 한국저작권보호원 조직도	63
[그림 3-5]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해외사무소 뉴스 코너(중국 저작권관련)	65
[그림 3-6] 응답기업의 종업원 수	70
[그림 3-7] 응답기업이 종사하는 콘텐츠 분야	70
[그림 3-8] 응답기업의 진출국가(중복응답)	71
[그림 3-9] 응답기업의 진출예정국가(중복응답)	71
[그림 3-10] 해외저작권보호 서비스 이용경험	72
[그림 3-11] 기업규모별 해외저작권보호 서비스 이용경험	72
[그림 3-12] 해외저작권 보호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기업이 이용한 서비스 (중복응답)	73
[그림 3-13] 해외저작권 보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중복응답)	73
[그림 3-14] 해외저작권보호의 애로사항(중복응답)	74
[그림 3-15] 해외저작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중복응답)	75
[그림 3-16] 맞춤형 해외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 인지유무	75
[그림 3-17] 이용한 해외사무소	76
[그림 3-18] 해외사무소에서 이용한 서비스	76
[그림 3-19] 해외사무소 추가 개소 선호 국가	77

[그림 3-20]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해외사무소 추가 개소 선호 국가	77
[그림 3-21] 미주 지역의 해외사무소 추가 개소 선호 국가	77
[그림 4-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경영전략체계	82
[그림 4-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세부조직도	83
[그림 4-3] 국가별 한류지수 현황	94

제1장 서론

I. 연구의 목적

저작권은 콘텐츠 산업은 물론 문화경제의 중요한 밑거름이자, 문화산업 향상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상품의 생산과 판매를 통한 배포, 소비를 통한 이용과 재생산을 통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다.

우리나라 저작권 산업의 부가가치는 2019년 기준으로 181조 7,7117 억원, 경제 기여도(전체 GDP에서 저작권이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중)는 9.4%인 것으로 나타났다.¹⁾ 2022년 9월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를 보면, 수출은 93억 8천만 달러, 수입은 90억 1천만 달러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국내 대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출 증가 등으로 산업재산권 적자폭이 축소되고 문화예술저작권이 케이(K)-콘텐츠 수출 호조 등으로 견실한 흑자 흐름을 지속한 데 기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산업재산권은 3억 7천만 달러 적자를, 저작권은 8억7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저작권에서는 연구 개발 및 소프트웨어저작권(4억9천만 달러)과 문화예술저작권(3억8천만 달러) 모두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한류가 전세계로 퍼져나가 우리나라에 경제적 가치로 돌아오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새로운 미디어의 출현 등에 따른 저작권 침해도 증가하고 있다.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한 합법적인 경로가 늘어남과 동시에 불법 유통경로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크웹(Dark Web)이나 딥웹(Deep Web)도 이에 해당된다.²⁾ 이들은 새로운 불법복제물 유통경로로 부상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디지털 콘텐츠 소비 확대와 더불어 국내·외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도 급증하고 있다. 코로나 발생 전과 비교하여 디지털 콘텐츠 이용과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1)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산업의 경제기여도 조사, 2021, 9. 25면.

2) 다크웹(Dark Web)은 암호화된 네트워크에 존재하며 일반적인 검색 엔진이나 일반적인 브라우저를 사용해서는 찾거나 방문할 수 없는 특정 부류의 웹 사이트를 가리키는 용어다. 딥 웹(Deep Web)은 검색 엔진이 찾지 못하는 모든 웹 페이지를 나타낸다. 따라서 '딥 웹'은 '다크웹'을 포함하지만 그 외에도 모든 사용자 데이터베이스, 웹메일 페이지, 등록이 필요한 웹 양식, 유료 결제를 통과해야 하는 페이지도 포함한다. 이런 사이트는 무수히 많고 그 대부분은 일상적인 용도를 위해 존재한다. (<<https://www.itworld.co.kr/news/105740#csidx09a453db1be09f4abe6cbdd7a663688>>)

영국의 경우 자택 격리(lockdown) 상황이 시작된 2020년 2월부터 4월말 기간 동안에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접근이 두 배 이상 증가, 같은 기간에 개봉한 영화는 온라인 상에서의 불법 스트리밍 링크와 사이트를 통한 접근이 3배 이상 급증 (FACT 영국 지식 재산권 보호기구 조사 결과)하고 있으며, 저작권 침해 행위 추적 및 조사회사 Muso도 FACT와 유사한 조사를 수행한 결과, 올해 3월 동안 불법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사이트에 대한 트래픽이 6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³⁾

한류 콘텐츠의 지속적 성장 및 확산에 따른 저작권 침해피해 증가로 인해 해외에서 우리나라 저작권의 보호를 위한 대책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0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 필요한 곳에 사무소, 지사 또는 주재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도입되었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 공공기관 업무조정 계획'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관할하고 있던 저작권 해외 사무소(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가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 이관을 추진하게 되면서 해외 사무소의 기능조정 및 사무소가 증설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저작권 해외 사무소 중 중국(북경) 사무소를 제외하고 베트남, 필리핀, 태국 사무소가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 이관되어 운영되고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에 해외 사무소를 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한국저작권보호원이 가지고 있는 온라인 모니터링,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수사지원, 정보기술, 법률 컨설팅 등 저작권 보호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우리나라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또한 2022년 4월 새정부 인수위원회 бри핑에서 'K-콘텐츠의 초격차 산업화'를 국정과제로 선정·발표하였다. K-콘텐츠를 산업화하기 위하여 인수위에서는 미디어·콘텐츠산업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문화수출지원기관을 물리적, 기능적으로 연계하여 '문화산업 분야 코트라'와 같은 형태의 재편을 언급한 바 있다. 또한 2022년 7월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도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이 포함되었고, 미디어콘텐츠산업의 컨트롤타워 설치 추진, 저작권 보호로 문화주권 강화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새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국내외 저작권보호 전문기관으로서 한국 저작권보호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작권 해외 사무소 이관에 따른 행정상, 저작권 보호지원 등에 대한 공백을 최소화하고, 해외에서 우리 콘텐츠나 저작물의 저작권이 보호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해외에서의 저작권 보호체계를 효율화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특히 현재 한국저작권보호원의 해외 저작권 보호체계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외 사무소 확대를 비롯하여 단계적·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제11호, 2020. 6, <<http://www.copyright.or.kr>>

II.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에서의 저작권 보호 체계의 효율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한다.

첫째, 우리나라와 주요국(미국, 유럽, 일본)의 해외에서의 저작권 보호체계를 조사하여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둘째, 국내 기관 중 해외사무소를 두고 있는 기관의 해외 사무소 운영 현황을 조사하여 비교 분석한다.

셋째, 해외에서 저작권 보호의 현황 및 제약요소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저작권 해외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해외에 진출하거나 모색하고 있는 국내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하여 해외 저작권 보호에 관한 애로사항, 지원요구사항, 국내 기관의 해외 저작권보호 관련 서비스 이용 현황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넷째, 해외사무소를 두고 있는 국내 기관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해외 저작권 보호체계 효율화 방안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정책기조 등을 살펴보고, 해외 저작권 보호 체계의 효율화하기 위한 단계적, 장기적 방안을 도출한다.

제2장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저작권 보호체계 현황 분석

I. 개관

우리나라의 저작권을 해외에서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체계의 현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저작권 법률, 제도를 비롯하여 국제적인 보호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미국, 유럽, 일본의 저작권 보호체계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민간 기관에 대한 현황, 역할, 주요업무, 특징 등을 비교하고 우리나라의 해외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미국, 유럽, 일본의 지식재산 보호체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우리나라의 해외 저작권 보호 체계 조사·분석

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 및 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수립·시행, 저작권 관련 산업발전 기반을 강화하는 등 저작권 분야를 총괄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온라인 재택 모니터링단을 지원하고, 온라인사업자 등과의 민관 협력 확대를 통해 불법복제물의 신속한 삭제·전송 중단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의 삭제, 복제 전송자에 대한 경고 등 시정권고를 하고 있으며, 오프라인상 불법복제물에 대하여는 수거·폐기 및 삭제 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관련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저작권 분쟁 조정부를 두고 있으며,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 거래 관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범부처·공공·권리자단체의 합동 협의체인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운영하여,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관 공동대응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저작권 침해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018년 한국저작권보호원 내에 저작권 침해대응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였으며,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콘텐츠 불공정 피해 신고 접수 및 법률 컨설팅을 지원하는 콘텐츠공정상생센터를 두어 콘텐츠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해외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외 저작물 합법 유통을 위한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저작권에 관한 국제협력을 강화확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미래 저작권 환경에 적합한 법제도 개선방향을 연구하고 디지털·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권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표준계약서 활용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 존중 문화의 확산을 위해 직무 교육, 소프트웨어 보호 교육 등 저작권 인식 제고 교육을 여러 학습 대상별로 시행하고, 캠페인을 개최하거나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식으로 저작권 보호에 관한 홍보도 진행하고 있다.

2. 외교부

외교부는 현지 진출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40개의 지식재산권 중점 공관⁴⁾을 두고 각 지식재산권 담당관으로 하여금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외교부는 지식재산 중점 사안 발생 및 정책 여건 변화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재외공관에 침해대응 지침을 내리는 등 지식재산 침해대응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재외공관에서는 지식재산권협의회, 기업간담회, 컨설팅 및 이동식 IP-DESK 지식재산권 상담 등을 통해 접수된 문제 해결 사항을 외교부에 보고하고, 필요시 외교부는 후속조치를 이행한다.

이를 위해 현지 진출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정보 수집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관련 재외공관 역할 홍보, 본부-공관 및 공관들 간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주요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 동향 및 사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4) 아태지역 17개(중국, 광저우, 칭다오, 선양, 대만, 호주, 뉴질랜드, 상하이, 홍콩, 일본, 싱가포르, 인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미주지역 6개(미국, 로스앤젤레스, 캐나다, 아르헨티나, 멕시코, 브라질), 유럽지역 12개(제네바,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스위스, 이탈리아, 덴마크, 독일, 스웨덴, 영국, 러시아), 아중동지역 5개(이스라엘, 남아공, 이집트, 사우디 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가 있다.

〈표 2-1〉 2020년 본부-공관 및 공관들 간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대 상	협조체제 주요 사례
외교부-4개 공관	미국, 중국, 광저우, 홍콩 등 4개 공관 대상 지식재산권 보호 사업 예산 지원 및 사업 진행 점검
외교부-특허청-IP-DESK	아시아 지역 지식재산권 담당관 워크숍 프로그램 협의 및 재외공관-IP 지원 해외센터 간 협력체계 구축
외교부-주제네바(표) -기타 재외공관	WIPO 지역사무소 유치 관련 진행상황 및 WIPO 사무총장 선거 동향 공유
외교부-주제네바(표) -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	WIPO 회의 참석 및 결과 공유
외교부-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 -일부 재외공관	『재외공관을 위한 지식재산권 길라잡이』 제작 협력 아시아 지역 지식재산권 담당관 워크숍 개최(12.15.)

〈출처: 외교부〉

외교부는 지식재산권 피해 구제 및 분쟁 해결 등 사후 대응을 위한 민원 접수 시 신속한 상황 파악, 관계부처에의 통보, 필요시 정부 간 협의 채널을 통한 분쟁 해결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3. 관련 기관

가. 한국저작권보호원

2016년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지원 및 집행과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며 저작권 보호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여 문화 및 관련 사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기관으로서 설립되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해외에서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하여 저작권 해외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본원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1) 해외사무소 운영

먼저, 한국저작권보호원에는 해외사무소 운영·관리감독 및 해외 사업을 해외사업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해외사업부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표 2-2〉 한국저작권보호원의 해외사업부 소관 주요 사업 현황

연번	사업내용
1	해외 저작권센터(사무소) 구축·운영
2	해외 불법복제물 침해대응 지원
3	국제 저작권 보호인력 워크숍
4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
5	민간주도 해외저작권 보호체계 기반 구축 사업

한국저작권보호원은 3개의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표 2-3〉 한국저작권보호원 해외사무소

구분	베트남(하노이)	태국(방콕)	필리핀(마닐라)	중국(북경)
설립	'12.2월	'07.5월	'11.12월	'06. 4월

현재 베트남, 태국, 필리핀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북경)의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다.

(2) 해외 불법복제물 침해대응지원

본 사업의 목적은 해외 진출 한류 콘텐츠의 효율적인 보호와 침해대응을 지원하고 수요자 중심의 민관협력을 통한 불법복제물 구제조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주로 저작권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불법복제물을 확인하여 현지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침해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표 2-4〉 해외 불법복제물 침해대응 절차

절차	침해사실 인지	▶ 모니터링 및 증거확보	▶ 권리자 수권 확인	▶ 현지 침해대응 (경고장발송 등)	▶ 삭제 결과 공유
주체	해외사무소, 현지 정부기관, 민간권리자 등	해외사무소	한국저작권 보호원	해외사무소, 현지 정부기관 등	해외사무소, 현지 정부기관 등

(3) 국제 저작권 보호인력 워크숍

이 사업은 각국의 저작권 보호 및 집행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저작권 분야에서 한국의 국제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저작권 집행 인력 특화 연수 프로그램이다. 2012년 이래 개도국 등 협력대상국 담당자, 유관기관 관계자, 관련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저작권 집행 관련 국제 조약 및 법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 절차, 국경 조치, 각국의 저작권 집행체계 소개 등 폭넓은 주제로 매년 개최하고 있다.

〈표 2-5〉 최근 국제 저작권 보호인력 워크숍 등 사업성과

년도	2017 (6회)	2018 (7회)	2019 (8회)	2020 (9회)	2021	2022
참가국	9개국 18명	9개국 1기구 19명	9개국 1기구 17명	2대륙 1기구 9명	코로나 상황으로 미개최	

(4)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

이 사업은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콘텐츠 기업(개인)을 대상으로 해외 저작권 침해 예방, 분쟁 해결에 필요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하여 한류 콘텐츠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저작물 보호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표 2-6〉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

서비스 항목	세부 내용	서비스 설명
저작물 불법유통 감시·조사	합법 유통 시장조사	- 콘텐츠의 온·오프라인 주요 유통 매체 및 경로별 시장 현황(콘텐츠 가격, 선호도, 이용경로 등) 조사
	불법 시장 및 침해 현황 조사 (오프라인)	- 해외 현지 불법저작물 유통 현황(주요 매체, 유통량, 유통경로, 지출금액 등), 시장규모 등 조사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 (온라인)	- 현지 온라인 사이트에서의 저작물 침해 현황(게시수량, 가격, 이용량 등) 조사
저작물 보호전략 컨설팅	법제조사 및 대응전략 수립	- 저작권 보호, 합법 유통 및 침해대응 위한 현지 법령 및 대응 전략 수립
	저작물 수출계약서 검토	- 수출계약시 저작권 라이선스 설정, 권리양도 등 계약의 적정성 검토
	침해대응 기술 적용 방안 검토	- 저작권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워터마크 등) 적용 방안 등 기술 대응 전략 자문
저작권 침해감정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을 위한 저작물성 판단, 실질적 유사성 여부 등 감정

서비스 항목	세부 내용	서비스 설명
침해대응 지원	경고장 발송	- 침해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한 경고장 발송
	소송 (민·형사, 행정)	- 저작권 침해 분쟁 발생시 현지에서의 소송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소송 외 대응	- 저작권 침해대응을 위한 현지 구제조치 및 소송외 분쟁 해결절차 등 대응 조치 비용 지원, 저작권 등록 지원

(5) 민간주도 해외저작권 보호체계 기반구축 사업

민간 해외저작권 보호기관(저작권해외진흥협회)과 연계한 적극적 침해대응으로 외교·통상 마찰 없는 한류콘텐츠 보호조치 강화, 해외에서의 한국콘텐츠 유통 침해현황 조사를 통한 체계적인 대응방안 모색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영상 7개사, 음악 1개사, 웹툰·웹소설 12개사 및 영화 2개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해외 침해대응 통합 모니터링, 해외 한류 콘텐츠 유통조사, 글로벌 해외 저작권 보호 관련 특정침해실태조사를 비롯하여 국내외 민간 저작권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교류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6) 기타

그 밖에 부서의 해외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사업은 다음과 같다.

〈표 2-7〉 한국저작권보호원의 해외 저작권 보호 관련 주요 업무

연번	사업내용
1	[과학수사지원부] 디지털 불법복제 국제 공조체계 지원
2	[온라인보호부] 국내외 저작권 침해현안 조사·분석 실시 - 해외사이트 상시모니터링 및 분석
3	[온라인보호부] 맞춤형 저작권 침해대응 활동 - 해외 불법사이트 모니터링 및 침해대응 - 접속차단 요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차단, 검색차단, 자력구제 지원 - 해외 합법 플랫폼 모니터링 및 침해대응 지원
4	[온라인보호부] 해외 한류콘텐츠 침해 실태조사
5	[정보기술부] 한류콘텐츠 저작권 보호 컨설팅
6	[기획조정부] 국내 저작권 보호 실무협의체 운영

나. 한국저작권위원회

(1) 해외 저작권 정보제공 확대

주요 한류 전파 지역에서 우리나라 콘텐츠에 대한 불법 복제를 방지하고 저작권 보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현재 중국에 저작권 해외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향후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저작권 중국 사무소는 현지 법무법인과 연계하여 해외 진출 업체를 대상으로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전문 법률 컨설팅뿐 아니라 주요 침해 사안에 대한 증거 보존, 경고장 발송, 행정처벌 신청 등 구제조치를 지원하고 있다. 2020년에는 총 282건의 해외저작권 상담 및 법률 컨설팅을 하였으며, 4,010건의 구제조치를 지원하였다.

〈표 2-8〉 최근 5년간 해외 법률 컨설팅 및 구제조치 지원 현황

[단위: 건]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총계
해외법률 컨설팅	406	357	390	351	282	1,786
구제조치 지원 건수	858	4,641	7,824	9,085	4,010	26,418
합계	1,264	4,998	8,214	9,436	4,292	28,204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이외에도 해외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국가별 콘텐츠 유통 실태와 저작권 보호 전략 및 현지 법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우리 저작물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주요 국가의 저작권 정보를 제공하는 ‘해외저작권정보 플러스’ 누리집을 발간하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 주요 국가의 저작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대상 국가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해외 저작권 관련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콘텐츠 관련 해외 업체(중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해외저작권정보 플러스’ 누리집은 해외 저작권 동향 및 전문자료 등 141건과 19개 주요 국가의 저작권 가이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마다 개최되는 저작권 관련 국제 행사인 서울, 한·중, 한·일 저작권 포럼 등과 세미나 일정을 안내하고 자료를 게시하여 이용자들에게 저작권 정보를 폭넓게 제공하고 있다. 이는 매달 뉴스레터를 통해 발송되고 있다.

(2) 해외 저작물 합법이용 활성화 환경 조성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 및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해외사무소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부터 계약체결, 침해 대응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표 2-9〉 해외 저작권 합법이용 활성화 서비스 절차

정보 제공	현지 등록	유통 교류	계약 컨설팅
해외저작권정보플러 스 누리집 ① 19개국 저작권 정보 ② 해외 저작권 상담 제공	[중국] ① 인증 지원 (영상음악) [중국] ② 등록 지원 (한국저작권보호원 으로 이관 중)	국내 권리자와 해외 유통 플랫폼 간 맞춤형 교류회 개최 (1:1 비즈매칭 지원)	표준계약서 제공 및 현지 법무법인 연계 컨설팅 지원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한류 콘텐츠의 해외 저작권 합법이용 계약 체결을 위해 지원한 건수는 총 281건으로, 현지 저작권 인증 및 등록 지원을 하였으며, 계약서 검토, 양해각서 체결 지원, 교류회·설명회 개최, 미팅 지원 등으로 저작권 합법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다.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pyright Overseas Promotion Association), ‘COA’는 민간 주도의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 및 구제조치, 유관 기관과의 교류 협력 등을 통해 우리나라 저작물의 해외 합법 유통 확대와 저작권 산업 발전에 기여하려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민간단체이다.

주요 수행 사업으로는 i) 우리나라 저작권의 해외에서의 권리 침해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활용, ii) 우리나라 저작권의 해외에서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조치, iii) 우리나라 저작물의 해외 합법 유통을 촉진하는 사업자 등과의 교류협력, iv) 협회 목적에 맞는 홍보, 조사 연구에 관한 사업을 들 수 있다. 회원사로는 정회원 8개사, 준회원 13개사 그리고 특별회원 1개사이다.

주로 국내 방송사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방송협회 등이 가입하고 있다.

Ⅲ. 주요국의 해외에서의 저작권 보호 체계 조사·분석

1. 미국

가. 지식재산 집행에 위한 공동 대응

(1) 지식재산 집행 조정관

미국 정부는 IP 집행에 대해 전체적 대응과 기관간의 조정이라는 두 가지 구별되지만 상호보완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지식재산 기반의 불법 활동을 막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정부는 영업비밀을 표적으로 삼는 기업, 상업적 이익을 위해 저작권 있는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악용하는 행위, 모조품이나 해적판 또는 특허 침해제품 등의 글로벌 거래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파악하였다. 즉 통합적 정부 대응의 부재하기 때문이 이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정부 전체적 대응과 기관과 기관간의 조정을 통해 효과적인 집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미국 정부는 IP 집행 정책조정 관점과 운영 집행 관점 모두에서 “전체 정부”라는 방법을 취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미국은 2008년 9월 「지식재산을 위한 자원 및 조직 우선화에 관한 법률 (Prioritizing Resources and Organiza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Act, 이하, ‘PRO-IP 법’)」을 제정하였다. 동법은 지식재산권의 보호 수준을 높이고, 지식재산권 집행기관들의 협력을 촉진시킴으로써 지식재산 침해 행위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법은 미국의 지식재산 정책 추진 및 지식재산권 보호 집행을 주도할 컨트롤타워로 지식재산집행 고위자문위원회(Senior IP Enforcement Advisory Committee), 지식재산 집행자문위원회(IP Enforcement Advisory Committee), 그리고 지식재산집행조정관(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Coordinator, 이하 ‘IPEC’)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여기서 지식재산집행조정관은 지식재산집행 고위자문위원회와 지식재산집행 자문위원회의 의장을 맡고 있다. 이 두 개의 자문위원회는 지식재산집행에 관한 정부 간 전략계획위원회(Interagency Strategic Planning Committees on IP Enforcement)로 통칭된다.



OFFICE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COORDINATOR

The Office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Coordinator (IPEC) was established in 2008 to advise the President and coordinate with Cabinet departments and agencies on the development of the United States' overall intellectual property policy and strategy, to promote innovation and creativity, and to ensure effective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nd enforcement, domestically and abroad. It

OFFICE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COORDINATOR

[Legal](#)
[Reports and Documents](#)

[그림 2-1] 미국 지식재산집행조정관실

〈출처: <https://www.whitehouse.gov/ipec/>〉

2008년 PRO-IP 법상의 지식재산권(IP) 집행의 범위는 위조 및 침해 상품 퇴치에 중점을 둔 미국 및 해외의 저작권, 특허, 상표, 영업 비밀 및 기타 형태의 지식재산과 관련된다. 이 법은 IPEC의 의무를 설명하고 기관 간 IP 집행 정책 조정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포함하고 있다. IPEC는 미국 대통령이 임명한 지식재산권 집행 조정관이 이끌고, IP 집행 정책 조정과 관련하여 “전체 정부” 접근 방식은 IPEC를 통해 시행된다.

IPEC는 지식재산 집행 정책의 적절한 조정 및 다른 법률과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부서 및 기관에 대한 정책 지침 발행을 요청하고, 국내외 지식재산 집행 프로그램에 관해 대통령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IPEC는 3년마다 발행되는 ‘지식재산 집행에 관한 공동전략 계획’(이하, ‘공동 전략 계획’)을 수립한다. 공동전략 계획은 미국 상원의 법사 위원회와 세출 위원회에 전달된다.

미국 연방법 및 행정명령에 따라 IPEC는 미국 정부의 IP 집행 우선순위를 개발하고 구현하기 위해 두 개의 별도 기관 간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구체적으로, IPEC는 공동 전략의 구성과 관련하여 (i) 수석 자문 위원회 및 (ii) IP 집행 자문 위원회(총칭하여 이하 ‘IP 집행에 관한 미국 부처 간 전략계획위원회’)를 의장이 된다.

〈표 2-10〉 IP 집행에 관한 미국 부처 간 전략계획위원회의 구성

고위자문위원회 (Senior Advisory Committee)	지식재산 집행자문위원회 (IP Enforcement Advisory Committee)
- 미국 행정 명령 13565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IPEC에 자문을 제공하는 각료급 위원회-공동 전략 계획의 형성 및 실행을 촉진하는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지정된 부서 및 사무실은 위원회에서 대표함	15 U.S.C. § 8111(b)(3) and Executive Order 13565따라 설치. - IP 집행 자문 위원회는 공동전략계획의 개발을 담당하는 하위 내각 수준의 위원회- 위원회는 상원에서 승인한 대표자들로 구성되며, 이들은 각 지정된 부서, 사무소 및 기관의 장이 지정
1. 국무부 2. 재무부 3. 법무부 4. 농무부 5. 상무부 6. 보건복지부 7. 국토안보부 8. 관리예산실 9. 미국 무역대표부	1. 관리예산실 2. 법무부 내 관련 부서, 형사과, 민사과를 비롯한 그리고 연방수사국; 3. 미국 특허상표청, 국제무역청 등 상무부의 관련 부서; 4. 미국 무역대표부 5. 국무부 (경제, 에너지, 비즈니스국, 미국 국제개발청(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국제마약법무국) 6. 국토안보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미국 이민 및 세관 집행국) 7. 보건복지부 식품의약국 8. 농무부 9. 재무부 그리고 10. 미국 저작권청.

IPEC는 위조품 및 침해 상품에 특히 중점을 둔 지식재산권 집행 문제를 미국 정부의 최고위급으로 격상시키기 위해 대통령실(EOP)에 배치되었다. EOP에 배치된 것은 또한 각 기관이 외교, 무역, 형사 또는 민법 집행이든 관계없이 고유한 주제 전문 지식과 책임 영역이 있는 각 정부 기관 및 기관의 지식재산 집행에 대한 이해와 접근 방식을 조정하는 것이었다.

PRO-IP법에서는 기관들이 국가적 수준에서 전략적, 다학문적 일관성을 증진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IPEC의 책임과 권한은 두 가지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미국 및 국제공동 전략계획의 개발과 관련하여 EOP에 있는 자리부터 IPEC는 미국 정부 전체, 민간 부문, 기타 이해 관계자 및 적절한 경우 외국 정부와 참여하여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이 국가 전략을 조정하게 된다.

IPEC는 또한 법무부 차관보가 의장을 맡은 부서 전반의 이니셔티브인 법무부의 지식재산권 태스크포스(Task Force on Intellectual Property)와 협의하여 증가하는 국내 및 국제 지식재산권 범죄에 조정된 방식으로 대처한다.⁵⁾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 미국은 노력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지식재산 집행의 결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지식재산 집행 정책에 광범위한 일관성을 가져 오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전체”의 지식재산 집행의 관점은 지식재산 집행의 다학문적 성격에서 일관성을 계속 발전시키고 다양한 지식재산 기반 활동을 저해하는 불법 지식재산 기반 활동에 대응하는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념적으로 간단한 프레임워크를 보여준다.

(2) 관련 기관

미국의 지식재산 집행에 대한 “정부 전체” 정책 조정 접근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포괄적이고 조정된 정책을 채택하였다. IP 기반 범죄 퇴치를 위한 작전적 접근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전체 정부” 운영 접근 방식은 DHS/ICE 주도의 국가 지식재산권 조정센터(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 Coordination Center, 이하 ‘IPR 센터’)를 하나의 예로 들 수 있다.⁶⁾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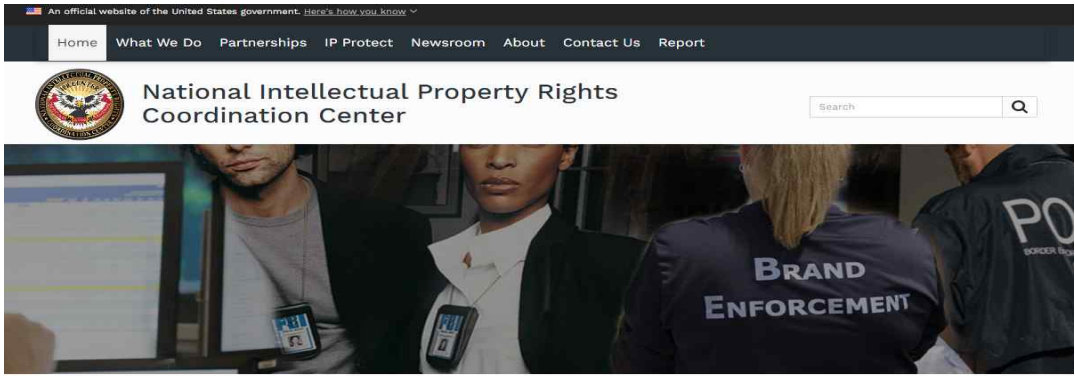
ICE IPR 센터는 19개의 주요 연방 기관으로 구성된 23개 기관과 법 집행 정보 및 리드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 설정에 4개(즉, INTERPOL, Europol, 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및 Mexico Revenue Service(El Servicio de Administracion Tributaria, 또는 SAT))의 국제 범집행 파트너를 포함한다.⁸⁾

5) 미국 법무부(DOJ) 지식재산권 태스크포스는 하나의 특정 연방 부처 내에서 다양한 “정부 전체” 구조의 역할을 합니다. 태스크포스는 연방수사국, 민사부, 형사부, 국가안보부, 법무부, 입법부 및 기타 여러 법무부 구성요소를 하나의 IP 중심 태스크포스로 소집한다. 법무차관이 의장이 되며 법무장관에게 보고한다.

6) 국가 지식재산권 조정 센터(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ordination Center, ‘IPR 센터’)는 처음에 행정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나중에 2015년 무역 촉진 및 무역 집행법 섹션 305, Pub. L. No. 114-125, 130 Stat. 122(2016). IPR 센터는 25개의 주요 연방 및 국제 정부 기관, 민간 부문 파트너와 협력하여 전 세계의 IP 도난 방지를 위해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IP 도난, 사기, 사이버 침입 및 무역 위반의 위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https://www.iprcenter.gov/about>>

7)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ordination Center,
<<https://www.iprcenter.gov/ip-protect>>

8) HSI는 미국 국토안보부의 주요 수사 기관이며 초국가적 범죄 및 위협, 특히 국제 무역, 난동 및 금융이 이동하는 글로벌 인프라를 악용하는 범죄 조직을 조사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 노력의 일환으로 HSI는 180개 국가, 영토 및 섬을 망라하는 130개 이상의 사무국과 함께 IP 범위의 글로벌 담요를 제공하는 IPR 센터를 이끌고 있다. 파트너 기관의 전문, 기술 및 절차를 포함하여 모든 규제, 민사 및 형사 당국을 한 지붕 아래에 모아 위조 및 불법 복제를 근절하고 위조 및 불법 복제의 위험과 영향에 대해 기관과 대중 모두에게 교육을 제공한다.
<<https://www.iprcenter.gov/about>>



Protecting Public Health and Safety

- COMBAT ILLICIT TRADE.** Secure American competitiveness by protecting American innovation and supply chains.
- PROTECT PUBLIC SAFETY.** Prevent the sale and importation of dangerous counterfeit products.
- BUILD LASTING PARTNERSHIPS.** Public and private partners join forces to combat IP theft and illicit trade.

Predatory and illegal intellectual property (IP) trade practices affect every aspect of our lives. The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ordination Center (IPR Center) leads the U.S. government's response to stop global IP theft and enforce trade laws. Comprised of federal agencies and industry experts, the IPR Center develops initiatives, coordinates enforcement actions and

[그림 2-2]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국가지식재산조정센터





〈출처: <https://www.iprcenter.gov/ip-protect>〉

IPR 센터는 기관과 정부 간 협력과 민간 부문의 참여로 이루어진다. 태스크포스 구조를 통해 ICE IPR 센터는 사례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IP 범죄에 대처하고 각 참여 기관의 자원, 기술 및 권한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IP 도난에 대한 포괄적인 대응을 제공하고 있다. 협력을 통해 법 집행 기관은 사건을 해결하고 각 사건을 활용하여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 ICE IPR 센터는 미 국무부인 CBP, 법무부, 연방의 식품의약국, 그리고 현재 연방 정부 내에서 IP 관련 법 집행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법 집행 문제에 대한 단일 연락 창구가 있는 민간 부문의 필수 파트너가 되었다.⁹⁾



[그림 2-3] IPR 센터의 공동협력 파트너사

9) 〈<https://www.iprcenter.gov/>〉

IP Protect	Amazon's Counterfeit Crimes Unit	The Motion Picture Association (MPA)	Grace Farms Foundation
			

[그림 2-4] IPR 센터의 민간 영역 파트너사

〈출처: <https://www.iprcenter.gov/partnerships>〉

이러한 미국의 IP 집행에 있어서 정책 및 운영 수준에서 IP 집행에 대한 “정부 전체” 접근 방식은 국가 및 국제 수준에서 위조 및 상업적 불법 복제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에서 중요한 혁신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¹⁰⁾

지식재산 범죄 퇴치를 위한 파트너십 및 협력 전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외국 정부 파트너와 함께 이러한 “전체 정부” 프레임워크를 더욱 구축하고 있다.

〈표 2-11〉 USTR의 지식재산 집행

<p>특정 무역 분야 내에서 USTR은 무역 정책 개발에서 지식재산 집행에 대한 "전체 정부" 접근 방식의 한 예이다.</p> <p>USTR은 등급 정책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주요 고문 역할을 하는 내각 구성원이다. USTR은 연방 정부의 나머지 부분을 참여시켜 매년 해외 IP 보호 및 집행 상태를 평가하도록 의회에 의해 요구되었다. 1974년 무역법 섹션 182에 따라 특별 301 검토를 통해 이 기관 간 작업을 수행한다(19 U.S.C. § 2242) (개정).</p> <p>USTR은 USTR이 관리하고 의장을 맡고 19개의 연방기관 및 사무소(이 중 하나는 IPEC를 포함하는 OMB임)로 구성된 무역 정책 검토 그룹(TPRG) 및 무역 정책 직원 위원회(TPSC)에 의존한다.</p> <p>이러한 메커니즘 및 기타 메커니즘을 통해 USTR은 (1) 무역 파트너의 IPR 보호 및 집행의 효율성을 식별한다. (2) 다른 국가와 시행 가능한 IP 협상을 한다. (3)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을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집행 조치를 취한다.</p> <p>USTR은 PRO-IP 법에 명시된 IP 집행 자문 위원회의 일원으로서 범정부적인 IP 집행 정책 조정을 효과적으로 강화하고 있다.</p>

10) U.S. Chamber of Commerce, Global Intellectual Property Center, “Infinite Possibilities, U.S. Chamber International IP Index” (February 10, 2016), http://www.theglobalipcenter.com/wp-content/themes/gipc/map-index/assets/pdf/2016/GIPC_IP_Index_4th_Edition.pdf.

나. IP 집행 전문 부서를 통한 대응

미국은 “정부 전체” 접근 방식 외에도 성공적인 IPR 보호 및 집행을 위한 또 다른 주요 정부 접근 방식은 IP 집행 “전문 부서”라고 할 수 있다. 이 방식은 국내·외의 역동적인 IP 환경에 직면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조직 전문 지식과 지식의 적용 및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IP 전문 부처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IPR 전문 부서 또는 태스크포스는 IPR 문제에 대한 상당한 기술적 전문성과 경험을 기반으로 하므로 각 부서에 전략적으로 적절한 IP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범죄 착취 지식재산권 동향 및 전술 분야에서 고도로 전문화된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부처’는 진화하는 기술 및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개발 엔진의 역할을 할 수 있다. IP 집행의 ‘전문 부서’는 단독으로 운영되지 않으며 일상 업무의 상당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의 힘과 자원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다.

미국 정부의 법무부, 국무부 및 상무부는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에 중점을 두고 전담하는 전문 부서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 미국 법무부의 컴퓨터 범죄 및 지식재산권 부서

검찰의 관점에서 볼 때 주목할 만한 전문부서 중 하나는 법무부 형사과의 컴퓨터 범죄 및 지식재산권 부서(Computer Crime and Intellectual Property Section, 이하 ‘CCIPS’)이다. CCIPS는 전 세계적으로 컴퓨터 및 IP 기반 범죄를 퇴치하기 위한 국방부의 국가 전략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¹¹⁾



[그림 2-5] 미국 법무부

<출처: <https://www.justice.gov/criminal-ccips>>

11)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About the Computer Crime & Intellectual Property Section,” <<https://www.justice.gov/criminal-ccips>>

또한 CCIPS는 법무부의 컴퓨터 해킹 및 지식재산권(CHIP) 네트워크와 긴밀히 협력한다. 이 네트워크는 지식재산권 및 컴퓨터 범죄의 조사 및 기소에 대해 특별히 훈련을 받은 미국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다. 법무부는 또한 지식재산권 법 집행 코디네이터 (IPLEC)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법무부 검사는 해외주재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 상주하며 교육 및 기타 역량 구축 형식을 개발 및 제공하여 사법 부문 직원이 지식재산권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집행에 전념하는 기관의 개발 또는 강화를 지원한다. CCIPS는 지식재산권 보호 및 컴퓨터 범죄의 지역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지역의 미국 정부 IP 및 컴퓨터 범죄 정책 및 이니셔티브를 지원하는 데 전문가를 지원한다.¹²⁾

연방주 법 집행을 지원하는 것도 IP침해를 방지하는 데 중요해짐에 따라 법무부 (OJP)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무부 태스크포스와 협력하여 2009년 지식재산권 절도 집행 프로그램(IPEP)을 시작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기소, 예방, 교육 및 기술 강화를 통한 IP 집행을 포함한다. 이 프로그램은 OJP의 한 구성요소인 사법 지원국(BJA)에서 관리한다. IPEP가 시작된 이래 OJP는 PRO-IP 법의 섹션 401에 따라 프로그램 보조금으로 \$22,077,022를 수여하였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검사와 관할 태스크포스를 포함한 주 및 지방 법 집행 기관과 FBI 및 미국 검찰청은 보조금을 수령하게 된다. 프로그램에 따라 공유되는 정보에는 연방주 형법 위반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범죄와 관련된 문제의 조사, 분석 및 기소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 연방주 집행기관은 현재까지 연방지원으로 \$16,785,348을 받았다.

IPEP는 연방주 및 지방 법 집행기관 간의 집행 노력에 대한 조정 및 협력을 지원하고 증가시키는 것 외에도 국가 교육 및 기술 지원(TTA) 및 공공 교육 캠페인에 자금을 지원한다. NW3C(National White Collar Crime Center)는 IPEP에 대한 TTA 제공업체이다. 주 및 지방 법 집행 기관을 위한 TTA는 지역 IP 사무소의 교육 요구 사항을 지원하고 더 큰 법 집행 기관 커뮤니티에 유망한 IP 범죄 수사 및 검찰 관행, 위조 제품으로 인한 건강 및 안전 문제, 부정적인 경제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12)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Regional Intellectual Property Law Enforcement Coordinator (IPLEC)" (vacancy announcement), <https://www.justice.gov/legal-careers/job/intellectual-property-law-enforcementcoordinator-iplec-2>. As of this Plan's publication, there are five IPLEC positions; the IPLECs are posted to U.S. embassies in Bangkok, Thailand; Sofia, Bulgaria; Bucharest, Romania; Sao Paula, Brazil; and Hong Kong, China.

(2) 미국 국무부의 국제지식재산권집행 사무소(Office of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IPE))

2005년 국무부는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업계의 증가하는 요구에 의해 미국 정부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지식재산권 집행사무소로 이름을 변경하였다. 지식재산권 집행(IPE) 사무소는 전 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IPR)의 효과적인 보호 및 집행을 수행한다. IPE 팀은 전세계의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근무하는 외교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외에서 미국 저작권 보유자의 이익을 보장하고, 세계 경제 안정을 지원하는 데 있어 IPR의 역할을 강조한다. IPE는 경제 규칙과 규범을 강화하고 미국 기업 및 민간 부문의 성장과 투자를 증가시키며 미국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시장 접근을 창출하고 있다.¹³⁾

IPE는 IPR 관련 문제에 대한 다자간 및 양자간 협상 및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육 및 기술 지원 기금을 배포하여 개발도상국의 IPR 법 집행 역량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위조 의약품 및 인터넷 불법 복제와 같은 국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IPR의 중요한 역할에 대한 인식을 넓히기 위해 국제 공공 외교 이니셔티브를 제시한다. IPE는 또한 전 세계적으로 위조 및 불법 복제품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기관 간 노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림 2-6] 국제지식재산집행 사무소

<출처: <https://2009-2017.state.gov/e/eb/tpp/ipe/index.htm>>

13) <<https://www.state.gov/intellectual-property-enforcement/>>

(3) 미국 상무부의 국제무역관리국

상무부는 부처 간 및 정부 간 실무 그룹에 참여하여 국내 및 국제 포럼에서 IPR 집행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관인 국제 무역 관리국(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내에 표준 및 지적재산 사무소(Office of Standards and Intellectual Property, 이하 'OSIP')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4) 저작권청(Copyright Office)과 특허청(USPTO)

미국의 주요 미국 지식재산권 기관에는 USPTO(미국 특허청)와 U.S. Copyright Office(미국 저작권청)를 들 수 있다. USPTO와 미국 저작권청은 효과적인 IPR 집행 정책을 개발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USPTO가 자문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통령은 상무장관을 통해 국내 및 특정 국제 IP 정책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USPTO는 특허, 상표, 저작권 및 영업 비밀을 포함한 국내 및 국제 지식재산권 정책 문제에 대해 연방 부서 및 기관에 자문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¹⁴⁾

USPTO 내에서 OPIA(Office of Policy and International Affairs)는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 비밀 및 집행을 포함한 IP의 모든 영역에서 정책 전문가 팀을 통해 지식 재산권 정책을 분석, 개발 및 옹호하는 일차적 책임이 있다.¹⁵⁾ OPIA는 관련 USPTO의 다른 구성 요소와 협력하여 차관 및 국장을 위해 USPTO가 취한 정책 입장을 조정한다. OPIA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를 포함하여 비무역 관련 지식재산 문제에 관한 미국의 국제 협상에서 리더십과 전문성을 제공하고 무역 협상에서 USTR의 고문 역할을 한다. 이러한 노력은 미국 이해 관계자의 이익을 위해 국제적으로 IP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전 세계의 미국 대사관, 영사관 및 사절단에 IP 전문가를 배치하는 Intellectual Property Attaché Program에 의해 더욱 발전되고 있다.¹⁶⁾

저작권청 내 정책외교실은 국내외 정책분석, 입법지원, 무역협상 등 저작권청장을 보좌한다. 또한 저작권 보호의 국제적 측면과 관련된 정부 관리 회의에서 저작권청을 대표한다.¹⁷⁾ 지식재산에 중점을 둔 미국 전문 사무소와 외국 기관 간의 집행에 관한

14) 35 U.S.C. § 2(b)(9) (PTO “shall advise Federal departments and agencies on matters of intellectual property policy in the United States and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in other countries.”).

15)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Intellectual Property (IP) Policy,” <<http://www.uspto.gov/intellectual-property-ip-policy>.>

16)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Intellectual Property (IP) Attaché Program,” <<https://www.uspto.gov/ipattache>.>.

국제 협력은 지식재산 집행을 위한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촉진하거나 외국 IPO가 정부 전반에 걸친 정책 검토를 위한 촉매 역할을 하여 IPR 관련 집행을 적절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다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 다른 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작업하는 전문 기관과 결합된 정책 및 법 집행 운영 수준에서의 조정은 국내외에서 효과적인 IP 집행에 대한 포괄적이고 일관된 정부 접근을 보장하고 있다.

(5) 무역 정책 도구를 통한 미국 지식재산권 집행 촉진

미국의 무역 정책은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지하고, 무역 정책 도구를 통한 지식재산 집행을 촉진하고 있다. 미국은 지식재산(IP) 집약 산업이 약 8,420억 달러(2014년 기준) 또는 미국 전체 상품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를 매우 중요한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는 미국 정부기관과 협력하여 미국 무역 정책을 통해 미국 수출, 세계 시장에서의 무결성 및 미국의 효과적인 집행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1) 국제 무역 협정의 초안 작성, 협상, 모니터링 및 집행과 미국 무역 파트너와의 양자 및 다자 대화에서 미국 법과 일치하는 강력한 IP 표준의 촉진, (2) 혁신과 투자를 위한 환경을 장려하고 유지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의 글로벌 상태에 대한 연례 "SPECIAL 301조" 검토, (3) "악명 높은 시장에 대한 비정기적 검토" 및 글로벌 위조 및 불법 복제 문제에 대해 온라인 시장에서의 관련 거래 및 기타 집행 조치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다.

국제 시장에서 지식재산권 범죄와 집행의 결점을 해결하기 위해 USTR은 1974년 무역법 섹션 182에 따라 SPECIAL 301조 검토를 통해서 해외 IP 보호 및 집행 상태를 매년 평가하고 있다. 또한 USTR은 Special 301 보고서에서 제기된 우려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무역 파트너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2. 유럽

가. 유럽연합 차원의 지식재산 집행 정책

유럽연합(이하 'EU')의 지식재산 정책은 일반적으로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¹⁸⁾가 유럽의 지식재산 정책을 제안하고 유럽 의회(European

17) United States Copyright Office, "Office of Policy and International Affairs,"
<<http://copyright.gov/about/offices/>>

18) 유럽집행위원회는 유럽통합 관련 조약을 수호하고 유럽연합의 행정부 역할을 담당하며 각종 정책을

Parliament¹⁹⁾)와 유럽 이사회(European Council²⁰⁾)의 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EU의 지식재산 정책은 대부분 EU전체의 조화적인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가급적으로 법제도는 연합국이 통일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산업정책의 경우에는 국가별·지역별 차별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격차를 해소하고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EU의 행정부 또는 집행부로서 EU에 적용되는 정책을 개발·설계하고 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5년마다 우선적으로 추진할 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세부 추진계획을 1년 단위로 설정한다. 또한 EU의 예산 관리 및 자금 배분 담당과 함께 유럽 의회와 이사회에 법령 제정을 제안하고 거시적 관점의 지식재산 발전 청사진 및 정책 등의 중장기적 추진 활동을 제시한다.

이밖에 유럽 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 이후 ‘EPO’)과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이후 ‘EUIPO’)에서도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그림 2-7] EU의 지식재산 정책 추진체계

디지털 환경에서 IP 침해는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침해 의심자는 하나 또는 여러 MS 또는 다른 국가에 있을 수 있다. 따라서 MS 간,

입안하고 유럽연합의 이익을 수호하는 유럽통합의 중심기구이다.

- 19) 유럽의회는 각 회원국에서 직접 보통선거로 선출된 임기 5년의 총 751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유럽의회에는 외교, 경제, 금융문제, 농업, 개발 예산 등 22개 상임위원회가 있으며, 필요시 특정 사안에 관한 임시위원회 설치 가능하고 비회원국(유럽 및 비유럽) 의회와 교류를 위한 40개의 의원선전대표단(delegation)이 존재한다.
- 20) 유럽 이사회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정상들의 모임인 유럽 정상회의(European Council)와 각료(장관)급 모임인 각료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로 구성되며 유럽연합 최고의 입법 및 주요 정책 결정기구이다.

MS와 제3국 간의 국제 협력은 IP 집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제 협력은 민사 및 형사 문제(행정 문제는 물론)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아래 단락에 요약되어 있는 복합적인 법적 프레임워크의 적용을 받는다.²¹⁾

나. 유럽의 IP 집행의 협력 프레임워크

(1) 민사 국제 협력

민사 문제에 대한 국제 협력은 국제 법률 지원 문제뿐만 아니라 외국 판결(민사 및 상업 문제에 대한)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 관할권 및 규칙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국가 간 문제에 중점을 둔다. 다른 국가에서 문서를 제공하고 증거를 얻는 것을 포함한다.²²⁾

EU의 민사 문제에 대한 국제 협력은 청구 관련 문제(예: 이의 없는 청구에 대한 유럽 집행 명령,²³⁾ 유럽 지불 명령²⁴⁾, 유럽 소액 청구 절차²⁵⁾); 대안적 분쟁 해결(예: 민사 및 상업 문제의 중재)²⁶⁾; 은행 계좌의 국경 간 동결.²⁷⁾ 민사 문제에 대한 국제 사법 협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온라인 IP 침해 퇴치와 관련된 “① 문서 제공, ② 금지 명령, ③ 도메인 이름의 민사 압류 요청, ④ 침해 항목(예: 침해 디지털 항목) 또는 도구(예: 서버)의 민사 압수 요청, ⑤ 불법 수익금 압수 등 여러 조치가 사법 협력 요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1) EUIPO. (2018). Study on legislative measures related to online IPR infringements. p. 9. <<https://op.europa.eu/en/publication-detail/-/publication/4d2fb2c5-bc7f-11e8-99ee-01aa75ed71a1>.>

22) EJTN. (2016). Handbook: English for judicial cooperation in civil matters. p. 16. <http://www.ejtn.eu/Documents/Resources/Handbook_Manuel_Linguistics_Civil.pdf.>

23) Council Regulation (EC) No 1346/2000 of 29 May 2000 on insolvency proceedings.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ALL/?uri=CELEX:32000R1346>>; Regulation (EC) No 805/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1 April 2004 creating a European Enforcement Order for uncontested claims.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GA/TXT/?uri=CELEX:32004R0805>.>

24) Regulation (EC) No 1896/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December creating a European order for payment procedure.

25) Regulation (EC) No 861/200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July establishing a European small claims procedure.

26) Directive 2008/5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1 May 2008 on certain aspects of mediation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27) Regulation (EU) No 655/201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5 May 2014 establishing a European Account Preservation Order procedure to facilitate cross-border debt recovery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2) 형사 문제에 대한 상호 법률 지원

형사 문제에서 상호 법률 지원(Mutual legal assistance, 이하'MLA')은 사법 문서를 송달하고, 수사 대상을 인도하고, 형사 사건의 수사 및 기소에 사용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국가가 서로 도움을 요청하는 프로세스이다.²⁸⁾ MLA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형태로 제공된다.

(i) 주 수사관 또는 검사 간의 비공식 법적 지원과 (ii) 국가 간 협약 또는 조약의 조건에 따른 공식적인 법적 지원으로 나뉜다. MLA는 종종 분산되어 있으며 요청은 중앙 기관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관련 사법 기관 간에 직접 교환되는 경우가 있다. 중앙 당국은 일반적으로 요청을 자체적으로 실행하지 않으므로 요청을 보내고 받고 실행하는 데 여러 사무실이 포함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자증거신청에 대한 별도의 통계자료를 보관하지 않는다.²⁹⁾ MLA는 또한 외국 관할권에서 전자 증거를 얻기 위해 가장 자주 사용되는 메커니즘이다. EU MS는 다른 MS 및 제3국에 대한 MLA 요청에 의존한다.

매우 일반적인 용어로 형사 문제에서 MLA에 대한 공식 요청 유형은 다음과 같다.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법 문서 제공• 용의자, 증인 또는 전문가의 증언 확보• 통신 차단 요청• 전화 데이터 획득• 국경을 넘는 관찰 요청• 합동 조사팀(JIT) 요청 및 구성• 은밀한 작업 요청• 범죄수익의 몰수• 절차 이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법/형사 기록 사본 확보• 전자 증거 획득 및 압수• 금융 기관으로부터 정보 입수• 수색 및 압수 요청• 통제 배달 요청• 병행 조사 요청• 범죄 자산 압수• 범죄인 인도 |
|---|---|

상호 법률 지원 조약(Mutual legal assistance treaty, 이하'MLAT')은 인터넷 네트워크가 발달되기 이전 전자 증거를 획득하기 어려웠던 시기에 설계되어 많은

28) UNODC. (2018). Mutual legal assistance (MLA).

<https://www.unodc.org/e4j/en/organized-crime/module-11/key-issues/mutual-legal-assistance.html>.

29) CoE. (2014). T-CY assessment report: The mutual legal assistance provisions of the Budapest Convention on Cybercrime. Adopted by the T-CY at its 12th Plenary (2-3 December 2014). p. 6.

<https://rm.coe.int/CoERMPublicCommonSearchServices/DisplayDCTMContent?documentId=09000016802e726c>.

절차를 걸치게 되어 있다.³⁰⁾ MLA는 때때로 번거로운 과정이 될 수 있으며 전자 데이터가 한 관할 구역에서 다른 관할 구역으로 이동, 수정 또는 삭제되는 속도가 매우 느리다. 일부 국가에서는 MLAT 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리소스가 부족하다. 또한, 언어 관련 문제는 절차에 추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범죄인 인도와 관련된 일부 경우에는 이중 범죄 원칙이 적용된다.³¹⁾ 마지막으로, 온라인 데이터의 위치를 알 수 없거나 불확실한 경우(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저장된 경우와 같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다음은 일반적인 IP 침해(민사 및 형사 모두) 및 특히 온라인 IP 침해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허용하는 주요 국제 및 지역 문서에 대한 개요이다.

EUIPO/Europol의 지식재산권 범죄 위협 평가 2019³²⁾ 및 범죄에 대한 EUIPO/Europol 사례집³³⁾ 및 UNICRI 보고서 위조: 글로벌 확산, 글로벌 위협³⁴⁾에서 강조된 대로 점점 더 정교해지는 조직 범죄집단³⁵⁾은 위조 및 해적 행위의 배후에 있다. 이 사실은 Europol의 최근 보고서, 바이러스 마케팅: COVID-19 전염병의 위조, 표준 이하 상품 및 지식재산권 범죄³⁶⁾에서 확인되고 있다.

30) European Commission. (2019). Recommendation for a Council Decision authorising the opening of negotiations in view of an agreement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n cross-border access to electronic evidence for judicial cooperation in criminal matters. p. 1.

31) ITU. (2012). Understanding cybercrime: phenomena, challenges and legal response. p. 4.
<<http://www.itu.int/ITU-D/cyb/cybersecurity/docs/Cybercrime%20legislation%20EV6.pdf>>

32) EUIPO, Europol (2019). Intellectual property crime threat assessment 2019.
<https://euiipo.europa.eu/tunnel-web/secure/webdav/guest/document_library/observatory/documents/reports/2019_IP_Crime_Threat_Assessment_Report/2019_IP_Crime_Threat_Assessment_Report.pdf>

33) EUIPO, Europol (2020). IP crime and its link to other serious crimes: focus on poly-criminality.
<https://www.europol.europa.eu/sites/default/files/documents/europol-euipo_polycriminality_report_2.pdf>

34) UNICRI. (2011). Counterfeiting: a global spread, a global threat (2011 edition).
<<http://www.unicri.it/sites/default/files/2019-11/Report%20on%20the%20Counterfeiting%20and%20Organized%20Crime.pdf>>

35) 협약 제2조의 조직범죄 집단이란 최소 4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를 하나 이상 저지를 목적으로 행동하는 행위 재정적 또는 기타 물질적 이익을 직간접적으로 획득하기 위해 '임의로 형성되지 않은 3인 이상의 집단으로 일정 기간 존재하는 집단'으로 정의된다.

36) Europol.(2020). Viral marketing: counterfeits, substandard goods and intellectual property crime in the COVID-19 pandemic. p. 15.

① 상호 법적 지원을 촉진하는 유럽 연합 문서

유럽 연합은 (온라인) IP 침해를 방지하고 방지하기 위해 여러 입법 수단을 채택하였다. 형사, 민사 및 행정 문제에서 상호 법적 지원 및 협력과 관련된 EU 법적 프레임워크는 매우 복잡적이다. 여기에서는 실체법과 절차법의 관점에서 형사, 민사 및 행정 사건에 적용하여 구성된 이 법적 틀을 구성하는 다양한 관련 법적 문서에 대한 간략히 소개한다.

㉔ 민사 문제 지원

EU는 국경을 초월한 민사 문제에서 서로 다른 법률 시스템 간의 가교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법 협력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다. 주요 목표는 법적 확실성, 사법권에 대한 쉽고 효과적인 접근, 관할 관할권의 식별, 해당 법률의 명확한 지정, 신속하고 효과적인 승인 및 집행 절차를 의미한다. 법적 근거는 유럽 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 (TFEU) 제81조, 조약에 부속된 의정서 21 및 22³⁷⁾에서 찾을 수 있으며 다음 도구가 사용된다.

관련 규정	주요 내용
1. 2001년 5월 28일 민사 또는 상업 문제에서 증거 수집에 있어 회원국 법원 간의 협력에 관한 규정(EC) No 1206/2001 ³⁸⁾	- 법원 간에 증거 수집 및 실행 요청을 직접 신속하게 전송하기 위한 광범위한 시스템(덴마크를 제외한 모든 EU MS에 적용)
2. 2004년 4월 21일의 無이의 청구에 대한 유럽 집행 명령 (OJ L 143/15)을 생성하는 규정(EC) No 805/2004	- 중간절차 없이 無이의 청구에 대한 판결, 법원 합의 및 확실한 문서가 다른 EU 국가에서 자동으로 인식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보장 ³⁹⁾
3. 2006년 12월 12일자 유럽 지급 명령(OJ L 399/1)을 생성하는 규정(EC) No 1896/2006 ⁴⁰⁾	-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청구에 대한 유럽 지급 명령(EOP) 절차를 생성 - 이는 둘 이상의 EU 국가와 관련된 소송의 속도를 높이고 소송 비용을 감소 - 덴마크를 제외한 모든 EU 국가에서 인정되고 시행되는 EOP의 자유로운 유통을 허용

37) European Parliament. (2020). Factsheet of the European Union. Judicial cooperation in civil matters.
<<https://www.europarl.europa.eu/factsheets/en/sheet/154/judicial-cooperation-in-civil-matters>.>

관련 규정	주요 내용
4. 2007년 7월 11일의 유럽 소액 청구 절차를 확립한 규정 (EC) No 861/2007 ⁴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용 절감 외에도 한 EU 국가에서 전달된 판결이 다른 EU 국가에서 자동으로 집행되도록 보장 - 최대 EUR 5,000의 청구에 대해 국경을 넘는 민사 및 상업 소송에 적용
5. 2007년 11월 13일자 민사 또는 상업 문제에 관한 사법 및 비사법 문서의 회원국 서비스에 관한 규정(EC) No 1393/2007 ⁴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의 문서 서비스 체제의 목적은 개인 시민, 전문가 또는 회사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거주자가 다른 MS에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적 절차의 존재를 인식하고 원인을 알고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충분한 통지. 이는 모든 MS에 적용되며 방어권 보호에 대한 특정 최소 기준(예: 8조 및 19조)을 포함하고 국경을 넘어 직접 우편으로 문서를 송달하기 위한 통일된 법적 조건을 설정
6. 2008년 5월 21일자 민사 및 상업 문제 중재의 특정 측면에 대한 지침 2008/52/EC ⁴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재 합의 계약을 다른 MS(덴마크 제외)에서 인정하고 시행하는 것을 주요 목표 중 하나 - EU 내에서 국경을 초월한 중재의 효율성을 높이는 목적. 조정 합의는 '조정 합의 집행 명령'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명령에 의해 집행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규정 - 지침의 6조는 법원이 집행 가능성을 인정하기 위해 모든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를 요구
7. 2012년 12월 12일자 관할권에 관한 규정(EU) No 1215/2012, 민사 및 상업 문제에 대한 판결의 승인 및 집행 (Brussels I 규정) ⁴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S 간의 관할권 충돌 규칙을 조화시키고 단순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민사 및 상업 문제에 대한 결정의 승인 및 집행을 촉진⁴⁵⁾
8. 2014년 5월 15일자 민사 및 상업 문제(OJ L 189)에서 국경 간 부채 회수를 촉진하기 위한 유럽 계정 보존 명령 절차를 설정하는 규정 (EU) No 655/2014 ⁴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절차를 설정 - EU 국가는 다른 EU 국가에 있는 채무자의 은행 계좌에 자금을 동결

38) Council Regulation (EC) No 1206/2001 of 28 May 2001 on cooperation between the courts of the MS in the taking of evidence in civil or commercial matters.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02001R1206-20081204>.>

39) Regulation (EC) No 805/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1 April 2004 creating a European Enforcement Order for uncontested claims.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GA/TXT/?uri=CELEX:32004R0805>.>

40) Regulation (EC) No 1896/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December 2006 creating a European order for payment procedure.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02006R1896-20170714>.>

41) Regulation (EC) No 861/200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July 2007 establishing a European Small Claims Procedure.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02007R0861-20170714>.>

㊤ 형사 문제에 대한 지원

유럽 연합에서는 형사 문제에서 상호 인정이 MLA 메커니즘을 점진적으로 대체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법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관련 규정	주요 내용
1. 2000년 유럽 연합에 관한 조약 제34조 ⁴⁷⁾ 에 따라 이사회가 제정한 유럽연합 회원국 간의 형사 문제에 관한 협약 (MLA 협약)	- 1959년 유럽 평의회 형사 문제 상호 지원 협약 및 1978년 의정서를 보완한다. 이는 형사 문제에 대한 사법, 경찰, 관세 당국 간의 상호 지원을 장려하고 촉진하고 사법 협력의 속도와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절차 정보를 제공하고 여러 형태의 상호 지원에 적용할 수 있다. ⁴⁸⁾ 통신 차단 요청을 다룬다. 범죄적 수단으로 얻은 재산의 반환; 조사를 위한 구금자의 임시 이송 화상 회의 또는 전화 회의를 통한 증인/전문가의 청문회; 통제된 배달; 합동 조사팀; 그리고 은밀한 조사. 협약 제3조에 따르면, '[공조]는 법의 규칙을 위반하고 그 결정이 특히 형사 문제에 대해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요청 또는 피요청 회원국 또는 양자 모두의 국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행위와 관련하여 행정 당국이 제기하는 절차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
2. 2001년 10월 16일자 형사 문제에 관한 상호 공조에 관한 유럽 협약 ⁴⁹⁾ 의정서	은행 계좌 및 은행 거래에 관한 정보 요청 ⁵⁰⁾ 과 관련된 법적 공조를 다룬다.

- 42) Regulation (EC) No 1393/200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November 2007 on the service in the Member States of judicial and extrajudicial documents in civil or commercial matters (service of documents),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C) No 1348/2000.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02007R1393-20130701>.>
- 43) Directive 2008/5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1 May 2008 on certain aspects of mediation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ALL/?uri=CELEX%3A32008L0052>.>
- 44) Regulation (EU) No 1215/201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December 2012 on jurisdiction and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judg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recast).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02012R1215-20150226>.>
- 45) European Parliament. (2020). Factsheet of the European Union. Judicial cooperation in civil matters.
 <<https://www.europarl.europa.eu/factsheets/en/sheet/154/judicial-cooperation-in-civil-matters>.>
- 46) Regulation (EU) No 655/201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5 May 2014 establishing a European Account Preservation Order procedure to facilitate cross-border debt recovery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14R0655>.>
- 47) Council Act 2000/C 197/01 of 27 May 2000 establishing in accordance with Article 34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the Convention on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between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관련 규정	주요 내용
3. 2002년 6월 13일자 합동 수사팀(JITs)에 관한 기본 결정 2002/465/JHA ⁵¹⁾	사법부(판사, 검사, 수사관)를 포함한 합동 수사팀(JIT)의 창설 및 기능에 대한 규칙을 명시한다. 판사) 및 법 집행 기관. EU 내 특정 범죄 유형은 EU 국가 간의 합의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설정된 JIT에 의해 보다 효과적으로 조사될 수 있다. 팀을 구성한 EU 국가는 구성, 목적 및 기간을 결정한다. JIT는 조사가 진행 중인 국가 중 한 사람이 주도하지만 ⁵²⁾ Europol, Eurojust, OLAF 대표 및 비EU 국가 대표도 참여할 수 있다. 팀의 모든 구성원은 자신이 활동하는 국가의 법률 ⁵³⁾ 내에서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4. 2002년 6월 13일자 유럽 체포 영장 및 인도 절차(EAW)에 관한 기본 결정 2002/584/JHA(98) ⁵⁴⁾	구금 형 또는 구금 명령을 기소하거나 집행하기 위한 간소화된 국경 간 절차이다. 유럽 구속 영장을 발부하는 EU 국가의 사법 당국은 범죄의 심각성, 형기간, 영장의 비용 및 이점을 평가하는 '비례 확인'을 수행해야 한다. 이 결정은 MS가 '행위의 이중 범죄성에 대한 검증 없이' 다른 MS에서 용의자를 인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1) 범죄가 32개 범주의 범죄 목록에 포함된 경우('컴퓨터 관련 범죄' 및 '제품 위조 및 불법 복제' 포함) (2) 문제가 되는 범죄가 '발급 회원국에서 최소 3년의 구금 형 또는 구금 명령에 의해 처벌될 수 있고 발행 회원국의 법에 정의된 대로' ⁵⁵⁾ 2019년 11월부터, EAW는 또한 EA조항을 밀접하게 반영하는 항복 절차를 통해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로 확장된다.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42000A0712%2801%29.>>

- 48)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between EU countries.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LEGISSUM%3A133108.>>
- 49) Protocol established by the Council in accordance with Article 34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to the Convention on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between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ALL/?uri=celex%3A42001A1121%2801%29.>
- 50) The status of ratification of the Protocol is available at
<https://www.consilium.europa.eu/en/documents-publications/treaties-agreements/agreement/?id=2001090.>
- 51) Council Framework Decision of 13 June 2002 on joint investigation teams.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ALL/?uri=CELEX%3A32002F0465.>
- 52) The terms in accordance with which a JIT operates vary from case to case, but they are based on the model JIT agreement as appended to Council Resolution 2017/C 18/01.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OJ:C:2017:018:FULL&from=EN.>
- 53) Further information on the JITS is available on the Eurojust website at:
<http://www.eurojust.europa.eu/practitioners/jits/pages/historical-background.aspx.>
- 54) Council Framework Decision of 13 June 2002 on the European Arrest Warrant and the surrender procedures between Member States - Statements made by certain Member States on the adoption of the Framework Decision.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02002F0584-20090328.>
- 55) <https://ec.europa.eu/info/law/cross-border-cases/judicial-cooperation/types-judicial-cooperation/european-arrest-warrant_en.>

관련 규정	주요 내용
5. 2003년 7월 22일자 재산 또는 증거 동결 명령(OJL196)의 유럽 연합 실행에 관한 기본 결정 2003/577/JHA ⁵⁶⁾	MS가 자국 영역에서 인식하고 실행해야 하는 규칙을 설정한다. 형사 소송의 틀에서 다른 MS의 사법 당국이 발행한 재산 또는 증거에 대한 동결 명령. ⁵⁷⁾ 증거 동결에 관한 조항은 형사 문제에 대한 유럽 조사 명령에 관한 지침 2014/41/EU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재산 동결과 관련된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다.
6. 2005년 2월 24일자 재정 과태료에 대한 상호 인정 원칙의 적용에 관한 Framework Decision 2005/214/JHA ⁵⁸⁾	과태료가 부과된 MS가 아닌 다른 MS에서 그러한 형벌의 집행을 용이하게 한다.
7. 2006년 12월 18일자 유럽 연합(EU) 회원국 법 집행 기관 간의 정보 및 정보 교환 간소화에 관한 Framework Decision 2006/960/JHA ⁵⁹⁾	MS 법 집행 기관이 기존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규칙을 설정하고 범죄 수사 또는 범죄 정보 작전을 수행할 목적으로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정보를 수집한다.
8. 2007년 12월 6일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기타 재산의 추적 및 식별 분야에서 회원국 자산 회수 사무소 간의 협력에 관한 결정 2007/845/JHA ⁶⁰⁾	자산 회수 사무소는 특정 요청(3조) 또는 다른 자산 회수 사무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정보의 자발적 교환(4조)에 따라 수행될 수 있다.
9. 2008년 11월 27일자 유럽 연합(EU)에서 집행 목적으로 자유 박탈과 관련된 구금형 선고 또는 조치를 부과하는 형사 문제 판결에 상호 인정 원칙 적용에 관한 기본 결정 2008/909/JHA ⁶¹⁾	MS의 경우 1983년 3월 21일 수형자의 이송에 관한 유럽 평의회 협약(ETS No 112) 및 1997년 12월 18일 추가 의정서(ETS No 167)를 대체하였다.

56) Council Framework Decision 2003/577/JHA of 22 July 2003 on the execution in the European Union of orders freezing property or evidence.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03F0577>.

57) ECLAC. (2014). Directive 2014/41/EU of 3 April 2014 regarding the European Investigation Order in criminal matters.

관련 규정	주요 내용
가장 최근에 채택된 두 가지 자금 세탁 방지 수단, 즉 제5차 자금 세탁 방지 지침(116)과 자금 이체 규정(FTR) ⁶⁸⁾	대부분의 범죄 활동 유형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다룬다. 온라인 IP 침해로 인한 수익금도 원칙적으로 포함하나,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018년에 제정된 제5차 자금세탁방지지침(5AMLD) ⁶⁹⁾ 에는 정보 교환을 위한 협력에 관한 특정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협력에는 요청받은 권한 있는 당국의 권한 내에서 요청한 권한 있는 당국을 대신하여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이러한 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의 후속 교환도 포함된다(제57a조). 또한 MS는 신용 및 금융 기관을 감독하는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이 제3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기밀 정보의 협력 및 교환과 관련된 협력 계약을 체결하도록 승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11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 3년마다 위원회는 권한 있는 당국과 [금융수사국(FIU)] 간의 국제 협력 및 정보 교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제65조)'.

<https://eclan.eu/en/eu-legislatory/directive-2014-41-eu-of-3-april-2014-regarding-the-european-investigation-order-in-criminal-matters.>

- 58) Council Framework Decision 2005/214/JHA of 24 February 2005 on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mutual recognition to financial penalties.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02005F0214-20090328.>
- 59) Council Framework Decision 2006/960/JHA of 18 December 2006 on simplifying the exchange of information and intelligence between law enforcement authorities of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2006F0960.>
- 60) Council Decision 2007/845/JHA of 6 December 2007 concerning cooperation between Asset Recovery Offices of the Member States in the field of tracing and identification of proceeds from, or other property related to, crime.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07D0845.>
- 62)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ALL/?uri=CELEX%3A32008F0909.>
- 62) Council Framework Decision 2009/299/JHA of 26 February 2009 amending Framework Decisions 2002/584/JHA, 2005/214/JHA, 2006/783/JHA, 2008/909/JHA and 2008/947/JHA, thereby enhancing the procedural rights of persons and fostering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mutual recognition to decisions rendered in the absence of the person concerned at the trial.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09F0299.>
- 63) Directive 2014/41/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 April 2014 regarding the European Investigation Order in criminal matters.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14L0041.>
- 64) On this point see EUIPO (2018), op. cit., p. 57.
- 65) Regulation (EU) No 2018/180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November 2018 on the mutual recognition of freezing orders and confiscation orders.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2018R1805.>
- 66) European Commission. (2020). Report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Asset recovery and confiscation: ensuring that crime does not pay. 2 June 2020, p. 3.
https://ec.europa.eu/home-affairs/sites/homeaffairs/files/what-we-do/policies/european-agenda-security/20200602_com-2020-217-commission-report_en.pdf.

관련 규정	주요 내용
10. 재판 중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 내려진 결정에 관한 기본 결정 2009/299/JHA ⁶²⁾	이 문제에 대한 이전 결정을 수정하면서 집행 기관이 결정을 실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통 근거를 정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재판에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결과를 달성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적 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형식과 방법을 규제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으며 대신 국내법에 의해 규제된다.
11. 2014년 4월 3일자 범죄 문제에 관한 유럽 조사 명령(EIO Directive) ⁶³⁾ 에 관한 지침 2014/41/EU	상호 인정 원칙을 현장으로 확장하여 데이터 액세스에 대한 사법 협력을 간소화하고 가속화하기 위한 것이다. 형사소송에서 증거수집, 이는 결정에 대한 상호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 즉, 각 MS는 자체 권한에서 오는 결정과 마찬가지로 다른 MS의 요청을 인식하고 수행해야 한다. 이 지침은 1959년 형사 문제에 대한 상호 지원에 관한 유럽 연합 협약과 그 의정서, MLA 협약과 그 의정서, 유럽 증거 영장에 관한 이사회 기본 결정 2008/978/JHA, 유럽 연합에서 재산 또는 증거를 동결하는 명령의 집행. 위조 및 제품 불법 복제는 범죄가 발행 국가에서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경우 지침이 적용되는 범죄 목록에 포함된다. 그러나 모든 유형의 IP 침해가 '위조 및 불법 복제'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며, 모든 MS에서 위조 및 불법 복제의 경우 최고형이 3년은 아니다. ⁶⁴⁾
12. 2018년 11월 14일자 동결 명령 및 몰수 명령의 상호 인식에 관한 규정(EU) No 2018/1805 ⁶⁵⁾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의 경우 이중 범죄 원칙의 확인 없이 동결 명령 또는 몰수 명령이 실행된다. 최소 3년의 구금형에 의해 발급 국가. 제품의 위조 및 불법 복제는 다른 국가에서 동결 및 몰수 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형사 범죄 목록에 포함된다(제31조 제1항). 동결 명령 또는 몰수 명령을 내릴 때 발급 당국은 필요성과 비례의 원칙이 존중되도록 한다(제1(3)조). 2020년 12월 19일 ⁶⁶⁾ 부터 적용된다.
13. 2개 이상의 MS의 관할권에 속하는 범죄를 다루는 2008년 10월 24일자 조직 범죄와의 전쟁에 관한 Framework Decision 2008/841/JHA ⁶⁷⁾	가능하다면 단일 회원국에서 절차를 중앙 집중화할 목적으로 회원국이 범죄자를 기소할 국가를 결정하는 데 협력할 것을 요청한다.

67) Council Framework Decision 2008/841/JHA of 24 October 2008 on the fight against organised crime.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08F0841.>

68) Regulation (EU) 2015/84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May 2015 on information accompanying transfers of funds and repealing Regulation (EC) No 1781/2006.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02015R0847-20200101.>

69) The transposition was due by 10 January 2020. See European Commission (2020).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on an action plan for a comprehensive Union policy on preventing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7 May 2020, p. 3.

㊤ 행정 문제에 대한 지원

IP 침해는 ‘물리적’ 세계에서 발생한다. 예를 들어 온라인에서 구매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제품은 구매자에게 우편을 통해 배송된다.

관련 규정	주요 내용
1. 1997년 3월 13일자 규정(EC) No 515/97, 관세 및 농업 문제에 관한 법률의 올바른 적용을 보장하기 위한 회원국 행정당국 간의 상호 지원 및 집행위원회와 집행위원회 간의 협력에 관한 규정 ⁷⁰⁾	관세 사기의 탐지, 예방 및 조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MS와 EC 간의 정보 교환을 위한 법적 근거. 이 규정은 무역 운영 방식의 변화와 시장의 새로운 전산화된 조건으로 인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과 2015년에 수정되었다. 2015년 개정안은 정보를 보내는 MS가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한, 획득한 정보(규정의 12조 및 16조에 따라)가 행정 소송뿐 아니라 사법(형사) 소송에서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1997년 12월 18일(2007년 개정) 관세청(Naples II) 간의 상호 지원 및 협력에 관한 협약 ⁷¹⁾	국가 및 EC 관세 규정 위반에 관한 형사 조사의 틀에서 상호 지원 및 관세 협력을 다루고 있다. 관련 MS의 국가 규정에 근거하여 어느 신청 기관이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 협약은 관세사기 및 초국가적 인신매매, 범죄자의 기소 및 처벌을 다룬다. 범죄 조직 및 자금 세탁과의 연루는 물론 침해 시도 및 선동 및 보조인과 같은 모든 형태의 참여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침해'를 고려한다. ⁷²⁾

다. 관련 기관·네트워크·도구

유럽에서는 지식재산의 형사 또는 민사 문제에서 EU 당국⁷³⁾간의 협력을 도울 수 있는 몇 가지 관련 기관, 네트워크 및 도구가 있다.

(1) 관련 기관

<https://ec.europa.eu/finance/docs/law/200507-anti-money-laundering-terrorism-financing-action-plan_en.pdf.>

70) Council Regulation (EC) No 515/97 of 13 March 1997 on mutual assistance between the administrative authorities of the Member State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latter and the Commission to ensure the correct application of the law on customs and agricultural matters.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01997R0515-20160901>.>

71) Convention drawn up on the basis of Article K.3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on mutual assistance and cooperation between customs administrations (Naples II Convention).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41998A0123\(01\)](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41998A0123(01)).>

72) Further information on the close collaboration between EU customs administrations (Naples II Convention) .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LEGISSUM%3A133051>.>

73) The role of European Public Prosecutor's Office (the EPPO) and the European Border and Coast Guard Agency (FRONTEX) in the future fight against IP and related crimes should also be noted.

① 유럽연합 법집행협력청(EUROPOL)

유럽연합 법집행협력청(European Union Agency for Law Enforcement Cooperation, 이하 'Europol')은 사이버 범죄를 포함한 중범죄에 대해 법 집행 기관에 운영 조정 및 지원, 안전한 정보 교환, 전략 및 정보 분석과 같은 지원을 제공한다.⁷⁴⁾ SIENA(Secure Information Exchange Network Application) 플랫폼을 사용하면 Europol의 연락 담당자, 분석가 및 전문가, MS, Europol이 협력 계약을 체결한 제3자 간에 운영 및 전략적 범죄 관련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② 유럽형사사법협력청(Eurojust)

유럽형사사법협력청(The European Union Agency for Criminal Justice Cooperation, 이하 'Eurojust')은 MS 당국, Europol, 유럽 검찰청(EPPO) 및 유럽사기방지청(European Anti-Fraud Office, 이하, 'OLAF')⁷⁵⁾. Eurojust는 국제 수준의 52개 관할구역과 함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2019년에 미국은 사이버 범죄에 대한 특별한 전문 지식을 갖춘 두 번째 연락 담당자를 Eurojust에 배치한 반면, 스위스는 국제 상호 법률 지원에 상당한 경험을 가진 두 번째 연락 담당자를 배치하였다.⁷⁶⁾ Eurojust는 다음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제공한다.

- 국가에서 적절한 당국 찾기(다른 당국 및 전문 사무소);
- 요청을 받는 국가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 EIO가 도착하기 전에 접수 국가/국가에 다가오는 긴급 요청에 대해 알리고 사건에 대한 예비 정보를 제공하여 모든 사법 요청을 사전에 정리하고 경찰과 연락하여 행정 준비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를 크게 가속화한다.
- 케이스 조정 - 특히 규정(EU) No 2018/1727(126)의 21조에 따라 MS는 EIO가 둘 이상의 국가로 전송될 때 Eurojust에 알려 케이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교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사건을 처리하는 모든 당국(검찰 및 경찰)과 조정 회의를 개최한다.
- 동시에 둘 이상의 국가에서 강압적 조치를 실행하기 위한 공동 행동의 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조정 센터를 설정한다.
- JIT 설정

③ 유럽사기방지청(OLAF)

74) <[https://www.europol.europa.eu/activities-services/services-support/.](https://www.europol.europa.eu/activities-services/services-support/)>

75) <<http://www.eurojust.europa.eu/about/background/Pages/mission-tasks.aspx.>>

76) Eurojust. (2019). Eurojust annual report 2019. Criminal justice across borders. p. 21. <http://www.eurojust.europa.eu/doclibrary/corporate/eurojust%20Annual%20Reports/Annual%20Report%202019/AR2019_EN.pdf.>

유럽사기방지청은 EU 예산에 대한 사기, 유럽 기관 내의 부패 및 심각한 위법 행위를 조사하고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를 위한 사기방지정책을 개발한다.⁷⁷⁾ OLAF는 EU 자금과 관련된 사기를 탐지, 조사 및 중지하도록 위임된 유일한 EU 기관이다. 사무소는 EU 국가 및 일부 비EU 국가의 관세 당국이 유럽 수준에서 공동 관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지원한다. 이는 특정 위험 지역 및/또는 식별된 무역 경로에서 민감한 상품의 밀수 및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제한된 기간 동안 조정되고 표적화된 조치이다. 이 프레임워크에서 OLAF는 기술 인프라 및 도구, 전략적 분석, 관리 및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⁷⁸⁾

(2) 네트워크

① 공동 조사팀에 대한 국가 전문가 네트워크(JITs-network)

공동 조사팀(Joint Investigation Teams, 'JITs')에 대한 국가 전문가 네트워크는 2005년 7월에 설립되었다. 사무국은 실무자의 작업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Eurojust가 주최한다. JITs 네트워크는 주로 JITs 사용을 권장하고 설정을 용이하게 하며 경험과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데 기여한다. 국가 전문가는 주로 MS의 법집행, 기소 및/또는 사법 당국의 대표이다. Eurojust, Europol, OLAF, 유럽 위원회 및 EU 이사회와 같은 기관들도 JITs 네트워크⁷⁹⁾에 대한 연락처를 지정하였다.

② 유럽 사법 사이버 범죄 네트워크(EJCN)

2016년에 설립된 유럽 사법 사이버 범죄 네트워크(European Judicial Cybercrime Network, 이하 'EJCN')는 사이버 범죄 및 사이버 범죄 대응과 사이버 공간 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실무자 간의 접촉을 촉진하는 것과 수사 및 기소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EJCN은 사이버 범죄의 조사 및 기소에 관한 전문 지식, 모범 사례 및 기타 관련 지식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여 관할 사법 당국 간의 협력을 촉진한다. 네트워크는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 법의 지배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는 다양한 행위자와 이해 관계자 간의 대화를 촉진한다.⁸⁰⁾

③ 민사 및 상업 문제의 유럽 사법 네트워크(EJN)

77) <https://ec.europa.eu/anti-fraud/home_en.>

78) <https://ec.europa.eu/anti-fraud/policy/preventing-fraud/joint-customs-operations-jco_en.>

79) <<http://www.eurojust.europa.eu/Practitioners/JITs/jitsnetwork/Pages/JITs-network.aspx.>>

80) Further information on the EJCN is available at
<<http://www.eurojust.europa.eu/Practitioners/Pages/EJCN.aspx>>.

민사 및 상업 문제의 유럽 사법 네트워크(European Judicial Network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이하 'EJN')는 2001년에 설립되었다. EJN은 MS가 지정한 접점, 일부 EU문서에 규정된 중앙 당국, 연락 행정관, 국가 행위자(법원 및 중앙 당국) 간의 사법 협력을 책임지는 기타 모든 당국으로 구성된다.⁸¹⁾

④ 유럽 지식재산권 검사 네트워크(EIPPN)

유럽 지식재산권 검사 네트워크(European Intellectual Property Prosecutors Network, 이하, 'EIPPN')는 EUIPO(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와 Eurojust가 공동으로 조직한 자발적인 검사 네트워크이다. 그것은 경험과 정보의 교환과 검사들 사이의 비공식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⑤ 유럽이사회의 관세협력작업반(CCWP)

유럽이사회의 관세협력작업반(Customs Cooperation Working Party, 이하 'CCWP')은 집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 관세청 간의 운영 협력에 관한 작업을 처리한다. JCO(Joint Customs Operations)를 위한 전략적 및 기술적 목표를 정의한다. 이들은 압수, 새로운 위협의 식별 및 범죄 집단의 붕괴 측면에서 결과를 찾는 데 중점을 둔다.⁸²⁾

(3) 관련 도구

SIENA(Secure Information Exchange Network Application)⁸³⁾를 통해 Europol의 연락 담당자, 분석가 및 전문가, MS 및 Europol이 협력 계약을 체결한 제3자 간에 운영 및 전략적 범죄 관련 정보를 빠르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교환할 수 있다. Europol, Eurojust 및 EJN이 만든 SIRIUS 프로젝트 플랫폼⁸⁴⁾은 전자 증거에 대한 초국가적 액세스를 얻는데 대한 지침, 도구 및 동료 공유 경험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플랫폼에는 자발적이며 의무적인 국제 협력이라는 주제에 대한 유용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다.

유럽 전자 사법 포털(European e-Justice portal)⁸⁵⁾은 민사 문제에서 사법 협력을

81) <https://e-justice.europa.eu/content_about_the_network-431-en.do?clang=en>

82) Further information on the CCWP is available at <https://www.consilium.europa.eu/en/council-eu/preparatory-bodies/customs-cooperation-working-party/>.

83) Further information on SIENA is available at <https://www.europol.europa.eu/activities-services/services-support/information-exchange/secure-information-exchange-network-application-siena>.

84) Further information on SIRIUS is available at <http://eurojust.europa.eu/Practitioners/Pages/SIRIUS.asp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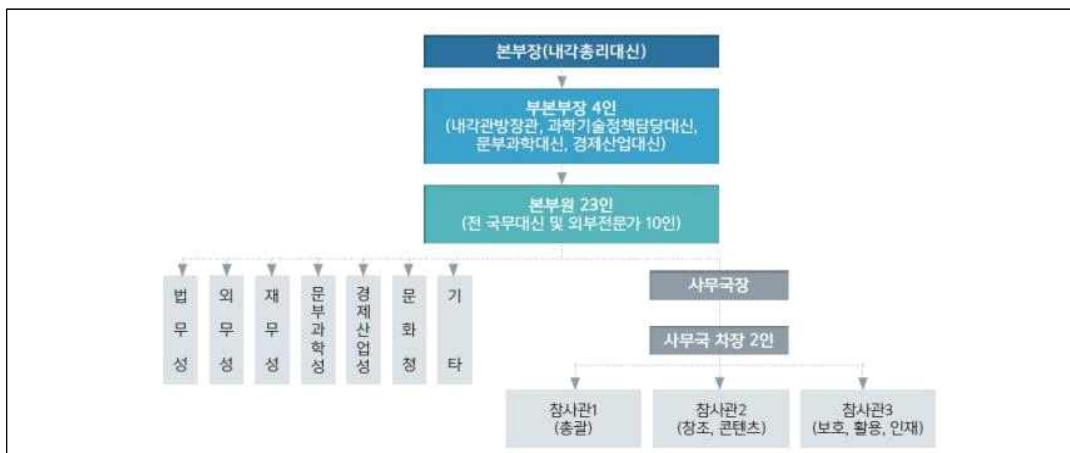
단순화하기 위한 또 다른 도구이며 사법 행정에서 정보 및 통신 기술의 사용을 개발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시민과 기업의 사법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EU 차원에서 범죄 기록을 상호 연결하고 사법 절차 중에 화상 회의를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기에는 자동 번역, 법률 번역가 및 통역사의 유럽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혁신적인 번역 도구도 포함된다.

3. 일본

가. 일본 정부

(1) 지적재산전략본부

일본의 지식재산 정책은 지적재산전략본부(知的財産戦略本部, 본부장 : 아베신조 총리)를 중심으로 수립·추진된다. 2002년 지식재산으로 국가를 일으키겠다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지재입국(知財立國)’ 선언이 있는 후 2002년 12월에 「지적재산기본법」이 제정되고 이에 근거하여 2003년 3월 지적재산전략본부가 설립되었다. 동 본부는 지식재산의 창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시책을 집중적·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각에 설치한 기구로 지식재산과 관련된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일본 지식재산 정책 및 시스템에 관한 중장기 정책인 ‘지적재산전략비전(知的財産戦略ビジョン)’을 5년마다 제시하고 있으며 그 비전을 실행하기 위한 ‘지적재산 추진계획(知的財産推進計画)’을 매년 수립·발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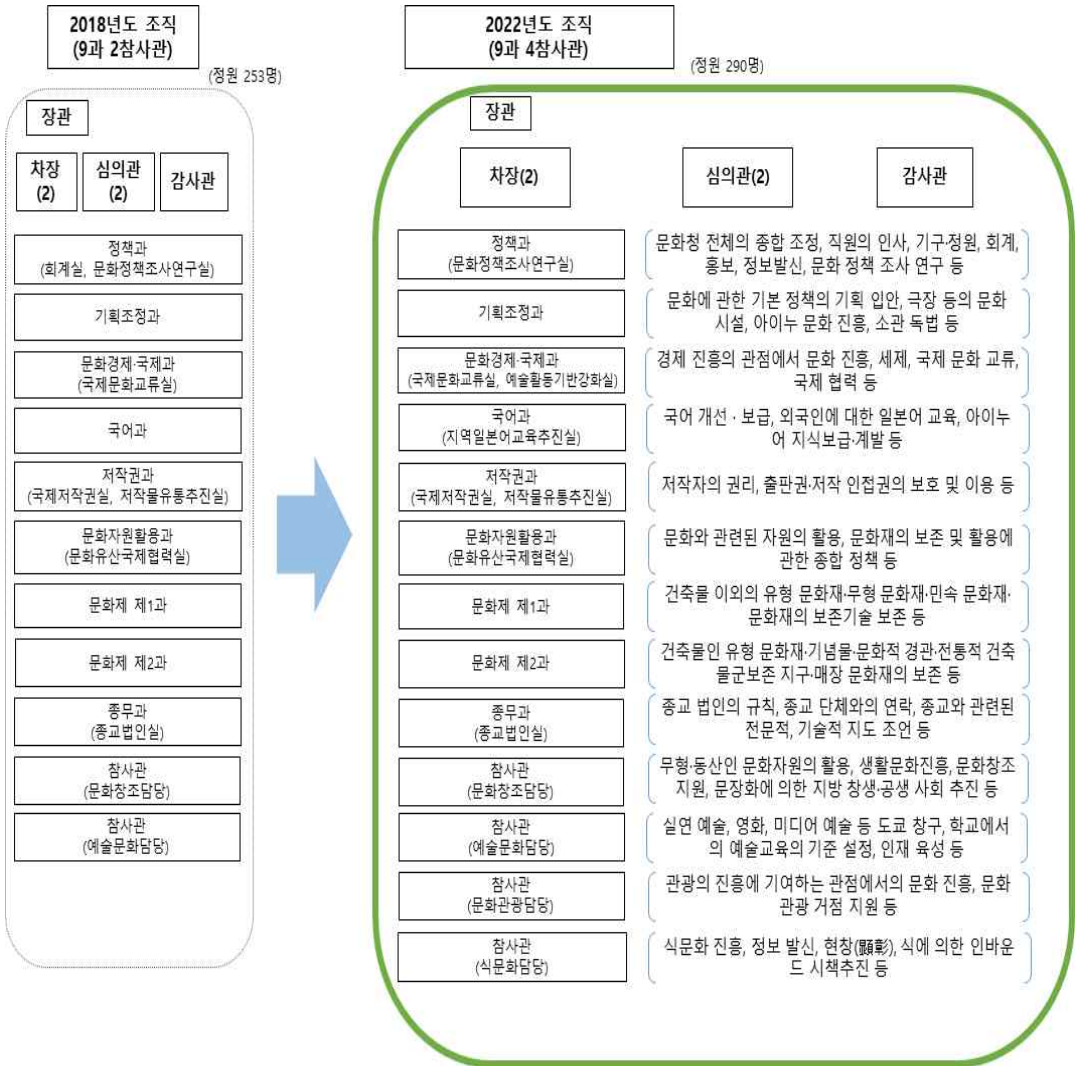


[그림 2-8]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 및 지식재산 보호체계

85) Further information on the e-Justice Portal is available at <https://e-justice.europa.eu/home.do?action=home>.

(2) 문화청

일본의 저작권 관련 업무는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 산하의 문화청(文化庁)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산업재산권 관련 업무는 경제산업성(經濟産業省) 산하의 특허청(日本 特許庁)에서 담당 및 총괄하여 수행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총 9개의 지역(86)에 경제산업국을 두고 지식재산권실(知的財産室)을 설치하여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 지원과 지역 경제의 특성에 부합한 지식재산의 활용과 보급을 촉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림 2-9] 일본 문화청 조직도

86) 홋카이도(北海道), 칸토(関東), 토호쿠(東北), 추부(中部), 긴키(近畿), 추고쿠(中国), 시코쿠(四国), 큐슈(九州) 경제산업국과 내각부 오키나와(沖縄) 종합사무국 등이다.

일본 문화청 저작권과에서는 저작권분과위원회 등 자문위원회를 두고 저작권법 개정, 저작권 관련 이슈 등에 대한 논의와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문화청 저작권과에서는 해외에서의 저작권 보호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⁸⁷⁾

특히 해외에서의 저작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과 제후에 관한 정책을 주로 실시하고 있다. 일본 문화청은 해외에서의 저작권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① 저작권제도 정비, ② 권리집행 강화, ③ 보급 계몽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① 저작권 제도 정비

일본 문화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저작권 제도 보급 촉진 사업(APACE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에 신탁기금을 기부하고, WIPO와의 협력하에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개도국에 저작권제도의 정비나 국제조약 가입 및 이를 담당하는 인재 육성을 지원하는 것이다. 1993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 개최, 개도국 저작권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한 집중관리 단체 실무연수, 개도국의 저작권 제도 등 컨설팅을 위한 저작권 전문가 파견, 개도국 직원(세관, 경찰, 법원 등)의 담당자를 동경으로 초빙하여 연수를 실시하는 특별연수프로그램 실시, 개도국의 요청에 따라 조약 등을 현지어로 번역해 주는 사업 실시를 하고 있다. 예산은 65百万円이다.

② 권리집행 강화

저작권에 관한 양자간 양해각서 체결에 근거하여 정기적인 협의 및 협력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세미나도 실시하고 있는데, 상대국 정부와 협력하여 세관, 경찰, 법원 직원 등의 침해 대책에 관련된 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세미나를 실시하고 있다. 예산은 65百万円이다.

③ 보급 계몽

저작권 보급과 관련한 계몽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침해 발생국 정부와 협력하여 저작권 계몽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20년에 말레이시아 지식재산청(MyIPO)과 공동으로 쿠알라룸푸르의 대형 쇼핑센터에서 개최되는 「JAPAN EXPO

87) 일본 문화청 홈페이지, <<https://www.bunka.go.jp/seisaku/chosakuken/index.html>>.

MALAYSIA 2019」에서 저작권 인식 조사(양케이트)를 실시 및 저작권 퀴즈 등을 실시하였고, 태국에서는 「만화 페스티벌 in ASEAN」에서 저작권 인식 조사를 하였고, 베트남에서도 베트남 문화·스포츠·관광청과 협력하여 하노이 국립대학에서 개최한 「Gameshow Copyright and Creation 2019」에서 저작권 인식 조사(양케이트) 등을 한 바 있다. 예산은 38百万円이다.

또한 말레이시아 및 베트남에서 저작권 계몽 관련 교재 개발 협력 사업을 실시하고 하였다. 이러한 사업과 함께 해외에서 저작권에 관한 권리행사 사례집을 작성하여 일본 저작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나. 관련 기관

①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CODA)

일반사단법인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Content Overseas Distribution Association, 이하 'CODA')는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 음악, 게임, 출판 등의 일본 콘텐츠 산업의 적극적인 해외 전개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저작권 관련 단체나 콘텐츠 기업이 일치 협력해 해외에 있어서의 해적판 대책 등을 강구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으로서 2002년 경제산업성 및 문화청에 의해 설립되었다.⁸⁸⁾

CODA는 32개 기업, 12개 단체 회원, 9개의 찬조회원을 두고 있다. CODA는 2021년 4월 9일에 「인터넷상의 해적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메뉴 및 공정표 2019년 10월 책정(インターネット上の海賊版に対する総合的な対策メニュー 及び工程表 2019年 10月策定)」을 갱신하였다. 이에 따라 CODA는 2021년에 “국제 연계·국제 집행”의 강화를 목적으로 한 “국제 집행 프로젝트(CBEP Cross Border Enforcement Project)”를 시작한 바 있다. 또한 2022년 4월에는 국제 해적판 대책기구(The International Anti Piracy Organization, 이하 'IAPO')를 설립하였다. 이를 통해 CODA는 긴급한 과제인 국경을 초월하는 악질적인 해적판 사이트에 대해 일본 정부의 지원 아래 국제 집행을 위한 윈스톱 체제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⁸⁹⁾

2022년도 CODA는 국내 콘텐츠 기업 및 관련 단체와 협력하면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해적판 대책을 통해 침해 발생 국가의 정부기관 및 해외 권리자 단체 등과 연계하여 해외에서 범람하고 있는 해적판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2022년 CODA의 해외 저작권 보호를 위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88) <https://www.mext.go.jp/b_menu/shingi/bunka/gijiroku/009/030101ja.pdf> 참조.

89) <<http://www.coda-cj.jp/s/2021jigyohoukoku.pdf>> 참조.

대과제	소과제	내용
인터넷상의 해적판에 대한 침해 대책 실시	저작권 교육 및 인식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에 관한 홍보계발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는 홍보물의 제작, 세미나나 이벤트의 개최, 인터넷상에서의 홍보 등을 실시 ① 국내 일반 소비자를 향한 홍보 계몽 활동으로서 홍보 전용 홈페이지의 충실을 도모하고, 최신 정보의 제공, 공동 집행에 관한 뉴스 릴리스 및 해적판 대책에 관한 법 개정 등 주지 ② 부정 상품 대책협의회(ACA)등이 주최하는 홍보 이벤트 등에 참여하여 해적판 대책에 관한 홍보물(전단지·포스터·전시물 등을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강화 ③ 해외의 일반 소비자에 대한 홍보의 관점에서 주요한 해외 이벤트에 참여하여 일본 저작권 보호를 위한 홍보 실시 ④ 아시아 지역에서의 해적판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사례, 소송대책, 법 개정 동향에 관하여 CODA 베이징 사무소 및 관계기관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콘텐츠 관련 업계에 주지 ⑤ 해외에서 선진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 정부기관·권리자단체·기업의 유식자 등을 필요에 따라 일본에 초빙 또는 온라인상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대책 등에 관련된 세미나 등을 개최 및 일반 소비자 등에 대한 인식제고
국제연대· 국제 집행 강화	국제 집행 프로젝트 (CBEP C ross Border Enforcement Proje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질적인 해적판 사이트에 대한 '국제 집행 강화'를 목적으로 사이버 보안 전문가와 연계하여 게시자를 추구·특정 - 디지털 포렌식 조사, 온라인 프로파일링 기술을 통해 확실한 증거지를 보전하는 일련의 흐름을 확립하고 우리 정부의 지원하에 국제 집행을 향한 원스톱 체제 구축
	국제해적판 대책기구(IAPO : The International Anti-Piracy Organization)	4월에 설립한 IAPO의 활동을 충실히 하기 위해, 각국의 정부기관·권리자 단체등과 제휴해,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해 실현을 목표.
	③ 중국·CODA 베이징 사무소	법인 등기의 목적 사무인 ① 음악 녹음 이외의 일본 저작물의 저작권 증명(인증 업무), ② 회원 기업의 정당한 권리 보호, ③ 저작권법의 조사·홍보, ④ 중국과 일본의 저작권 분야에 있어서의 교류·협력에 대해서, 중국 관계 기관·관계 단체등과 제휴
	미국영화협회 (Motion Picture Association, 이하 'MPA')	국제적으로 해적판 등 지식재산권 침해대책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MPA 및 국제레코드산업연맹(IFPI) 등 해외 저작권 관련 단체의 현지 네트워크 등을 이용한 연계 강화를 도모
	한국 저작권 보호원 (KCOPA) 등과의 제휴	정기협의를 한국 및 일본에서 개최하여 양국의 지적재산 보호에 관한 정보 공유를 실시 및 양국의 활동을 통해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의 지식재산권 보호기반 구축 목표

대과제	소과제	내용
	<p>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기반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시아의 지식재산권 관련 정부기관(중국 : 국가판권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공안부, 상무부, 공업화신식화부, 문화관광부, 문화시장행정집법총대 및 중국판권협회, 홍콩 : 지식재산권국 및 세관, 대만 : 내정부경정서, 문화부영상시급유행 음악산업국 및 경제부 지적재산국, 한국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 등과의 제휴 강화를 도모 - 중국 정부와는 중국 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온라인상의 단속 캠페인인 「검감 행동」을 통해 일본 콘텐츠의 온라인 침해에 대해 협력을 요구하고, 불법 업로드의 단속, 지오블록킹(Geo-blocking)⁹⁰⁾의 도입 방지에 관하여 요청
	<p>미국 대기업 정보 검색 사업자와 정기 협약 실시</p>	
<p>광고 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사단법인 일본 인터랙티브 광고 협회(JIAA), 공익 사단법인 일본 광고 협회(JAA) 및 일반 사단법인 일본 광고업 협회(JAAA)와의 사이에 설치한 “해적판 사이트에서의 광고 출고 억제에 관한 합동 회의”를 통해 정기적으로 해적판 사이트리스트(일본판 IWL)를 공유하고 정기적으로 협의를 실시 - WIPO가 운영하는 침해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 “WIPO Alert”에 대한 정보 공유를 검토
<p>검색결과 표시 정지요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oogle을 비롯하여 관계자가 설치한 '저작권 침해 콘텐츠의 검색 결과 표시에 관한 검토회'를 통해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
<p>필터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사단법인소프트웨어협회(SAJ) 및 특정 비영리활동법인 일본 네트워크 보안협회(JNSA)에 대해 필터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해적판 사이트리스트를 정기적으로 공유 - SAJ 및 JNSA 회원 이외의 경우에도 필터링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기업으로부터의 신청이 있었을 경우는, 리스트의 제공을 검토
<p>정품 유통촉진</p>		<p>일본 콘텐츠의 정품 유통 촉진을 위하여 민간 기업 등을 중심으로 검토를 실시하여 유효한 대처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 실시</p>
<p>기타</p>	<p>자동 콘텐츠 감시·삭제 센터(이하, '삭제 센터')에 의한 대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문 기술 등에 의한 자동 대조가 작위적으로 회피되는 경우가 있음을 감안하여 인적 모니터링 등에 의해 실질적인 삭제 요청 대상을 발견하는 구조, 업로드 대상 플랫폼 및 민간 권리자와 관계 등 실질적인 삭제 요청 등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 - 삭제센터의 운영을 통해 Google이 제공한 Trusted Copyright Removal Program for Web Search(TCRP)⁹¹⁾를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또한 Microsoft의 Bing에 대한 검색 결과 삭제 요청도 실시

대과제	소과제	내용
	국제지적재산보호포럼(IIPPF) 참여	- 해외에 있어서의 모방품·해적판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하는 기업·단체의 모임인 국제지적재산보호포럼(IIPPF) ⁹² 에 참가해, 지식재산권 침해문제에 관한 정보 교환 등을 실시
	부정상품대책협의회(ACA)와의 제휴 강화	- 일본 국내에 있어서의 해적판·가짜 브랜드품등의 침해 대책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부정 상품 대책 협의회(ACA)와의 제휴를 강화
	침해 대책에 관련된 위원회 등의 실시	일본 콘텐츠 업계에 대한 침해 대책의 노하우 축적과 침해 대책 지원을 목적으로, 당 기구가 운영하고 있는 「해적판 인포스먼트 위원회」(해적판 및 온라인 침해에 대한 공동 인포스먼트를 검토·협약하는 장소), 「CJ 마크 위원회」, 「법 제도 위원회」(지적재산에 관한 법 개정이나 최신 정보에 관해 유식자 등을 초래해 정보 공유의 장) 외에 저작권에 관한 업계 단체 (음악·출판·방송·영화)를 대상으로 한 「단체 연합회」(일사) 일본 음악 저작권 협회, (일사) 일본 민간 방송 연맹, (일사) 일본영화제작자연맹, (일사)일본잡지협회 등으로 구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최신정보 공유 등에 노력
		권리자로부터 통보 등이 있던 권리침해를 행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에 대해, Google 및 Apple에 대해, 양사가 운영하는 스마트폰 어플리 시장으로부터의 삭제를 요청
		불법 콘텐츠를 판매하고 있는 사이트가 발견되었을 경우에, 일반 사단법인 전국 은행 협회나 각 은행 등에 대하여, 해당 사이트의 은행 계좌 등의 동결을 요청
	훈련 세미나 실시	저작권이나 일본 콘텐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일본 콘텐츠의 지식재산 침해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취지로 「훈련 세미나」(문화청 수탁 사업)를 중국, 홍콩, 대만에서 권리집행 기관 직원이나 법조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

90) 지오블록킹 (Geo-blocking)은 인터넷 콘텐츠의 전달에 있어서 제공하는 사업자의 액세스를 시도 하는 「이용자의 지리적 위치」에 따라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기술을 말한다.

91) Trusted Copyright Removal Program for Web Search(TCRP)란, 정확한 통지를 제출하고 있는 것이 증명된 저작권자들이 Google사로부터 승인되면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삭제 웹폼(웹 검색에서) 제출을 용이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92) 2002년 4월, 모방품·해적판 등의 해외에 있어서의 지 재산권 침해 문제의 해결에 의욕을 가지는 기업·단체가 업종 횡단적으로 모여 산업계의 의견을 집약하는 것과 동시에, 일본 정부와의 제휴를 강화하면서, 국내·외의 정부기관 등에 대해, 일치 협력해 행동해 지적재산보호의 촉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서 설립된 임의 단체.

오프라인상의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항목	주요 내용
비인터넷 상의 해적판에 대한 침해 대책의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공동 인포스먼트를 실시할 예정인 지역(중국, 홍콩, 대만, 한국, ASEAN 국가 등)에서는 일본 콘텐츠의 침해 실태(저작권, CJ 마크 상표권 등 침해 등)의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효과적인 공동 강화를 실시 ② 무허가 동시 재전송 시청을 가능하게 하는 ISD 기기(부정 스트리밍 시청기기)의 판매 및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해적판 판매 등의 악질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절차나 전자상거래 사업자와의 제휴에 의해 출품정지 조치를 요청 필요에 따라 실시 ③ 저작권 교육·인식제도에 대해서는 비인터넷상의 해적판에 대해서도 아울러 실시
콘텐츠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의 실태에 관한 정보 수집이나 새로운 대책의 검토	<p>이하의 내용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조사 등을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익명성이나 은닉성을 보증해 해적판 사이트의 운영을 조장하는 해외의 도메인 대행 서비스(Njalla 등) 등이나 호스팅 서비스 (방탄 서버 등)의 실태 및 대책 등 ② 해적판 사이트의 운영 자금의 흐름에 악용되는 가상 통화의 실태 등 ③ 동시 재전송으로 행해지는 해적판 사이트 대책에 유효하게 되는 워터마크 기술의 실태 등 ④ 해적판 사이트 운영자의 특성을 곤란으로 하는 CDN 서비스 등에서의 실태 및 대책 특히 악용이 현저한 클라우드 플레이어 7의 대책 등 ⑤ 사이트 블로킹의 효과 등의 실태 등 ⑥ 구미에서 널리 유통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일본에서도 현재화가 우려되는 ISD 대책의 실태 및 대책 ⑦ 온라인 프로파일링 오픈 소스 인텔리전스 조사에 의한 해적판 게시자의 식별 ⑧ 온라인으로 유통하는 일본 콘텐츠의 해적판 피해액

(2)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해외에서 일본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세미나 개최, 상담, 모방 대책 관련 정보 제공, 세계 각국의 지역별로 사무소를 두고 지역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사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⁹³⁾

일본 JETRO는 아시아, 북미, 유럽,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주요 국가별 지식재산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모방품 침해대책 매뉴얼 및 보고서, 모방품·해적판 피해상담창구, 국제지식재산보호 포럼(IIPPF)을 운영하고 있다.

93) <<https://www.jetro.go.jp/themetop/ip/>>

知的財産権保護


ビジネス情報とジェトロの支援サービス

知的財産権保護のコンテンツ一覧

ピックアップ


国・地域別に見る		
アジア <ul style="list-style-type: none"> ・ アジア全般 ・ ASEAN ・ インド ・ インドネシア ・ 韓国 ・ カンボジア ・ シンガポール ・ タイ ・ 中国 ・ バングラデシュ ・ パキスタン ・ フィリピン ・ ブルネイ 	アジア(つづ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ベトナム ・ 香港 ・ マレーシア ・ ミャンマー ・ ラオス 	欧州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欧州全般
	北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米国 	ロシア・C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ロシア ・ ロシア・CIS全般
	中南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南米全般 	中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東全般
		アフリカ <ul style="list-style-type: none"> ・ アフリカ全般

国別模倣対策マニュアル・報告書等



詳細を見る

模倣品・海賊版被害相談窓口



詳細を見る

国際知的財産保護フォーラム (IIPPF)

[그림 2-10] JETRO 지식재산보호 홈페이지 화면

IV.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해외 저작권 보호 체계에 대한 비교·분석

한국, 미국, 유럽 및 일본의 해외 저작권 보호 체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미국은 대통령실 소속의 지식재산집행조정관을 중심으로 각 정부부처에서 지식재산 보호집행 관련 전문기관을 두고 해외에서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 감시, 집행 업무 수행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미국은 각 부처에 지식재산 집행 부서라는 내부 조직을 두는 전략을 취한다는 점이다. 한편 유럽은 하나의 지역 공동체로서 유럽집행 위원회를 중심으로 EUROPOL, Eurojust 등 관계 기관 및 각 국가별 협력을 통하여 해외에서 자국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과 일본은 각각 콘텐츠 및 저작물의 육성, 보호 등의 정책 수립과 지원을 담당하는 정부부처가 중심이 되고, 그 부처를 지원하는 지원기관을 두고 해외에서의 자국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한국은 정부부처 산하의 공공기관과 회원사를 가진 민간 기구가 협업하여 해외에서의 자국민의 저작권 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공공기관을 두지 않고 회원사를 가진 민간 기구가 해당 부처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표 2-12〉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해외 저작권 보호체계 비교

	한국	미국	유럽	일본
관계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집행조정관 (고위자문위원회, 집행자문위원회) - 법무부, 국무부 및 상무부는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에 중점을 두고 전담하는 전문 부서 및 프로그램을 운영 - 저작권청(Copyright Office)과 특허청(USPT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집행위원회 - 유럽지식재산청 - 유럽특허청 	지적재산전략본부, 문화청, 경제산업성
관계 기관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해외진흥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HS/ICE 주도의 국가 지식재산권 조정센터((NIPC) - 무부 형사과의 컴퓨터 범죄 및 지식재산권 부서(CCIPS) - 미국 국무부 국제지식재산권집행 사무소(IPE) - 미국 상무부 표준 및 지식재산 사무소(OS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연합 법집행협력청 (EUROPOL) - 유럽연합 형사사법 협력청(Eurojust) - 유럽사기방지청 (European Anti-Fraud Office) - 공동 조사팀에 대한 국가 전문가 네트워크 (JITs 네트워크) - 유럽 사법 사이버 범죄 네트워크(EJCN) - 민사 및 상업 문제의 유럽 사법 네트워크 (EJN) - 유럽 지식재산권 검사네트워크(EIPPN) - 유럽이사회의 관세협력 작업반(CCW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해외유통 촉진기구 (CODA) - 일본무역진흥 기구(JETRO)
주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저작권사무소 구축운영 - 해외 불법복제물 침해대응 지원 - 국제 저작권 보호인력 워크숍 -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 - 민간주도 해외저작권 보호체계 기반 구축 사업 - 해외 저작권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기관별 해외에서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 감시, 집행 업무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권 등 지식재산 범죄에 대한 수사 등 다양한 관계 기관과 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권 교육 및 인식제고 - 디지털포렌식 등 국제 집행 및 교류 - 광고억제, 필터링 등 - 주요국 저작권 등 정보조사 및 제공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일본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는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 음악, 게임, 출판 등 다양한 장르의 32개 기업, 12개 권리자 단체 회원, 9개의 창조회원과 함께 해외에서 저작권 보호활동을 한다는 점이다. 즉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보호하는 것이 가능하고, 권리자 집단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해외에서 저작권 보호활동을 하는데 더 용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현재 한국저작권보호원 등 공공기관의 예산을 일부 지원 받고 협업을 하고 있는 저작권해외진흥협회의 회원사를 다양화하고 현재 한류붐을 일으키고 있는 엔터테인먼트사 등 다양한 권리자 또는 권리자 단체를 포함하여 협업을 통해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제3장 우리나라의 해외 저작권 보호 현황 분석

I. 개관

우리나라는 각 기관별 목적에 맞게 해외 사무소를 두고 활동하고 있다. 해외에서의 산업재산권 보호에 대해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해외지재권실과 해외 사무소, 저작물 및 콘텐츠의 보호에 대해서는 한국저작권보호원 및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해외사무소에서 각각 지원 사업 등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콘텐츠의 해외비즈니스에 대해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해외비즈니스센터, 한국문화의 보급, 교류 및 전파에 대해서는 해외홍보문화원의 재외문화원 각각의 역할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의 해외 저작권 보호 현황을 파악하기에 앞서 국내 주요기관의 해외사무소 운영 사례를 살펴본다. 이와 함께 저작권 해외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과 국내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해외 저작권 보호체계의 현황,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국내 주요기관의 해외사무소 운영 사례 조사

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가. 설치 현황

해외지식재산센터(이하 IP-DESK)의 사업은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산업자원부에서 위조상품의 생산 및 유통이 잦은 중국을 거점 국가로 선정하고 2006년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이하 KOTRA)의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3개 무역관 내에 IP-DESK를 설치·운영한 IP-China Desk 사업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후 2008년부터 지식경제부와 특허청이 공동운영을 시작하였으며 태국과 베트남에 IP전담 DESK가 신규 설치됨에 따라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09년 이후에는 특허청이 단독으로 운영하게 되었으며, 2021년까지 중국, 태국, 베트남, 미국, 독일,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러시아, 멕시코 등 11개국 17개 지역 KOTRA 무역관 내에 IP-DESK를 설치·운영 중이다.⁹⁴⁾

94) 2021년 IP-DESK 백서,



[그림 3-1] IP-DESK 소재 현황

<표 3-1> 연도별 IP-DESK 설치 현황

구분	연도	설치지역	운영주체 (예 산)	사업수행기관
1기	'06년	중국(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산업자원부	KOTRA
	'07년	중국(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산업자원부	KOTRA
	'08년	중국(칭다오, 광저우)	지식경제부	KOTRA
		중국(베이징, 상하이), 태국(방콕), 베트남(호치민)	특허청	
2기	'09년	중국(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태국(방콕), 베트남(호치민)	특허청	KOTRA
		중국(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특허청	
	'10년	중국(선양), 태국(방콕), 베트남(하노이)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중국(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베트남(호치민)	특허청	KOTRA
	'11년	중국(선양), 태국(방콕)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중국(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베트남(호치민), 미국(LA)	특허청	KOTRA
	'12년	중국(선양), 태국(방콕)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중국(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베트남(호치민), 미국(LA, 뉴욕)	특허청	KOTRA
	'13년	중국(선양), 태국(방콕)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중국(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선양), 태국(방콕), 베트남(호치민), 미국(LA, 뉴욕), 독일(프랑크푸르트)	특허청	KOTRA
3기	'14년	중국(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선양), 태국(방콕), 베트남(호치민), 미국(LA, 뉴욕), 독일(프랑크푸르트)	특허청	KOTRA
	'15년	중국(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선양), 태국(방콕), 베트남(호치민), 미국(LA, 뉴욕), 독일(프랑크푸르트), 일본(도쿄)	특허청	KOTRA
	'16년	중국(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선양, 시안), 태국(방콕), 베트남(호치민), 미국(LA, 뉴욕), 독일(프랑크푸르트), 일본(도쿄)	특허청	KOTRA
	'17년	중국(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선양, 시안), 태국(방콕), 베트남(호치민), 미국(LA, 뉴욕), 독일(프랑크푸르트), 일본(도쿄), 인도(뉴델리), 인도네시아(자카르타)	특허청	KOTRA
	'18년	중국(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선양, 시안, 홍콩), 태국(방콕), 베트남(호치민), 미국(LA, 뉴욕), 독일(프랑크푸르트), 일본(도쿄), 인도(뉴델리), 인도네시아(자카르타)	특허청	KOTRA
	'19년	중국(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선양, 시안, 홍콩), 태국(방콕), 베트남(호치민), 미국(LA, 뉴욕), 독일(프랑크푸르트), 일본(도쿄), 인도(뉴델리), 인도네시아(자카르타)	특허청	KOTRA
	'20년	중국(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선양, 홍콩), 태국(방콕), 베트남(호치민), 미국(LA, 뉴욕), 독일(프랑크푸르트), 일본(도쿄), 인도(뉴델리), 인도네시아(자카르타), 필리핀(마닐라)	특허청	KOTRA
	'21년	중국(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선양, 홍콩), 태국(방콕), 베트남(호치민), 미국(LA, 뉴욕), 독일(프랑크푸르트), 일본(도쿄), 인도(뉴델리), 인도네시아(자카르타), 필리핀(마닐라)	특허청	KOTRA
		러시아(모스크바), 멕시코(멕시코시티)	특허청	

IP-DESK 사업은 2006년 시행 이후 사업수행 주체의 변화 시기를 중심으로 크게

3단계로 발전해왔다. 이는 KOTRA가 해외 인프라를 기반으로 단독 수행한 1기, 개별 국가를 지정하여 KOTRA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舊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이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한 2기, KOTRA가 인프라를 통합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전문성을 협력하는 3기로 구분된다.

2021년 기준으로 총 11개국 17개소에서 IP-DESK가 설치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러시아 모스크바(2021.5)와 멕시코 멕시코시티 IP-DESK(2021.6)에 신규로 설치되었다.

〈표 3-2〉 2021년 현재 IP-DESK 설치 국가

소관부처	수행기관	특허청	KOTRA
지원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선양, 홍콩), 태국(방콕), 베트남(호치민), 미국(LA, 뉴욕), 독일(프랑크푸르트), 일본(도쿄), 인도(뉴델리), 인도네시아(자카르타), 필리핀(마닐라), 러시아(모스크바), 멕시코(멕시코시티) / 11개국 17개소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 모스크바 IP-DESK 신규 설치 (2021.05.) * 멕시코 멕시코시티 IP-DESK 신규 설치 (2021.06.) 	

나. 인력현황

IP-DESK 전체인력은 총 30명이며, KOTRA 해외지재권실 전체 인력은 8명이다.

〈표 3-3〉 IP-DESK 전체인력 : 총 30명

구분	베이징	상하이	칭타오	광저우	선양	홍콩	방콕	호치민	LA	뉴욕	프랑크푸르트	도쿄	뉴델리	자카르타	마닐라	모스크바	멕시코시티
인원	3	2	2	2	2	1	3	2	2	2	2	1	2	1	1	1	1

〈표 3-4〉 해외지재권실 전체 인력

구분	실장	차장	전문위원	사원	인턴
인원수	1	3	1	2	1
소속기관	특허청	KOTRA	한국지식재산보호원	KOTRA	-

(3) 사업

IP-DESK 사업은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직접수행사업과 신청기업 측에 비용을 지원하는 비용지원 사업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직접수행사업은 지식재산권 상담지원, 해외공무원 초청연수, 이동식 IP-DESK 운영, 지식재산권 세미나 및 설명회 개최, 위조상품 식별설명회, 지식재산권 정보제공, 협력채널 구축 등이 있으며, 비용지원 사업으로는 상표·디자인 출원비용 지원사업, 피침해 실태조사 및 행정단속 지원사업, 법률의견서 작성 지원사업이 있다.

〈표 3-5〉 IP-DESK 사업내용

사업유형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내용
직접수행사업	지식재산권 상담지원	현지 지식재산제도, 정책소개, 출원절차 상담, 지식재산권 침해·피침해 구제방법 등 지식재산권 관련 상담지원
	해외공무원 초청연수	해외의 지식재산권 관련 공무원을 초청하여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도록 하여 현지 민·관 네트워크 구축
	이동식 IP-DESK 운영	현지 지식재산권 문제를 현장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IP-DESK 소재지 이외 지역 및 주요 전시회 등으로 출장 상담 수행
	지식재산권 세미나 및 설명회 개최	현지 진출기업 및 진출예정기업을 대상으로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유사시 관련 지원사업을 설명
	위조상품 식별세미나	해외 현지 단속공무원을 대상으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등록 제품에 대한 위조품 식별 교육과 이를 통한 자발적인 단속 유도
	지식재산권 정보제공	현지 진출기업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식재산권제도 변경 및 주요 정보를 한국어 등으로 번역하여 제공
	협력채널 구축	현지 유관기관, 단체, 기업 및 해외 진출 우리기업 등과 현지 네트워크 구축
비용지원사업	상표·디자인 출원비용 지원사업	현지에서 상표, 디자인 출원 시 발생하는 비용 및 절차 지원
	피침해실태조사 및 행정단속 지원사업	현지에서 발생하는 위조상품 피해 실태조사와 행정단속 비용 및 절차 지원
	법률의견서 작성 지원사업	현지에서 경고장, 침해감정서 등의 법률의견서 작성비용 및 절차지원

IP-DESK는 지식재산권 무료상담과 함께 현지 상표·디자인 출원 비용지원의 권리 확보 지원은 물론, 위조상품 관련 침해조사와 단속비용 지원, 현지 단속공무원 대상 위조상품 식별설명회, 이동식 IP-DESK 및 협력채널 구축 등 다양한 형태의 해외지식 재산 보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3-6〉 '21년 IP-DESK 사업실적 총괄표

세부 사업명	상담간	중국						미국				독일	일본	신남방 지역						멕시코	러시아	합계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선양	홍콩	소계	LA	뉴욕	소계			프랑크푸르트	도쿄	태국		베트남					인도		필리핀		소계
																방콕	호치민	뉴델리	자카르타				마닐라	멕시코 시티	모스크바		
지재권 상담	상담간	435	560	498	360	354	111	2,318	4,080	1,746	5,826	334	1,302	522	198	312	82	355	1,469	8	12	11,269					
출원 지원	상표	접수	276	168	101	79	57	37	718	1,184	448	1,632	97	266	57	125	44	68	42	336	8	53	3,110				
		지원	164	101	67	51	21	23	427	693	260	953	68	180	32	52	20	35	24	163	3	4	1,798				
	디자인	접수	30	26	11	1	10	2	80	76	16	92	23	33	2	4	3	1	0	10	1	7	246				
		지원	15	14	7	1	5	1	43	51	5	56	19	24	1	1	1	0	0	3	1	0	146				
	특허*	접수	9	1	1	0	0	0	11	13	16	29	7	8	0	1	1	0	0	2	0	4	61				
		지원	0	1	0	0	0	0	1	3	9	12	4	2	0	0	0	0	0	0	0	0	19				
	침해 피청해 (피청해 법률의 견제)	지원	5	0	0	0	2	0	7	6	9	15	2	0	2	2	2	0	0	6	0	0	30				
	현지분쟁 예방대응		1	1	1	0	0	1	4	0	0	0	0	0	1	1	1	0	1	4	0	0	8				
세미나 및 설명회		6	5	2	11	4	5	33	12	7	19	7	4	8	6	9	3	3	26	3	2	97					
전시회 동 상담		5	7	2	10	4	0	28	3	1	4	4	1	0	1	0	1	3	5	0	0	42					
협력채널 구축		17	16	2	18	3	15	71	3	2	5	1	5	7	2	0	1	1	11	3	1	97					
정보제공 및 홍보		18	19	24	51	18	9	139	63	42	105	8	13	34	82	8	3	52	179	11	2	457					

특히, 해외 현지 단속공무원 및 단속인력을 대상으로 우리기업 제품의 정품과 위조상품 식별 요령을 교육하여 단속 효과를 높이고 자발적 단속을 유도하고 있는 ‘위조상품 식별설명회’는 중국, 태국, 베트남, 인도, 필리핀에서 10회에 걸쳐 추진하였다.

그리고 한국기업의 참여가 많은 해외 주요 전시회에 참가하여 사업안내 및 상담 부스 운영을 통해 한국기업의 지식재산권 애로 사항을 현장에서 해결하는 이동식 IP-DESK를 총 44회 운영하였다.

2. 해외문화홍보원의 재외문화원

해외문화홍보원은 28개국 33개소에 재외문화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8개국 9개소에 문화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다.



[그림 3-2] 재외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현황

주요사업으로는 재외문화원은 한국문화체험프로그램, K-POP 아카데미 운영, 한식 문화교육, 한국문화가 있는 날, 한국문화체험관 등을 운영하고 있다. 재외문화원 예산 비중은 해외문화홍보원 예산 중 사업비 비중이 27.2%(평균 4.3억 원)를 차지하고 있다. 인력은 문화원장 1인(3년 주기), 행정직원 9~10명(상시) 근무하고 있다. 총 32개 문화원 중 23개 문화원이 소규모 임차건물 사용, 코리아센터 5개소 운영(LA, 북경, 상해, 동경, 파리)하고 있다.

특히 2022년에는 뉴욕코리아센터 추진 중('22.상 예정)이며, 오사카·태국 문화원은 국유화 ('23년 예정)할 예정이다.⁹⁵⁾

〈표 3-7〉 2022년 재외문화원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예산 (A)	2022 예산* (B)	증 감 (B-A)	증감률 (%)
일반회계	129,364	145,627	16,263	12.6
관광기금	21,481	5,606	△15,875	△73.9
합 계	150,845	151,233	388	0.3

3.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비즈니스센터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해외비즈니스센터는 8개국에 해외비즈니스센터를 두고 있으며, 2개국에 마케터를 두고 있다.

〈표 3-8〉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비즈니스센터 및 마케터 인력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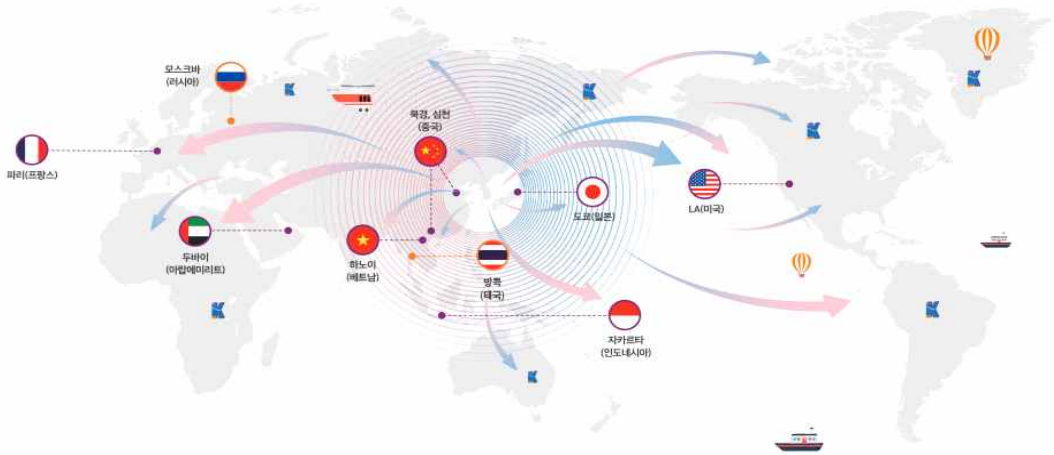
구 분	미 국	북 경	심 천	일 본	유 럽	인도 네시 아	베 트 남	U A E	태 국	러 시 아
인원	3	4	3	3	3	7	4	1	1	1

주요지원 사업으로는 해외 바이어 매칭, 해외동향정보 제공, 해외진출상담, 현지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해외 바이어 매칭이란 해외 비즈니스센터는 B2B 행사 개최를 통해, 참가사 맞춤형 최적의 바이어를 매칭하는 것이며, 해외동향 정보 제공 사업은 글로벌 전시마켓 정보, 현지 소비자 분석, 현지 문화정책 분석, 현지 주요 기업의 디렉토리부터 종합 비즈니스 가이드북 까지 해외진출을 위한 통합 정보를 제공(해외 콘텐츠 산업 이슈 및 현지소식, 산업동향, 글로벌 마켓보고서, 특화 보고서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해외진출상담을 하고 있는데, 현지 콘텐츠시장에 대한 기업 맞춤형 정보, 진출 방향 등을 상담, 법률·지식재산권·마케팅 등 각 분야의 현지 전문 자문위원이

95) 해외문화홍보원, 2022년 업무계획 참조.

상담을 실시한다. KOCCA 해외 주재국가의 주요 콘텐츠 관계자와의 네트워크를 쌓아 국내 기업에게 최적의 파트너를 추천, 국내 최대의 콘텐츠분야 해외 바이어 POOL을 구축하며, 해외 스마트 오피스 지원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인프라를 지원한다.



[그림 3-3]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비즈니스센터 현황

4. 한국저작권보호원/한국저작권위원회 해외사무소

현재 한국저작권보호원의 해외사무소는 태국, 필리핀, 베트남 3개 해외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북경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업무로는 저작권 인증업무, 등록지원업무, 네트워킹 및 교류업무, 저작권 관련 정보제공 및 기타업무 지원을 하고 있다.

<표 3-9> 저작권 해외사무소 현황

구 분	중국 사무소	태국 사무소	필리핀 사무소	베트남 사무소
설립일	2006. 4. 26.	2007. 5. 29.	2011. 12. 24	2012. 12. 14
인력 (11명)	3명	4명	4명	3명
	(파견/위원회) 직원 2	(파견/보호원) 직원 3	(파견/보호원) 직원 2	(파견/보호원) 직원2
위치	북경 한국문화원 4층	방콕 CW빌딩 38층	마닐라 따귀 HSS코퍼레이트플 라자타워1 22층	하노이 참빛타워 17층

가. 태국 사무소

한국저작권보호원의 태국사무소는 ‘i) 현지 해외사무소 운영과 관련하여 주재국의 법령·정책 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 및 관리, ii) 현지 저작권 법제·정책·산업·시장 등 정보 조사·연구 및 자료 제공, iii) 현지 저작권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과의 교류와 협력, iv) 현지 한국저작물의 권리정보 확인·인증 및 저작권 보호·교역 협력창구, v) 현지 저작권 등록·계약·구제조치 등에 대한 컨설팅 및 법률지원, vi) 현지 불법 저작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저작물 유통현황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 밖에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현지 추진·지원, 기타 해외사무소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도 포함된다.

태국 사무소의 저작권 침해 대응과 교류협력과 관련된 업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저작물의 불법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침해대응 조치를 하였다. ‘21년에는 20,055건에 대하여 법무법인을 통한 경고장 발송 지원 및 불법URL에 대한 삭제조치를 한 바 있다. ‘22년에는 침해대응 삭제 목표(20,500건) 대비 154.89%(31,752건, ‘22 3분기 기준)를 달성하고 있다.

〈표 3-10〉 모니터링을 통한 침해 대응조치

(단위: 건)

구분	'21년 실적	'22년 목표	'22년(7월) 실적	달성율 (삭제율)	비고
태국	20,055	20,500	31,752	154.89%	

※ '22-1차 : 총 22,701건 삭제 완료(중점 8,198건 삭제 및 상시 14,503건 삭제)

※ '22-2차 : 총 9,501건 삭제 완료(중점 5,077건 삭제 및 상시 3,974건 삭제)

또한 '22년에는 태국 정부 및 기관과 공조⁹⁶⁾하여 12개 주요 한류 침해 불법사이트 대상 사이트 차단 등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 게임사(주)제페토의 태국에 위치한 불법 사설서버에 대하여 태국 지식재산국과 경찰청의 협업을 통하여 적극적인 침해 대응조치를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불법사설서버 4개중 2개 서버 폐쇄 완료('22.06)하였고, 현재 2개의 서버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밖에 태국 내에서 성행하고 있는 저작물 유통사이트에 대하여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불법 사이트에 대한 경고장 발송에 필요한 연락처 및 서버 소재지 등을 상시 업데이트 하고 있다.

96) 태국 지식재산국(DIP), 태국디지털경제사회부(MDES) 등의 태국 정부기관과 MPA, 태국영화협회, 태국 통신사(True, ISP) 등 민간단체 그리고 KBS, SBS, JTBC, SLL(총 4개사)가 참여하였다.

〈표 3-11〉 태국 내 합법 및 불법 사이트 현황

(단위: 건)

번호	구분	합법 사이트	불법 사이트
1	드라마	23	388
2	영화	20	315
3	게임	15	30
4	음악	6	8
5	예능	8	35
6	출판	37	15
7	웹툰	11	161
합계		120	952

나. 필리핀 사무소

한국저작권보호원의 필리핀 사무소는 i) 한류 콘텐츠 현지 침해대응 및 구제조치 지원(온·오프라인 모니터링 및 경고장 발송을 통한 불법복제물 삭제 조치), ii) 한류 콘텐츠 기업 현지 진출 및 합법유통 활성화 지원(저작권 상담, 컨설팅, 저작권 등록 및 법률 자문 지원 등), iii) 한류 콘텐츠 유통·이용실태조사 및 저작권 인식제고 홍보(현지 당국 저작권 정책 및 콘텐츠 시장 동향 분석 보고서 산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한국-필리핀 정부간 행사 등 현지 저작권 관련 정부기관에서 개최하는 행사도 지원하고 있다.

필리핀 사무소의 저작권 침해 대응과 교류협력과 관련된 업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저작물의 불법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침해대응 조치를 하였다. '21년에는 36,827건에 대하여 법무법인을 통한 경고장 발송 지원 및 불법URL에 대한 삭제조치를 한 바 있다. '22년에는 침해대응 삭제 목표(38,000건) 대비 77.1%(29,300건, '22. 8월 기준)를 달성하고 있다.

〈표 3-12〉 모니터링을 통한 침해 대응조치

(단위: 건, %)

구분	'21년 실적	'22년 목표	'22년(8월) 실적	달성율	비고
필리핀	15,468	16,000	18,149	113.43%	
인니	21,359	22,000	11,151	50.68%	
합계	36,827	38,000	29,300	77.10%	

또한 필리핀 사무소는 필리핀 지식재산청 및 한국대사관 등 유관기관들과의 저작권 보호 및 집행 분야 교류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22년에는 필리핀 지식재산청 초청 설립 25주년 행사에 참석하여 주필리핀 미국대사관 경제참사관과 필리핀 내 접속차단 관련 지식재산법 개정을 위한 공동협력을 추진한 바 있다.

다. 베트남 사무소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베트남 사무소는 i) 베트남 내 저작권 인식제고 홍보·캠페인 및 교육, ii) 한국 저작권사와 베트남 유통사 간 합법유통 상담·지원, iii) 베트남 내 저작권 동향정보 수집 및 제공(주·월간), iv) 베트남 내 불법저작물에 대한 모니터링 등 불법복제물 침해대응, v) 기타 저작권 등록·계약·구제조치 등에 대한 상담 및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 내 저작권 관련 정부기관(COV⁹⁷), ABEI⁹⁸)·유관기관(VCCA⁹⁹) 및 신탁관리단체(VCPMC¹⁰⁰), APPA¹⁰¹) 등과의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베트남 사무소의 저작권 침해 대응과 교류협력과 관련된 업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저작물의 불법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침해대응 조치를 하였다. '21년에는 30,345건에 대하여 법무법인을 통한 경고장 발송 지원 및 불법URL에 대한 삭제조치를 한 바 있다. '22년에는 침해대응 삭제 목표(31,500건) 대비 62.82%(23,715건, '22. 6월 기준)를 달성하고 있다.

〈표 3-13〉 모니터링을 통한 침해 대응조치

(단위: 건, %)

구분	'21년 실적	'22년 목표	'22년(6월) 실적	달성율
베트남	30,345	31,500	23,715	62.82%

'22년 8월에는 베트남의 Phan Law Vietnam(PLV)를 통해 불법 유통되는 영상(motchill.net), 웹툰(truyengihot.net, 3,926건 삭제)의 접속을 차단한 바 있다.

또한 베트남 사무소는 베트남 정부와의 교류협력 사업으로 '22년 8월 한·베 저작권 포럼을 개최하였다.

97) 베트남 문체부 저작권국(Copyright Office of Viet Nam, COV)

98) 베트남 정보통신부 방송전자정보국(Authority of Broadcasting and Electronic Information, ABEI)

99) 베트남 저작권창조협회(Vietnam Copyright and Creativity Association, VCCA)

100) 베트남 음악저작권보호센터(Vietnam Center for Protection of Music Copyright, VCPMC)

101) 베트남 음악실연자권리보호협회(Association for Rights Protection of Music Performing Artists, APPA)

5. 주요 기관별 해외사무소의 운영인력, 방식, 특징, 역할 등 비교

이상으로 국내 주요기관의 해외사무소 운영 인력, 방식, 지원 사업 현황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코트라의 IP-DESK와 한국저작권보호원/한국저작권위원회의 해외 사무소이다. 해외문화원은 한국 문화를 해외에 확산하고 정책소통을 통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 관련 해외 진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해외비즈니스센터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관련 상담에 대해서도 현지 법률사무소 등을 통하여 자문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진출 지원센터를 통한 지식재산권 상담은 저작권을 포함하여 지식재산권 전반 '21년 39건의 상담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운영방식의 측면에서는 대부분의 해외사무소가 현지 건물을 임차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해외문화홍보원의 재외문화원의 경우 코리아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표 3-14〉 주요 기관의 해외사무소 운영 현황 비교

	역할	운영인력	운영방식	지원사업
KOTRA IP-DESK	해외에서 우리나라 산업재산권 보호 관련 각종 지원 사업 실시	해외사무소 인력(17개 사무소: 총 30명)	- 주요국에 해외사무소 설치 - 특허청 예산지원(현지인 인건비+ 지원사업비)	- 지식재산 상담지원, 협력채널 구축 등 직접수행사업 - 상표디자인 출원비용 지원 등 비용지업사업 실시
해외문화홍보원 (정부기관)	세계속 한국문화 확산 및 정책 소통을 위한 국가이미지 제고	- 28개국 33개소에 재외문화원을 운영 - 8개국 9개소에 문화홍보관을 운영	- 총 32개 문화원 중 23개 문화원이 소규모 임차건물 사용, 코리아센터 5개소 운영(LA, 북경, 상해, 동경, 파리)	-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 K-POP 아카데미 운영, 한식문화교육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비즈니스 센터	콘텐츠 관련 해외 진출 기업 지원	8개국(28명)에 해외비즈니스센터를 두고 있으며, 2개국(2명)에 마케터를 운영	- 현지건물 임차	해외 바이어 매칭, 해외동향정보 제공, 해외진출상담, 현지네트워크 구축 등의 업무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해외진출 기업 등의 저작권 보호지원	태국, 필리핀, 베트남 3개국 11명(이상, 한국저작권보호원), 중국(북경) 사무소(한국 저작권 위원회)	- 현지건물 임차	저작권 인증업무, 등록지원업무, 네트워킹 및 교류업무, 저작권 관련 정보제공 및 기타업무지원

III. 해외 저작권 보호 현황 조사

1. 한국저작권보호원의 해외저작권 보호체계 분석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지원 및 집행과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며 저작권 보호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여 문화 및 관련 사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주요사업으로는 (i) 온라인 모니터링(불법복제물 상시대응체계 구축 및 건전한 콘텐츠 유통환경 조성), (ii) 심의·행정조치(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시정권고 등 행정조치 추진), (iii) 저작권 침해대응시스템(온·오프라인 저작권 침해대응 컨트롤 타워 체계 구축), (iv) SW 저작권보호(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예방을 위한 소프트웨어 단속 기술지원, 민관협력체계구축), (v) 디지털 저작권 침해과학수사지원(디지털 증거에 대한 객관적 분석 수행 및 저작권 수사의 과학화·선진화 추진), (vi) 연구·개발(법제·전략·정책연구와 지능형 저작권보호체계 구축 및 실증적 보호기술 연구 추진), (vii) 저작권 침해실태조사(저작권보호 환경에 대한 조사 연구 등), (viii) 저작권 보호 홍보, (ix) 국제협력(저작권보호 관련 정책, 법제, 기술 등에 대한 정보 교류를 통해 국제적 협력방안 논의), (x) 저작권보호 법률 컨설팅(저작권 보호 법률상담 및 전문 교육을 통한 올바른 저작권 이용환경 조성)을 들 수 있다.¹⁰²⁾



[그림 3-4] 한국저작권보호원 조직도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온라인 모니터링, 저작권 침해대응시스템, 디지털 저작권 침해 과학수사지원, 저작권 보호법률 컨설팅 등 저작권 보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업 수행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해외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해외사업부를 두고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 해외사무소를 통한 저작권 피해구제 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02) <<https://www.kcopa.or.kr/>> 참조.

그러나 불법복제물신고 COPY112 사이트(이하, COPY112 사이트)를 통한 해외 저작권 침해신고 및 상담, 보호요청과 결과 피드백 등과 관련한 업무가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윈스톱 피해구제를 희망하는 민원인 입장에서 창구가 불명확하게 느껴질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참고로, 현재 한국저작권보호원 내에서 COPY112 사이트는 온라인보호부에서, 상담은 법제지원부, 구제요청은 해외사업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2022년 11월 기준).

이는, 해외 저작권 보호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단계이니만큼 아직까지는 한국 저작권보호원에서 해외 저작권 보호를 위해 원내 관련 부서 및 업무들을 윈스톱 서비스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나 이를 통솔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아직 탄탄히 구축되어있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보인다.

이에, 원내에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이나 보호 관련 민원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접수하고 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아 처리하는 것이 원활할 수 있도록 전담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이를테면 COPY112 사이트를 통해 민원이 접수가 되면, 해외 민원의 경우 해외사업부로 자동으로 이관이 되고, 그 민원을 사무소에서 처리하는 프로세스가 막힘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조 체계 및 외부 대응 공통 매뉴얼 등을 마련하여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구축해두어야 한다.

저작권 보호 상담도 유사한 측면이 있다. 해외에서 저작권을 침해받거나, 해외 사이트에 국내 콘텐츠 기업이 저작물이 업로드된 사이트 등을 발견하여 조치를 하고 싶을 경우에 어떠한 사법적, 형사적 내지는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게 된다. 현재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보호 상담에 대한 창구를 마련하고 있으나, 국내외 구분없이 운영되고 있어, 별도의 '해외' 상담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다음으로 해외 저작권 관련 분쟁정보 등 해외 현지 정보제공에 대해서도 한계점이 존재하는 것을 판단된다. 해외사업부에서는 '해외 저작권 보호동향 조사·발간' 정도의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경우에는 해외정보플러스 사이트에 21개국의 비교적 간단하긴 하지만 법제정보, 등록제도, 침해대응(법적) 관련 해외저작권 가이드를 제공하고, 해외사무소 뉴스 코너를 통해 중국의 저작권 관련 최신 뉴스를 제공하고 있다.

총 1282건 (Page : 1/129) 제목 🔍 검색 ↻ 초기화

번호	제목	등록일	첨부	조회수
1282	중국판권보호중심, 저작권 온라인 등록 서비스 전격 추진	2022-11-02	📎 1	65
1281	중국에서 무용저작물의 보호범위	2022-11-02	📎 1	67
1280	중국 저작권 최근 10년의 성과	2022-10-25	📎 1	107
1279	중국 음상저작권집중관리협회, '2021년 연보' 발행	2022-10-17	📎 1	116
1278	상하이 검찰원, '상하이 저작권 검찰백서' 발표	2022-10-17	-	113
1277	중국 광둥성 지방의회, 중국 첫 저작권 관련 지방성법규 제정	2022-10-11	📎 1	145
1276	중국에서 의류디자인의 저작권 보호	2022-10-04	📎 1	243

[그림 3-5]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해외사무소 뉴스 코너(중국 저작권관련)

이상을 종합해 볼 때,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국내외 저작권 보호를 위한 비교적 훌륭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국내 저작권 보호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므로 해외에서 우리나라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밸런스를 갖출 필요가 있다. 그간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해외진흥협회에서 해외 저작권 침해대응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해외 저작권 보호 업무가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 이관되었고, 국내외 저작권 보호를 담당하게 되었으므로, 기관 전체적 측면에서 해외 저작권 보호체계를 효율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해외 사무소 근무 경험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설문)를 통한 사례조사

가. 설문개요

‘해외 저작권 보호 체계 효율화’를 위한 해외 사무소 직원(실무자) 대상 설문조사는 해외저작권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해외사무소 직원들의 사업 운영상의 애로점, 한국저작권보호원 및 정부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효율적인 해외저작권 보호체계 수립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하였다.

본 설문은 태국, 필리핀, 베트남, 중국의 사무소 직원 7명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설문의 주요내용은 크게 (i) 해외사무소 방문객에 대한 지원 서비스에 대한 내용, (ii) 현지에서의 현지 기관과의 협업, (iii) 현지에서 국내기관과의 협업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그 외 현지사무소에서는 제공하지 않은 지원서비스로, 기업(개인)이 요청한 해외저작권보호 관련 서비스나 사무소 실무자 입장에서 업무 수행 시 느낀 해외 보호사업 발전 방안 및 기존 사업의 강화 방법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받았다.

나. 설문결과

(1) 해외사무소 방문 목적 및 문제 해결유무

해외사무소 방문 목적은 국가에 상관없이 현지 저작권 관련 정보의 획득 또는 현지 기업과의 저작물 계약 관련 상담을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중국내 저작권 인증 기구로 등록된 중국 사무소의 경우 저작권 인증 및 등록상담을 위해 방문하고, 태국 사무소는 저작권 침해관련 법적 대응을 위한 자문을 받기 위해 방문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부분의 경우, 방문객의 민원이 현장에서 해결되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로, 현지 법·제도적, 국가 문화 특성에 따른 한계와 예산 및 전담인력 부족(중국, 필리핀)을 원인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실무자 입장에서 방문자들의 요청사항에 대해 충분히 지원해주기 위해 가장 먼저 보완되어야 할 부분으로는 국가 저작권 보호 체계 가이드북 마련을 다수의 실무자들이 선택하였다. 추가적으로 침해대응 가이드라인 마련과 현지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류협력 활동 확대도 보완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2) 해외에서의 현지기관 및 국내 기업과의 협업

해외에서 현지기관과의 협업은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필리핀의 경우 필리핀 지식재산청, 필리핀 판매채위원회 등과 침해대응 협력, 저작권 인식제고 및 홍보, 포럼 등의 업무를 협업하고 있었다. 태국의 경우 태국 지식재산국, 경찰청 등과 저작권 교류협력, 침해대응 등 저작권 업무 전반에 걸쳐 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중국은 판권보호중심과 협력하여 침해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중국 공안국과 협업하여 한국 권리사 권리관계 인증을 해주고 있다. 베트남 사무소는 베트남 문체부 저작권국과 저작권 교류협력을 수행하고 있으나,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사무소 이관이 진행중으로 양기관 업무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지에서의 국내기관과의 협업은 주로 해외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협의체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의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필리핀 해외 고용청 송출인력 대상 저작권 인식제고 교육 추진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해외진흥협회, 개별 저작권자(방송사 등)와 현지 저작권 관련 협력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저작권 침해대응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태국은 KOTRA와 함께 태국 지식재산국 관련 행사 등 주기적으로 협의하며 저작권 교류협력 행사 공동 참여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콘텐츠 저작권 인식 제고를 위한 행사 개최 등의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 주 베트남 한국문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비즈니스 센터에서 저작권 인식제고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3) 해외저작권 보호 사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

마지막으로 현지에서는 직원들로부터 저작권 사무소에서는 제공하지 않은 지원서비스로, 기업(개인)이 요청한 해외저작권보호 관련 서비스가 있는지, 해외 보호사업 발전 방안 및 기존 사업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무엇보다도 방문한 방문객들이 실제적으로 지원사업의 많은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가 다수 있어서 현지 소송지원, 사이트 폐쇄 등, 한국 기업의 원활한 진출을 위한 바우처 사업 및 현지 법무법인(로펌) 연결 등 각종 지원사업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고 답하였다. 또한 현지 저작권 등록 대행, 혹은 지원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해 보인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더불어 현지에서 회사 설립, 상표권 등록을 희망하는 교민의 상당한 건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해외저작권보호 효율화를 위해서는 사무소 예산 확대, 고용, 저작권 해외사무소는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한국 정부에서 MOU 등 적극적인 협력 체계를 사전 구축을 통한 수사기관 간 교류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동남아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필요 예산 집행의 활용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예를 들어, 경고장 발송 예산에 대하여 경고장 발송 외 저작권 침해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예산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으면 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로펌 경고장 발송을 통한 침해대응의 경우 더 이상 불법사이트 운영자에게 위협이 되지 않아 삭제율이 감소하고 경고장이 도달 가능한 이메일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발송을 어렵게 하고 있음에 따라 현지 기관 협력을 통한 사이트 폐쇄 등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현지 학생들 및 송출인력 저작권 인식 교육 외에 교민들도 저작권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 시사점

해외저작권 사무소의 현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한국 정부와 현지정부와의 MOU 등 적극적인 사전 협력 체계 구축

해외사무소의 서비스가 대부분의 경우, 방문객의 요청사항을 해결해 주었으나 못하는 경우는 법제도적 한계, 국가 문화 특성에 따른 한계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든

국가는 자신들만의 특이제도와 특이문화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부분은 제도적 접근도 중요하지만, 인적자원을 통한 원활한 관계 형성을 통한 접근이 효과를 볼 수도 있는 부분이다.

또한 현재 저작권 해외사무소는 수사 권한이 없으므로, 현지 불법 저작물에 대한 행정조치 등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현지 주요 관련기관과의 MOU 등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사전에 구축하여 수사기관 간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2) 지원사업의 적극적인 홍보 및 저작권 교육

현지 해외사무소에서는 방문한 방문객들이 실제로 지원사업의 많은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가 다수 있다. 이에,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에서 추진하는 저작물 불법유통 감시·조사, 저작물 보호전략 컨설팅, 저작권 침해감정, 침해대응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 이와 더불어 현지 학생들 및 송출인력 저작권 인식 교육 외에 교민들도 저작권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인다.

(3) 예산 집행의 활용성 제고

동남아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필요 예산 집행의 활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경고장 발송 예산이 있는데, 경고장 발송 외 저작권 침해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예산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되면 보다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이 용이할 것으로 사료된다. 물론 이로 인해 예산의 관리나 집행에 대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시범 사업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한번 고려해 볼만하다.

(4) 다양한 불법 사이트 제재 방법 활용

로펌 경고장 발송을 통한 침해대응의 경우 더 이상 불법사이트 운영자에게 위협이 되지 않아 삭제율이 감소하고 경고장이 도달 가능한 이메일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발송을 어렵게 하고 있음에 따라 웹사이트 운영자가 아닌 '그 웹사이트 서버를 호스팅 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연락하여 해당 사이트를 제재하는 방식¹⁰³⁾ 연구하여 도입 여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103) 저작권해외진흥협회의 침해대응 업체인 독일 COMESO GMBH 방법

3. 해외 저작권 보호 체계 효율화를 위한 콘텐츠 기업 대상 설문조사

가. 설문개요

(1) 목적

해외저작권보호와 관련하여 콘텐츠 기업의 애로점과 정부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효율적인 해외저작권보호체계 수립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콘텐츠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2) 설문지 구성

설문은 2022년 10월 20일(화)부터 11월 7일(화)까지 2주간 수행되었으며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되었다. 설문 대상자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보유한 콘텐츠기업 리스트를 활용하였다.

설문의 주요 내용은 기업일반정보와 해외저작권보호에 관한 전반적인 경험, 한국 저작권보호원의 저작권보호 사업에 대한 경험, 추가되었으면 하는 지원서비스 등으로 구성하였다.

〈표 3-15〉 설문지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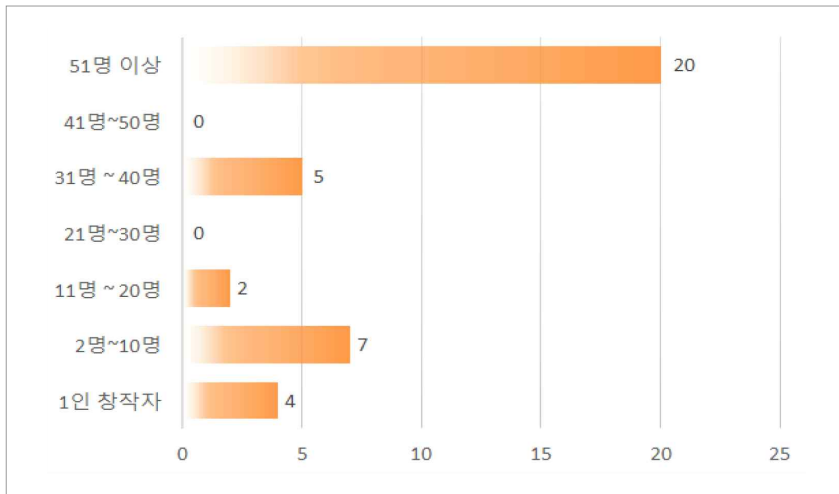
구분	조사항목
기업일반정보	기업규모, 콘텐츠 분야, 진출국가 및 진출예정국가
해외저작권보호 일반	저작권보호 서비스 활용경험 지원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 해외저작권 보호의 애로사항 해외저작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서비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해외저작권보호지원사업	맞춤형 해외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의 인식여부 서비스를 이용한 국가 이용한 서비스 종류 만족도 및 만족/불만족의 이유 해외 사무소 필요지역
요구정책 및 지원제도	요구하고 싶은 정책이나 지원제도

나. 기초통계 분석

설문조사 결과 142개 기업에 설문 URL을 발송하여 총 38개의 콘텐츠 기업이 응답하였다. 최종설문문항까지 응답을 완료 개업은 28개사로 응답률은 20%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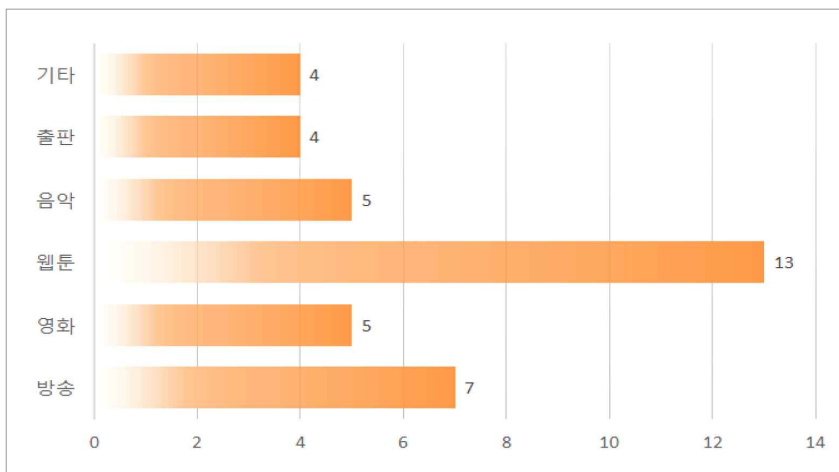
(1) 기업일반

설문조사에 응답한 38개의 기업 중 종업원수가 51명이상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20개사로 전체 응답기업의 52%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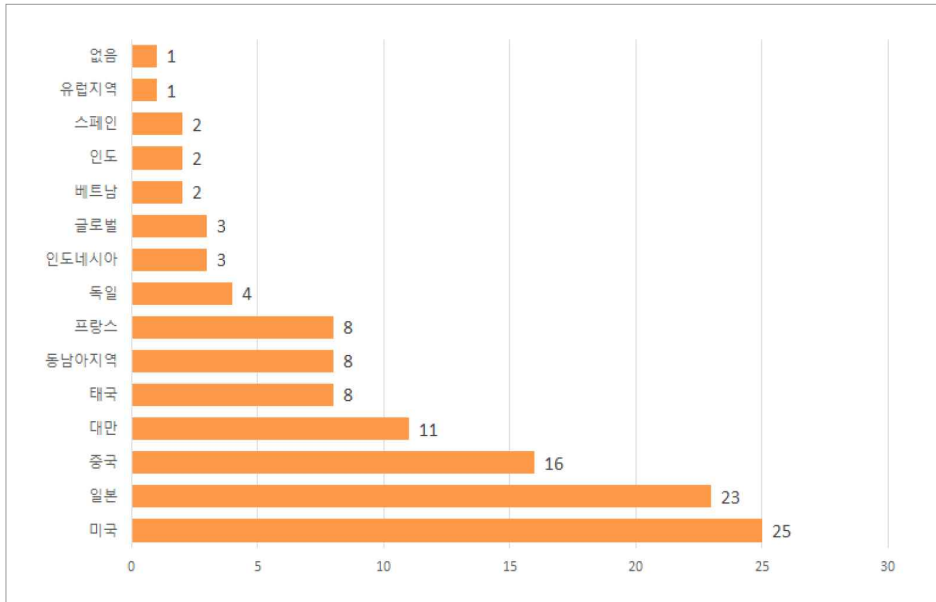
[그림 3-6] 응답기업의 종업원 수

38개의 응답기업 중 웹툰 분야에 종사하는 응답기업이 13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방송에 종사하는 응답기업이 7개사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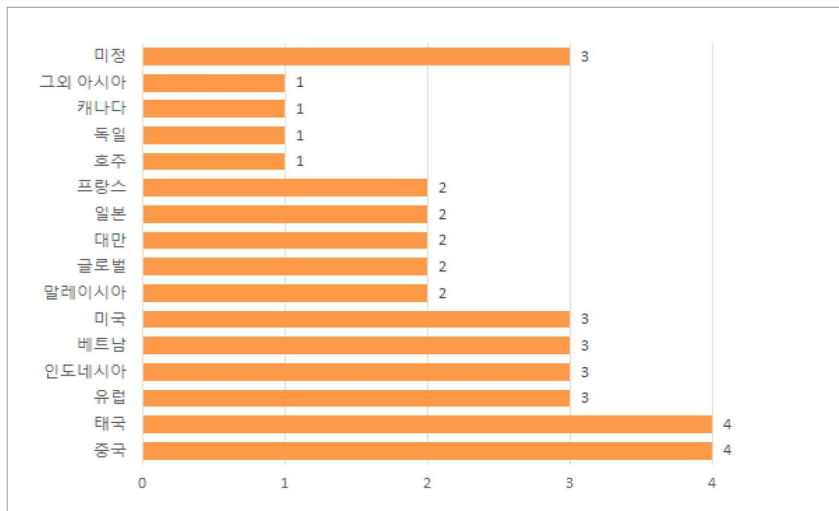
[그림 3-7] 응답기업이 종사하는 콘텐츠 분야

응답기업이 진출한 국가는 미국이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일본 중국, 대만, 태국 순으로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유럽에서는 프랑스와 독일에 다수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과 방송콘텐츠 일부 기업은 아시아, 유럽을 넘어 전세계에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8] 응답기업의 진출국가(중복응답)

38개의 응답 기업 중 추후 진출예정인 국가는 중국과 태국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미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유럽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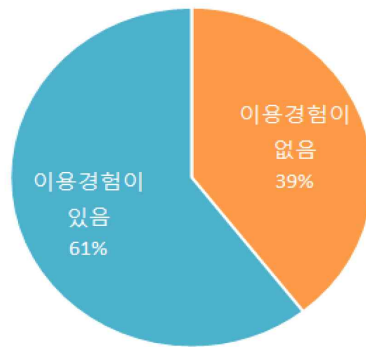
[그림 3-9] 응답기업의 진출예정국가(중복응답)

다. 설문결과 분석

(1) 해외저작권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설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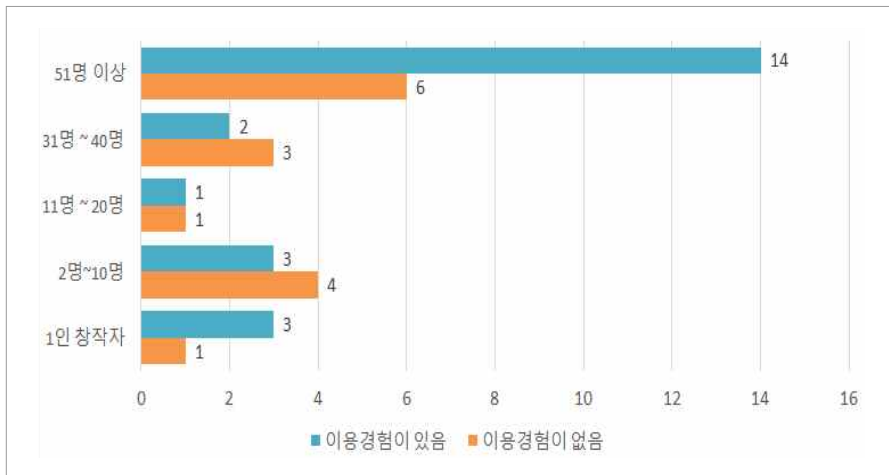
① 공공기관에서 해외저작권보호 서비스 이용 경험

한국저작권 보호원을 포함하여 각 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해외저작권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은 23개 기업으로 전체 응답기업의 60.5%를 차지하였다¹⁰⁴⁾.



[그림 3-10] 해외저작권보호 서비스 이용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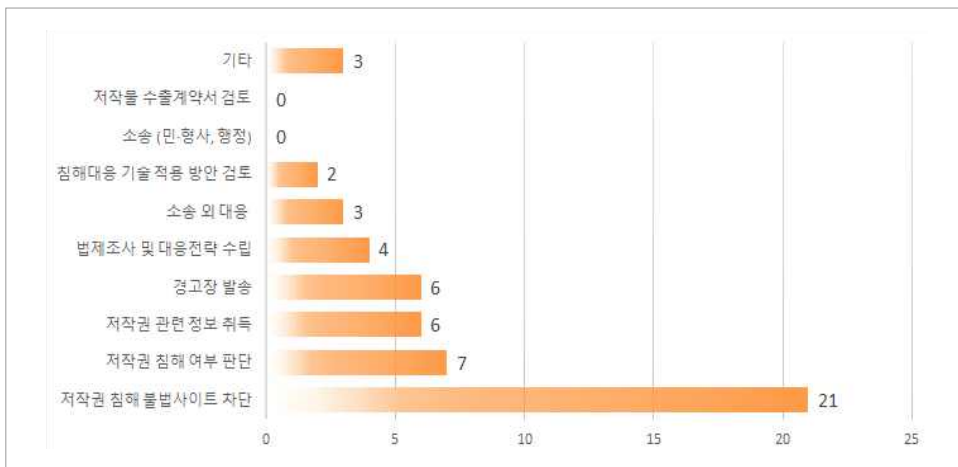
이를 기업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용경험이 있는 기업은 1인 창작자와 51명 이상의 대기업이 높게 나타난 반면, 2인 이상~ 50명 이하의 기업에서는 이용경험이 없는 기업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3-11] 기업규모별 해외저작권보호 서비스 이용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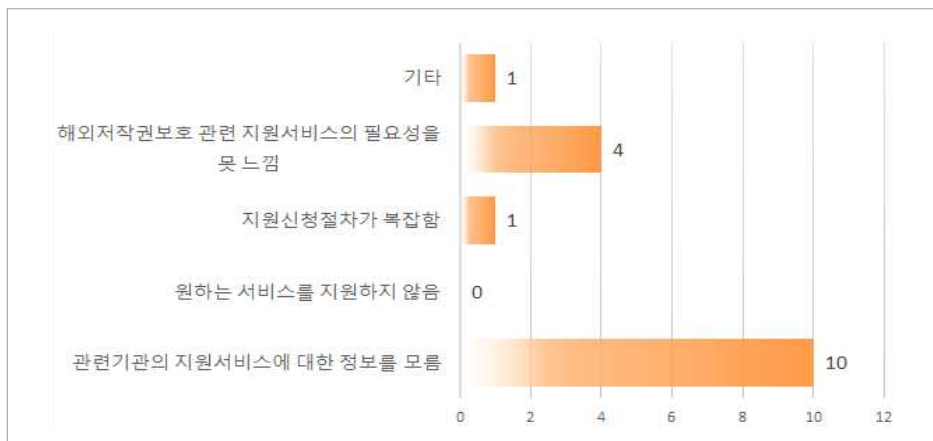
104) 해외저작권 보호 서비스 이용 경험 유무에 대한 결과는 설문조사를 위한 기업리스트를 한국저작권 보호원이 보유한 기업명부를 활용한 것으로 결과의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해외저작권 보호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23개사를 대상으로 이용한 서비스에 대해 설문한 결과,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 차단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였으며 저작권침해 여부 판단과, 관련정보 획득, 경고장 발송 등의 서비스도 이용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해외 저작권 등록, 저작권침해 불법사이트 채증 자료 획득, 해외 판권 불법 행위 리모델링이 있었다.



[그림 3-12] 해외저작권 보호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기업이 이용한 서비스(중복응답)

해외저작권 보호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의한 결과 관련기관의 지원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기대하는 효과를 보지 못할 것 같으므로”가 있었다. 다수의 응답기업이 해당서비스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련 지원제도 및 사업에 대한 홍보가 확대 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사업의 성과에 대한 분석을 하고 이를 함께 홍보함으로써 콘텐츠기업의 관심을 유발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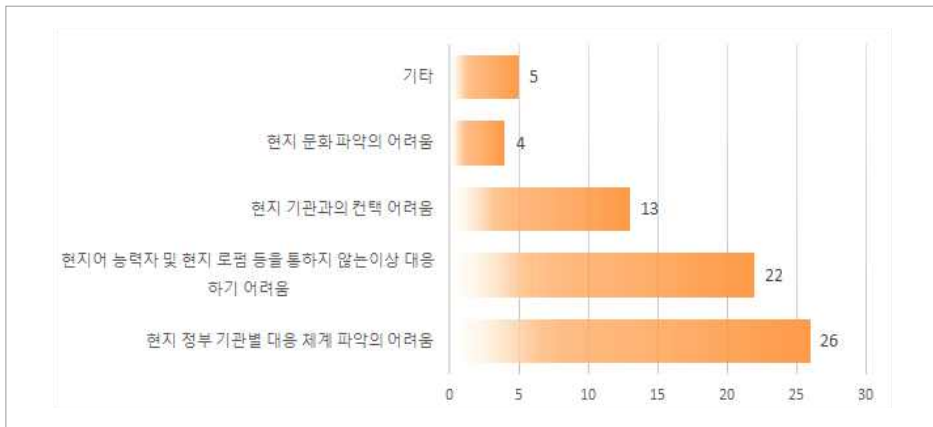


[그림 3-13] 해외저작권 보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중복응답)

② 해외저작권보호의 애로사항

콘텐츠 기업이 해외저작권을 보호함에 있어 가장 애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한 결과, 현지정부 기관별 대응체계 파악의 어려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현지어 능력자 및 현지 로펌 등을 통하지 않는 이상 대응의 어려움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뽑았다.

해외진출 콘텐츠 기업의 애로점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별 저작권 보호 제도 및 정책, 불법 유통 대응방안 등에 대한 국가별 저작권보호 가이드라인을 제공이 우선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그림 3-14] 해외저작권보호의 애로사항(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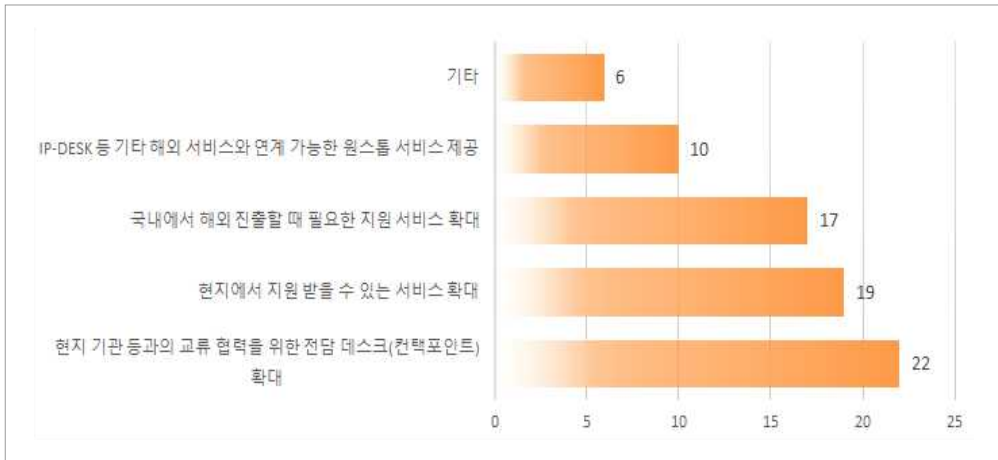
※본 결과는 설문 중간이탈자로 34개사의 응답건수에 대한 결과임

③ 해외저작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 서비스

콘텐츠 기업이 해외저작권 보호를 위해 지원되었으면 하는 것은 현지기관등과의

교류협력을 위한 전담데스크의 확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현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확대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국가별 저작권법 체계 및 징수규정 등 정보 제공, 아시아국가에 대한 강력한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가적 대응, 산업 내에서 공동대응을 위한 기관(COA)을 설립하고 그 기관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 올드 판권(2000년 이전 영화) 관련 인증서류를 지원해줄 전담인력 등의 요구사항이 있었다.

해외 진출한 콘텐츠 기업은 현지에서 저작권 이슈가 발생했을 때 분쟁 해결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지속적인 콘텐츠 유통을 위해 해외에서의 관련기관과의 교류 협력을 위한 컨택 포인트에 대한 요구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도와줄 수 있는 전담 데스크의 설치가 필요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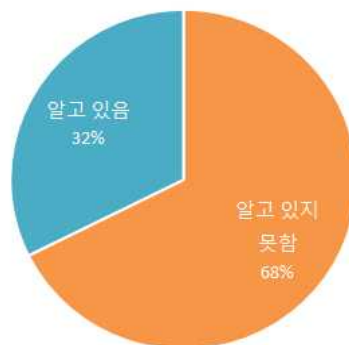
[그림 3-15] 해외저작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중복응답)

※본 결과는 설문 중간이탈자로 34개사의 응답건수에 대한 결과임

(2) 한국저작권보호원의 해외저작권보호사업에 대한 설문

① 맞춤형 해외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 인지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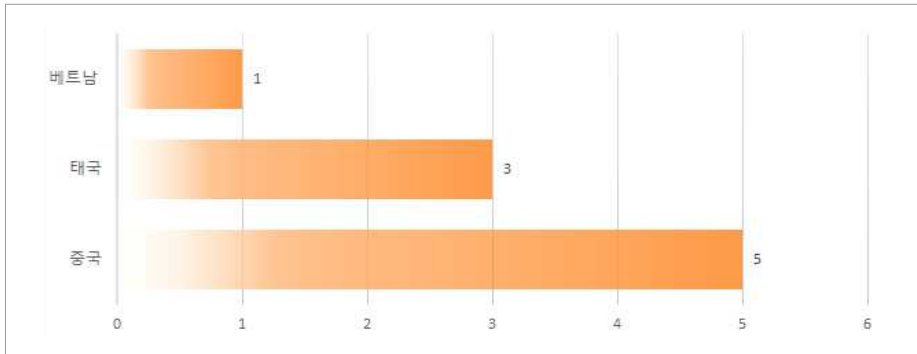
설문에 응답한 34개 콘텐츠 기업 중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지원하는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前해외저작권보호 이용권 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11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콘텐츠 기업이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맞춤형 해외저작권 바우처 사업에 알지 못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수요가 적은 것으로 보여진다.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3-16] 맞춤형 해외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 인지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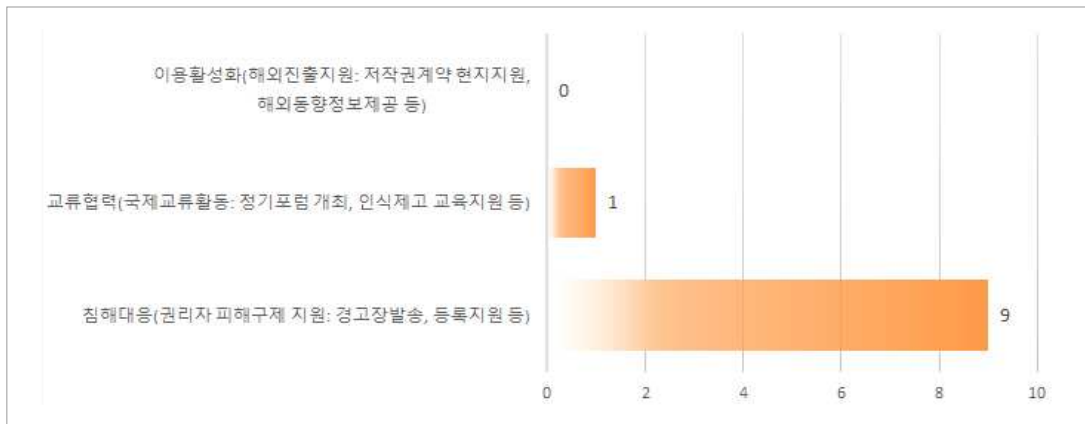
② 맞춤형 해외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 활용한 기업

맞춤형 해외저작권 바우처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 중 중도 탈락자를 제외한 9명의 응답 기업 중 중국사무소를 이용한 기업이 5개사, 태국사무소를 이용한 기업이 3개사, 베트남사무소를 이용한 기업이 1개사 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7] 이용한 해외사무소

이들 기업은 주로 경고장 발송, 권리자 피해구제 지원과 같은 침해 대응 서비스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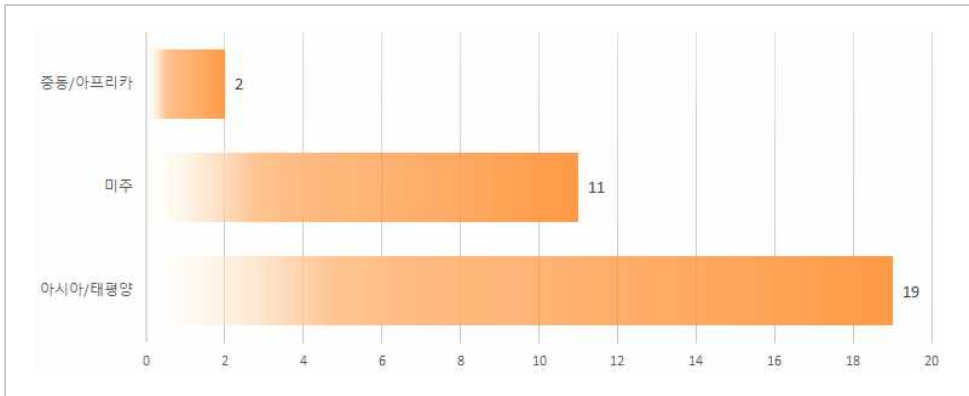


[그림 3-18] 해외사무소에서 이용한 서비스

③ 해외사무소의 추가 개소 지역에 대한 필요¹⁰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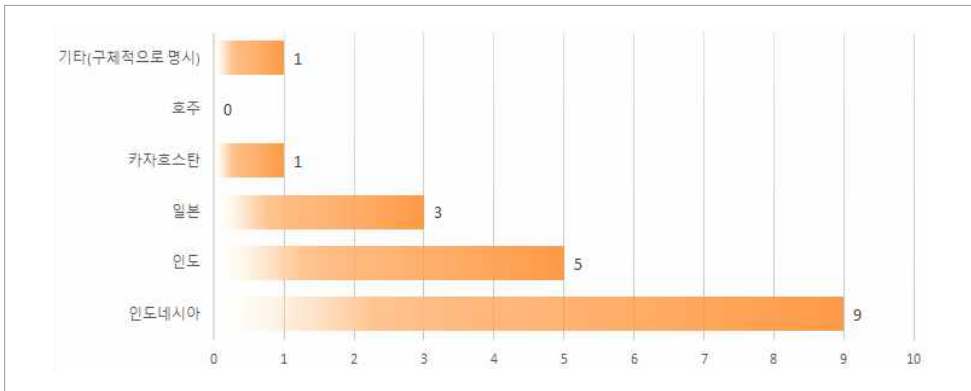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저작권 사무소 지역이 확대된다면 어떤 국가의 사무소를 선호하는지에 대해 질의한 결과, 아시아/태평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미주 지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5) 본 문항부터는 설문 중간이탈자로 인해 32개 기업에 대한 응답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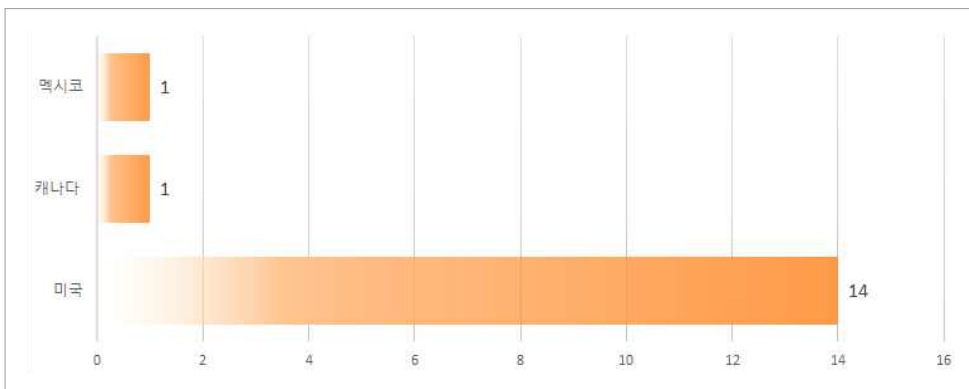
[그림 3-19] 해외사무소 추가 개소 선호 국가

이중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선택한 기업에게 구체적인 국가를 추가로 질의한 결과 인도네시아와 인도에 대한 니즈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0]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해외사무소 추가 개소 선호 국가

미주 지역을 선택한 기업은 대부분 미국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니즈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21] 미주 지역의 해외사무소 추가 개소 선호 국가

중동/아프리카 지역을 선택한 기업은 나이지리아, 이집트, 튀르키예공화국(터키), 아랍에미리트,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해 추가개소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정부 및 관련기관에 대한 요청사항

설문에 응답한 콘텐츠 기업에게 해외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정부 및 관련기관에 요청하고 싶은 사항에 대해 질의한 결과, 크게 4가지에 대하여 답변하였다.

첫 번째는 저작권 관련 교육에 대한 요구이다. 특히 소기업의 경우 해외저작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개인바이어 또는 간접 수출의 형태로 제품을 먼저 판매하다보니 사전에 대비하지 못하고 해외저작권 피해를 입은 후에 대응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교육 요청이 있었다.

두 번째는 국가별 해외 저작권 정보에 대한 요구이다. 각 국가별 저작권법 체계 및 징수규정 관련 정보 제공”, “구체적인 대응 가이드전략이나 매뉴얼, 시장조사결과” 등의 의견이 있었다.

세 번째는 공동대응에 대한 요구이다. 글로벌 저작권 침해 사이트인 클라우드 플레이어, 도메인등록 사이트, 호스팅업체 등 개별 회사가 대응하기 어려운 대상들이며 공동대응을 위한 중심적인 역할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저작권 모니터링 역량을 가진 국내 회사가 많이 없는 상황이라 저작권 모니터링 기술을 가진 업체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지원을 요구하였다.

그 외, “어떤 국가에 어떤 지원이 있고, 어떤 국가가 아직 지원 준비 중인 것인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 “바우처 사업 지원 신청이 조금 더 편리하고 플랫폼과도 협조했으면 좋겠다”와 같은 의견이 있었다.

라. 시사점

콘텐츠기업을 대상으로 설문결과를 통해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1) 해외저작권보호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

먼저, 해외저작권보호 지원사업의 인식정도에 대해 응답기업의 약 60%가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의 해외저작권보호 서비스 이용경험이 있는데 반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맞춤형 해외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前해외저작권보호 이용권 지원사업)”에 대해 아는 기업은 30%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11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수의 콘텐츠 기업이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맞춤형 해외저작권 바우처 사업에 알지 못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낮은 인식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콘텐츠를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관련 사업에 대한 배너를 제작하여 유관기업의 홈페이지 올리거나, 각 기관에서 발행되는 각종 보고서에 홍보페이지를 삽입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2) 현지정부 및 기관별 대응체계 마련

콘텐츠 기업이 해외저작권을 보호함에 있어 가장 애로사항은 현지정부와 기관별 대응체계의 어려움을 꼽았다. 이에 해외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외 여러 국가들에서 현지 기관과 바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 사전에 현지 정부기관, 법무법인 등 직접 대응 가능한 곳과의 협업 위한 관계망 구축이 필요하므로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해외에 진출한 콘텐츠 기업은 현지에서 저작권 이슈가 발생했을 때 분쟁 해결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지속적인 콘텐츠 유통을 위해 해외에서의 관련기관과의 교류 협력을 위한 컨택 포인트에 대한 요구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도와줄 수 있는 전담 데스크의 설치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글로벌 저작권 침해 사이트인 클라우드 플레이어, 도메인등록 사이트, 호스팅 업체 등 개별 회사가 대응하기 어려운 대상들이며 공동 대응을 위한 중심적인 역할에 대한 기대가 있는 만큼 공동대응지원사업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3) 국가별 저작권보호 가이드라인의 개발 및 보급

무엇보다도 국가별로 저작권 보호에 대한 제도와 정책이 상이한 만큼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저작권 보호체계, 징수규정, 그리고 분쟁발생시 대응가이드전략이나 매뉴얼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각 기업에 제공해야 할 것이다.

IV. 소결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국내외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전문지원 기관으로서 최고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에도 국내 저작권 보호 중심으로 체계가

갖추어 있다. 그러나 저작권 해외 사무소, 각종 국제교류행사 등에 대한 업무도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이관을 받아 주요 사업범위에 포함되었으므로 해외에서의 저작권 보호 업무의 비중도 매우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기관 차원에서 해외 저작권 보호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불법복제물신고 COPY112 사이트, 해외 저작권 보호체계구축을 위한 컨트롤 타워의 설치,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의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 대응, 해외 저작권 보호 상담, 해외 저작권 관련 분쟁정보 등 해외 현지 정보제공체계 구축을 비롯한 종합적인 해외 저작권 보호를 위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저작권 해외 사무소 직원의 인터뷰 결과와 국내 콘텐츠 기업 관계자에 대한 설문 결과에 따른 한국 정부와 현지정부와의 MOU 등 적극적인 사전 협력체계 구축, 지원사업의 적극적인 홍보 및 저작권 교육 강화, 현지 정부 및 기관별 대응체계 마련, 국가별 저작권 보호 가이드라인의 개발 및 보급과 같은 수요에도 부응하는 단계별 효율화 방안의 수립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제4장 해외 저작권 보호체계 효율화 방안

I. 개관

우리나라 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저작권 무역수지도 케이(K)-콘텐츠 수출 호조 등으로 견실한 흑자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해외에서 우리나라 콘텐츠의 불법유통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도 미디어·콘텐츠산업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고 문화수출지원기관을 물리적, 기능적으로 연계, 저작권 보호로 문화주권 강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는 우리나라 정부의 저작권 산업과 관련한 정책기조, 그리고 그 속에서 한국 저작권보호원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해외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한 단계적 전략 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II. 정부의 저작권 산업분야의 정책과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역할

1. 정부의 정책 기조

2022년 4월 새정부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라함) 브리핑에서 'K-콘텐츠의 초격차 산업화'를 국정과제로 선정·발표하였다. K-콘텐츠를 산업화하기 위하여 인수위에서는 미디어·콘텐츠산업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고, 문화수출지원기관을 물리적, 기능적으로 연계하여 '문화산업 분야 코트라'와 같은 형태의 재편에 대하여 언급한 바 있다.

코트라(KOTRA)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준말로, 대한무역공사라고 부르기도 한다.¹⁰⁶⁾ 무역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의 지원, 해외전문인력의

10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설립하여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 기술 협력의 지원,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지원, 정부간 수출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하계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비영리사업(非營利事業)을 하는 법인으로 한다.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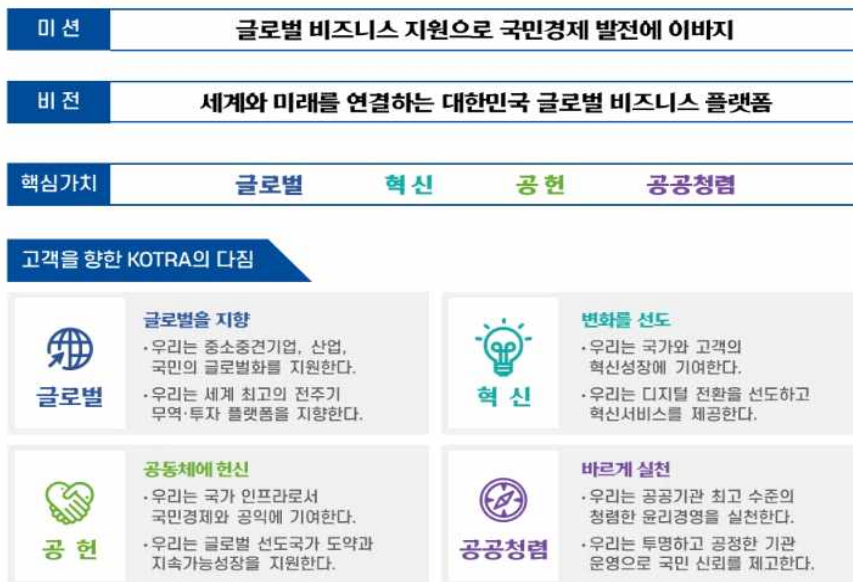
유치 지원, 정부간 수출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1962년 6월 21일에 설립되어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전 세계 86개국에 127개 해외 무역관을 운영 중이며, 대한민국 국내에 12개의 지방지원단, 2개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표 4-1〉 220428_김도식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회 전문위원 브리핑내용

K-컬처를 초격차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 먼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미디어·콘텐츠산업 컨트론타워를 설치해 국내 미디어·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 법률 지원, 불합리한 규제 완화, 세제 지원 등
 - 창작활동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 종략 -
- 또한, 10만 K-콘텐츠 기업의 문화수출을 뒷받침하도록 콘텐츠진흥원 등 기존 문화수출 지원기관*을 물리적·기능적으로 연계하여 '문화산업 분야 코트라'로 재편해, 그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 재외문화원, 콘텐츠진흥원, 저작권보호원, 영화진흥위원회 등



[그림 4-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경영전략체계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코트라는 우리기업이 무역진흥을 통한 글로벌 비즈니스를 잘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관이며, 조직도 글로벌 비즈니스에 맞게 구성되어 있다.



[그림 4-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세부조직도

최근 우리나라 콘텐츠의 세계화 경향에 따른 산업적 측면을 고려하여 문화수출 지원기관을 물리적·기능적으로 연계하여 ‘문화산업분야의 코트라’ 재편하려는 것이다. 즉 이러한 인수위의 목적은 K-콘텐츠 확산을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를 통해 경제적·산업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된다.

이러한 인수위의 브리핑은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에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을 58번째 국정과제로 포함되었다.¹⁰⁷⁾

〈표 4-2〉 ‘K-콘텐츠의 매력을 전세계로 확산’ 국정과제의 목표 및 내용

항목	내용
과제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류 영향력 지속확대를 위한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여 K-콘텐츠의 매력을 전세계로 확산 ○ K-콘텐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정하고 탄탄한 미디어콘텐츠산업 생태계 구축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콘텐츠 기반조성) 관계부처*와 함께 미디어콘텐츠산업의 컨트롤타워 설치 추진, 정책금융 지원으로 세계적인 콘텐츠 IP 보유 기업육성, 창작자 중심 공정환경 조성, 저작권 보호로 문화주권 강화 등 * 문체부, 방통위, 과기정통부 등 ○ (K-콘텐츠 대표 장르 육성) K-팝, 게임, 드라마, 영화, 웹툰을 대표 장르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 지원으로 콘텐츠 강국 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르별 인재 양성(게임인재원, 한국영화아카데미, 스토리창작센터) - 인프라 구축(거점 대중음악 전용 공연장, 종합촬영소)-창·제작(드라마펀드, IP 활용 2차 저작물 제작지원) - 해외 진출(해외 마켓 참가, 네트워킹 및 비즈매칭 연계 등) 지원 등 ○ (K-콘텐츠 매력 확산) 10만 K-콘텐츠 기업의 해외 거점 구축으로 해외진출 지원 강화, 한류 연관산업(뷰티, 패션 등) 연계로 경제적 시너지효과 창출,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로 한류 지속가능성 제고 ○ (K-콘텐츠로 신시장 개척) 메타버스·실감콘텐츠·OTT 등 신시장 주도를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 및 인력 양성, 문화기술 투자 확대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콘텐츠 매출액 128조원('20년)→200조원('27년), K-콘텐츠 수출액 119조원('20년)→230조원('27년), 한류팬 수 1.2억명('20년)→3.6억명('27년) 달성 ○ 한류 효과 확장 및 지속으로 대한민국의 소프트파워 제고

여기에서도 ‘K-콘텐츠의 기반조성’ 항목에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미디어콘텐츠산업의 컨트롤타워 설치 추진과 저작권 보호로 문화주권 강화 등이 주요 국정과제로 되어 있다.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발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2022년 7월 22일 업무보고에서 영화, OTT 콘텐츠, K-팝을 경제성장의 축으로 발전, 콘텐츠·미디어 생태계 거버넌스 구축 등 우리나라 경제의 동력으로서 K-콘텐츠 성장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¹⁰⁷⁾ 다만, 여기에서는 미디어콘텐츠산업의 컨트롤타워 설치 추진, 저작권 보호로 문화 주권 강화 등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되지 않으므로, 실제로 코트라와 같이 문화산업 분야의 컨트롤 타워를 설치 추진이 반드시 명확한 정책적 기초라고는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문화 콘텐츠 산업에 있어서 K-콘텐츠 활성화 정책은 창작, 유통, 진흥과 보호 정책이 일체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107)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2022. 7, 103면.

108)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자료, 2022. 7. 22, 6면 참조.

2.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역할

이상과 같이, 정부의 정책은 K-콘텐츠의 전세계적 확산을 통한 경제적·산업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K-콘텐츠 전세계적인 확대의 이면에는 콘텐츠의 불법 유통과 침해에 대한 우려도 증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K-콘텐츠의 확산정책과 함께 보호정책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등은 K-콘텐츠의 창작, 진흥 그리고 홍보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원기관이라면 한국저작권보호원은 K-콘텐츠의 국내·외 불법유통과 저작권 침해 등을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그 성격을 달리한다.

〈표 4-3〉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

	문화재청	기타공공기관(1)	한국문화재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공기업 (준시장형)(1)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2)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3)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관광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기타공공기관(25)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의전당
			재단법인 국악방송	재단법인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22 대한민국 공공기관, 2022. 4, 216면〉

따라서 그동안 K-콘텐츠의 전세계적 확산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K-콘텐츠 보호 역량 강화에도 비중을 높일 때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른 문화콘텐츠 지원기관과 다른 성격을 가진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K-콘텐츠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Ⅲ. 해외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한 단계적 전략 방안

1. 중·단기적 방안

가. 해외 저작권 보호 업무에 대한 충분한 파악 등 내실 강화

해외 저작권 보호 업무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 정식으로 이관된 지 2년 남짓 되고 있다. 이관 과정에서 저작권 해외 사무소의 해외 저작권 보호 및 침해대응 등 관련 업무 등이 상호협력 하에 아직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므로 해외 사무소의 주된 업무 프로세스, 현지 수사기관, 정보기관과의 네트워크 체계, 현지에서 주로 협력하는 법무법인 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즉 해외 사무소의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축적된 노하우가 사장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인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해외 사무소에서 일정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몇 가지 성과지표를 도입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현지 수사기관, 정보기관 등의 교류현황, 현지 저작권 관련 정보제공 건수 등이다.

나. 해외 저작권 보호 및 침해대응 등 컨트롤 타워 구축

해외 저작권 침해나 보호 관련 권리자의 민원이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요청내용을 접수하고 기관의 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아 처리하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여 한다. 예컨대 해외사업부가 총괄이 되어 해외 저작권 보호 및 침해대응 관련 문의나 의뢰가 있을 경우 사안을 정리한 후, 해당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의뢰하여 처리할 수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해외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업무처리지침’ 등과 같은 내부규정을 만들어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관 완료 후 해외지재권실(해외사무소),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비즈니스센터 등과 주기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해당 지역의 저작권 관련 문의, 보호 요청 등이 있을 경우 해외사업부에 연락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해외

사업부로 하여금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¹⁰⁹⁾

따라서 해외 저작권 보호 컨트롤 타워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파악될 필요가 있다. 첫째, 해외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기관 내의 컨트롤 타워이다. 저작권 보호 내지 침해 대응과 관련해서는 상담 업무, 모니터링 업무, 포렌식 업무 등 여러 가지 업무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기관 내에서 이를 총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이다.

둘째 저작권 해외사무소, 저작권해외진흥협회 또는 국내의 권리자로부터 오는 해외 저작권 관련 업무에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이다.

셋째 해외 사무소를 두고 있는 KOTRA 해외지재권실(해외사무소),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비즈니스센터 등 유관기관을 통해 들어오는 해외에서의 저작권 보호나 침해대응 요청에 대응하는 컨트롤 타워이다.

이러한 3가지 기능을 묶을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결국 위의 ①의 경우 기관내의 업무처리방침이나 처리체계 구축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고, ②의 경우 해외사업부 등에 전담창구를 마련하는 것을 통하여, ③의 경우는 기관과의 업무협약이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다. 국내 저작권 보호 중심에서 해외 저작권 보호와의 균형을 맞춘 체제로 전환

불법복제물신고 COPY112 사이트가 있으나 해외에서 저작권 침해 신고 메뉴를 개발하여 그 기능을 명확히 하고, 아울러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상의 해외 OSP에게도 경고장 발송 등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사업 개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악성 침해자 대상 저작권해외진흥협회의 협력을 통한 공동 대응방안을 고려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저작권 보호 상담의 경우에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저작권보호 관련 상담 가능한 창구를 마련하여 보다 해외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현재 국내 저작권 보호 중심으로 되어 있는 구조를 해외 저작권 보호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9)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해외진출지원센터의 경우 '21년 39건, 22년(9월 기준) 9건의 지재권 상담이 이루어졌다. 일부 저작권 상담도 포함되어 있다.

2. 장기적 방안

가. 해외 국가의 저작권 정보제공 기반 구축 강화

한국저작권보호원의 해외 저작권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현지의 저작권 관련 정보제공도 매우 중요하다. 현지 국가의 정보를 담은 ‘해외 저작권 보호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현지 법제도, 주요 법무법인, 모니터링 회사, 관계기관의 컨택포인트 등 핵심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콘텐츠 기업 설문조사에도 이러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경우에도 ‘국제 IP 분쟁대응 기반을 구축’ 사업으로서 “분쟁기반 정보(지재권 분쟁동향연구보고서, 특허관리회사 동향연구보고서, 특허분쟁대응 전략보고서, 해외 지재권보호 가이드 북, 해외 대리인정보, 해외지재권법령), 분쟁동향 정보(IP Daily 분쟁정보, IP 분쟁동향, 현지 분쟁정보 분석)”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지분쟁정보의 경우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독일 4개국의 8명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현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지 해외 사무소 및 콘텐츠 기업 대상 인터뷰 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후속과제로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현지 국가 정보를 담은 ‘해외 저작권 보호 가이드북’ 제작 및 제공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현지 법률정보, 수사기관 및 절차 등의 정보뿐만 아니라 모니터링 업체정보, 주요 대리인 정보 등 현실적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나. 권역별 거점 저작권 해외 사무소 신설/확대방안

(1) 자체적으로 해외 사무소를 신설하는 방안

장기적 관점에서 저작권 해외 사무소를 신설하거나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관 차원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해외 사무소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신설에 필요한 근거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첫째, 해외 지부, 지사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2020년 개정 저작권법을 통해 제122조의7조에 “보호원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사무소·지사 또는 주재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되었으므로,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에 저작권 침해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현재 해외 국가를 대상으로 한 콘텐츠 불법유통 실태나 저작권 침해 실태 등에 대한 조사가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해외 사무소를 두고 있는 태국, 필리핀, 중국, 베트남을 제외하고, 한류가 확산되고 침해의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해외 사무소 신설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현지에서의

정보조사 사업을 강화하고 해외 저작권 침해 실태조사 등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해외저작권관련 사업의 기획, 운영, 사업예산 확보의 근거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셋째, 설치의 필요성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당위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해외에서 우리나라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지에서 보호집행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현지 경찰청 등 수사기관 정보기관의 협조체계,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근거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태국 지식재산국(DIP)과 태국경제범죄억제경찰(ECD)과 협업을 통해 한국게임사(주)제페토 불법 사설서버(태국 IDC 센터) 관련하여 소제기 등 적극적 침해 대응 조치 추진한 사례를 들 수 있다.¹¹⁰⁾ 이러한 사례에 대하여 현지 해외사무소와 현지 정부기관과의 협조체계나 네트워크의 중요성 등을 문제해결 과정 등 히스토리를 통하여 근거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해외 사무소 설치기준 등이 필요하다. 전문가 인터뷰에 따르면, (i) 해외 시장조사(매력도 조사) 등 일정한 지표를 설정한 후, 그 지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다. (ii) 유관 공공기관(코트라, 한국관광공사 등)의 위치 등을 고려한다(시너지 효과). (iii) 기업의 수요조사, (iv) 미진출 국가 고려, 그리고 (v)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설치할 해외 사무소를 결정한다.¹¹¹⁾

이러한 해외 사무소 설치 근거 마련 및 K-콘텐츠 보호를 위하여 우리나라 콘텐츠가 어느 지역에서 어느 정도 침해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해외 국가를 대상으로 한 콘텐츠 불법유통 실태나 저작권 침해 실태조사'가 중요 과제로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유관기관의 해외사무소를 활용하는 방안(파견 등)

해외문화홍보원의 재외문화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비즈니스 센터 등 이미 해외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파견 등의 방법을 통하여 해외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법이 있다. 한국에서 파견되는 경우 비자발급 이슈도 발생할 수 있으며, 해외 노동법이 적용될 경우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해야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파견 등의 방법을 활용할 경우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110) 한국저작권보호원, K-게임 저작권 침해한 태국 내 불법 게임 사설 서버 폐쇄, <https://www.kcopa.or.kr/lay1/bbs/S1T12C38/F/38/view.do?article_seq=3711&cpage=1&rows=10&condition=&keyword=> 참조.

111) 전문가 인터뷰에 따르면, 최근(21년) 러시아(모스크바)와 멕시코(멕시코시티)에 IP-DESK가 새로 설치되었는데 설치 기준 무역통계, 국가별 진출 기업수, 지재권분쟁현황, 추가 개설 지역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설치 기준을 마련되었다고 한다. 또한 IP-DESK 설치 후 지식재산 보호의 경제적 효과 관련 연구 자료도 상당히 추가 사무소 설치에 주요한 근거자료가 되었다고 한다.

IV. 저작권 해외 사무소 확대 가능 지역 도출(시뮬레이션)

여기에서는 주요국별 저작권 무역수지 및 콘텐츠 수출액, 국가별 한류지수 현황. 주요 국가의 불법사이트 서버위치 및 국가별 트래픽, 콘텐츠기업 대상 해외 사무소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설문을 종합하여 향후 저작권 해외 사무소 확대가 필요한 지역을 도출하였다.¹¹²⁾ 이는 시뮬레이션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며, 저작권 해외 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외 국가의 저작권 침해 실태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1. 주요국별 저작권 무역수지 및 콘텐츠 수출액

한국은행의 지식재산권무역수지 통계(잠정) 공표결과(22.09.23)에 따르면 저작권의 무역수지는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은 4.9억 달러, 문화예술저작권 3.8억 달러로 모두 흑자를 기록하였다. 특히 방탄소년단(BTS)등 K팝과 ‘오징어게임’ 등 드라마, 웹툰 등 한류 콘텐츠로 인해 음악·영상 저작권은 ‘22년 상반기 무역 수출은 ‘21년 상반기 대비 1.3억 달러 높게 나왔다.

〈표 4-4〉 유형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억달러)

	2020	2021p	2020		2021p		2022p
	연간	연간	상반	하반	상반	하반	상반
수지	-20.2	-0.3	-7.9	-12.3	-0.7	0.4	3.7
저작권	17.4	24.5	9.9	7.5	10.4	14.1	8.7
문화예술저작권	1.7	7.5	0.8	0.9	3.3	4.2	3.8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	15.7	17.0	9.1	6.6	7.1	9.9	4.9
수출	154.2	208.6	77.2	77.0	105.1	103.5	93.8
저작권	108.7	145.3	53.5	55.2	70.1	75.2	56.5
문화예술저작권	15.9	22.6	7.6	8.2	10.3	12.3	11.6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	92.9	122.7	45.8	47.0	59.8	62.9	44.9
수입	174.4	208.9	85.1	89.3	105.8	103.2	90.1
저작권	91.3	120.8	43.5	47.8	59.7	61.1	47.8
문화예술저작권	14.1	15.1	6.8	7.3	7.0	8.1	7.8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	77.2	105.7	36.7	40.4	52.7	53.0	40.0

112) 다만, 해외 국가의 저작권 침해실태조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고려하여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시뮬레이션은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거래상대방 국가별 무역수지를 살펴보면 중국, 영국, 일본, 대만, 아일랜드, 러시아,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브라질, 러시아, 말레이시아, 슬로바키아의 순으로 흑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저작권 무역수지(국가별)

(단위:백만달러, 기준일: 22.9)

국가명	2016	2017	2018	2019	2020
중국	465.2	639.3	896.9	1728	2036.4
영국	630.9	857.7	667.5	1016.5	1093.9
일본	220.4	151.2	143.7	136.1	163.8
대만	50	35.2	153.6	78.6	130.9
아일랜드	-66.5	-128.5	-128.6	-67.3	113.1
러시아	4.5	7.1	6.8	14.6	72.5
베트남	55.7	71.3	54.2	85.9	29.5
태국	22.1	17.4	14.9	17.4	21.6
아랍에미리트	13.9	14.9	26.7	18.4	20.1
브라질	-4	1.5	-0.4	6.7	15
말레이시아	4.1	39.4	16.2	14.1	8.1
슬로바키아	2.4	0.7	0.8	2.6	1.6
홍콩	83.4	46	18.8	-24.1	-0.7
인도	2.2	-25.5	27.3	23.6	-2.3
스페인	-66.3	-41.1	-38.7	-7.7	-7.9
덴마크	-2.4	-11.1	-4.4	-3	-8.4
호주	-21.1	-15.5	-11.6	-11	-11.6
프랑스	-36.5	-39.1	-37.7	-35.3	-31.5
스웨덴	-15.5	-22.6	-9.5	-27.6	-42.8
스위스	-72.1	-88.6	-83.4	-71.5	-69.3
기타	-34.3	-8	-88.9	-11.9	-105.7
네덜란드	-59.6	-81.8	-113.3	-131.5	-137
독일	-106.8	-209.5	-211.8	-120	-221.7
미국	-519.4	-604.2	-208.9	-14.1	-583
싱가포르	287.4	-13.7	375.3	151.3	-744.5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접속일: 22.11.8〉

음악·영상분야의 저작권 무역수지를 별도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21년 기준, 일본, 싱가포르, 미국, 중국, 대만, 스웨덴,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홍콩, 아랍에미리트를

상대로 흑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싱가포르, 미국, 태국의 경우 무역수지 적자국에서 최근 2~3년 사이에 무역수지 흑자국으로 전환되었다.

〈표 4-6〉 음악·영상 저작권 무역수지(국가별)

(단위:백만달러, 기준일: 22.9)

국가명	2016	2017	2018	2019	2020
일본	98.1	84.2	119.2	92.9	171
싱가포르	-49.1	-66	-10.5	62.9	148.6
미국	-223.8	-257.4	-332.3	-156.5	128.4
중국	252.5	107.6	169.9	128.7	100.1
대만	33.4	24.1	138.5	64	47.5
스웨덴	1	1.6	6.3	9.8	8.3
베트남	25.7	30.9	14.1	9.9	4.3
말레이시아	0.1	37.4	1.2	4.4	2.3
태국	2.5	-2.1	-0.1	-0.9	2.1
홍콩	51.7	40.4	45.5	4.6	1.1
아랍에미리트	-9.3	-13	-3.4	-2.9	0.5
슬로바키아	1.5	-0.1	-0.1	0	0
덴마크	-1	-3	-0.9	-1.5	-0.7
러시아	-1	-2.1	-2.8	-2.8	-0.9
인도	-3.3	-33.6	2.2	0.1	-1.8
브라질	-11.4	-3	-2.8	-1.7	-2.9
호주	-12.6	-6	-10.4	-10.7	-9.3
영국	-89.9	-55.7	-30.9	-59	-10.7
스페인	-51.9	-32.9	-37.5	-14.9	-11.1
독일	-46	-49	-47	-36.7	-15.4
네덜란드	-8.2	-11.5	-34.7	-8.3	-19.3
프랑스	-31.1	-32.9	-30.8	-29.9	-19.9
아일랜드	-79.2	-90.4	-108.7	-110.1	-39.6
스위스	-64.5	-74.4	-67.1	-69.4	-54.6
기타	-58	-1.3	-66.7	-62	-255.5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접속일: 22.11.8〉

이와 더불어 콘텐츠 산업에 대한 지역별 연도별 수출 규모액 기준 현황을 살펴보면, 일본과 북미지역은 수출액이 점차 감소하는 반면, 중화권과 동남아, 유럽 국가는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콘텐츠산업 지역별, 연도별 수출액 현황

(단위: 천 달러)

구분	중화권 ¹¹³⁾	일본	동남아	북미	유럽	기타	합
2018년	3,441,766	1,842,614	1,254,700	1,488,848	679,592	644,919	9,352,442
2019년	4,152,463	1,658,734	1,395,011	1,194,502	688,489	788,659	9,877,869
2020년	4,573,324	1,210,980	2,417,168	1,465,980	937,882	861,317	11,466,673
전년대비 증감률(%)	10.1	△27.0	73.3	22.7	36.2	9.2	16.1
연평균 증감률(%)	15.3	△18.9	38.8	△0.8	17.5	15.6	10.7

〈출처: 2020기준 콘텐츠산업조사(2021년 실시), 한국콘텐츠진흥원〉

2. 주요국별 한류인기도 및 한류성장도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서는 미주, 유럽, 아시아대양주, 중동·아프리카 등 대륙별로 18개국을 대상으로 한국 대중문화가 해외 현지 소비자에게 수용된 정도와 그것의 성장 또는 쇠퇴 경향을 분석하여 한류지수¹¹⁴⁾를 발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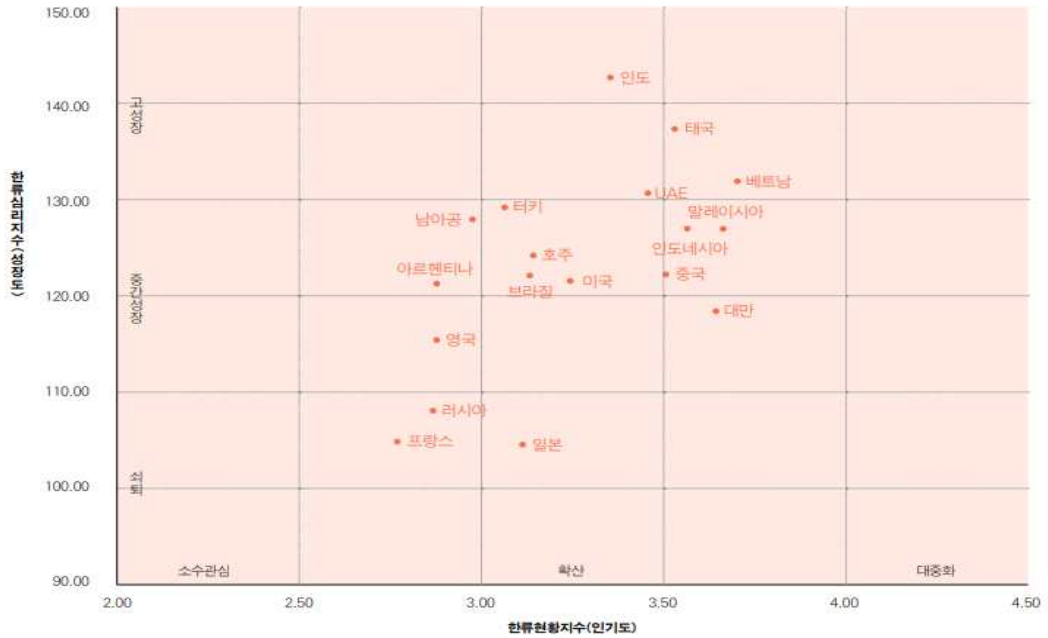
‘한류지수’는 각국에서 현재 한류의 대중화 정도를 나타내는 ‘한류현황지수’와 한류 인기의 변화 정도를 나타내는 ‘한류심리지수’로 구분된다. 5점 만점으로 측정된 ‘한류 현황지수’는 3.5 이상인 경우 한류대중화단계, 2.5 이상 3.5 미만은 한류확산단계, 그리고 2.5 미만은 소수관심단계로 본다. ‘한류심리지수’는 100점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한류쇠퇴, 그 이상은 한류성장으로 해석하며 100~129는 중간성장, 130 이상은 고성장그룹으로 분류한다.

현지에서 한류의 인기정도를 파악하는 한류현황지수를 보면 베트남, 말레이시아, 대만, 인도네시아, 태국, 중국 6개국의 한류현황 지수값은 3.5이상으로 한류 대중화 단계에 속하였다.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한류현황지수가 상승하였으며 특히 미국, 호주, 남아공, 영국 4개국은 전년대비 10%이상 지수 상승률을 보였다.

113) 중화권은 중국, 홍콩, 대만의 3개국가를 중화권으로 통합하여 산출

114) 한류지수 개념설명

용어	정의	측정/추정방법	해설
한류 현황지수	한류의 현재 인기와 대중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	한국 드라마, 예능, 영화, 음악, 패션, 뷰티, 음식 등에 대해 현지 국가에서 인기 정도를 1~5점으로 평가	1) 0~2.5 미만: 한류소수관심단계 2) 2.5~3.5 미만: 한류확산단계 3) 3.5 이상: 한류대중화단계
한류 심리지수	한류의 성장 또는 쇠퇴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	한국 대중문화 상품에 대해 응답자의 개인적· 사회적 관점에서 1년 전 대비, 1년 후 전망 으로 구분하여 평가 후 관련 지출액 추이를 측정하여 100점 기준의 지수로 환산	1) 0~99: 한류쇠퇴그룹 2) 100~129: 한류중간성장그룹 3) 130 이상: 한류고성장그룹



[그림 4-3] 국가별 한류지수 현황

〈출처: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22 글로벌 한류트렌드, 2022, 22면〉

〈표 4-8〉 국가별 한류현황지수 변화

		한류현황지수 (2019)	한류현황지수 (2020)	한류현황지수 (2021)	한류현황지수 (21-20)	비고
대 중 화 단 계	베트남	3.62	3.61	3.71	2.80%	
	말레이시아	3.58	3.71	3.67	-1.00%	
	대만	3.36	3.49	3.65	4.50%	1단계상승
	인도네시아	3.65	3.8	3.57	-6.20%	
	태국	3.42	3.39	3.54	4.30%	1단계상승
	중국	3.23	3.43	3.51	2.20%	1단계상승
확 산 단 계	아랍에미리트	3.05	3.15	3.46	9.80%	
	인도	3.04	3.2	3.36	5.20%	
	미국	2.77	2.77	3.25	17.10%	
	호주	2.8	2.74	3.14	14.80%	
	브라질	3.12	2.98	3.13	5.00%	
	일본	2.82	2.88	3.11	8.10%	
	터키	3.12	3.17	3.06	-3.70%	
	남아공	2.54	2.69	2.97	10.20%	
	영국	2.6	2.49	2.87	15.00%	1단계상승
	아르헨티나		2.75	2.87	4.40%	
러시아	2.7	2.82	2.86	1.50%		
프랑스	2.76	2.68	2.76	2.60%		

〈출처: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22 글로벌 한류트렌드, 2022, 43면〉

마찬가지로 한류심리지수 역시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상승하여 한류에 성장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다. 인도, 태국, 베트남, 아랍에미리트는 한류고성장 그룹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국가는 중간성장국가로 나타났다. 태국과 UAE, 남아공, 호주, 아르헨티나는 중간 성장그룹에 속해있으나 전년대비 10%이상의 성장을 보여줘 한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 성장기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한류심리지수 변화

		한류현황지수 (2019)	한류현황지수 (2020)	한류현황지수 (2021)	한류현황지수 (21-20)	비고
고 성 장	인도	137.13	133.68	143.61	7.40%	
	태국	136.87	124.07	138.1	11.30%	1단계 상승
	베트남	137.3	121.3	132.4	9.20%	1단계 상승
	아랍에미리트	128	114.63	131.1	14.40%	1단계 상승
중 간 성 장	터키	135.77	126.77	129.55	2.20%	
	남아공	125.25	112.21	128.25	14.30%	
	인도네시아	141.9	135.05	127.23	-5.80%	1단계 하락
	말레이시아	127.55	124.12	127.21	2.50%	
	호주	115.17	111.04	124.31	12.00%	
	중국	121.8	122.2	122.24	0.00%	
	브라질	133.22	115.27	122.12	5.90%	
	미국	115.92	111.22	121.53	9.30%	
	아르헨티나		109.62	121.23	10.60%	
	대만	115.92	108.02	118.23	9.50%	
	영국	115.18	106.12	115.08	8.40%	
	러시아	119.71	110.06	107.38	-2.40%	
	프랑스	115.02	107.97	104	-3.70%	
	일본	88.72	94.37	103.68	9.90%	1단계 상승

〈출처: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22 글로벌 한류트렌드, 2022, 44면〉

3. 주요국가의 불법사이트 서버위치 및 국가별 트래픽 발생

해외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실태조사는 현재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국가별 저작권 침해 정도에 대한 데이터 산출은 어렵다. 이에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데이터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주요 저작권 침해국 대상 저작권 보호방안 연구'의 침해사이트 서버위치와 침해사이트의 상위 트래픽 국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침해가능성이 높은

상위 국가를 추정하였다. 전체 침해사이트 통계를 살펴보면, 침해사이트의 서버 중 캐나다에 위치한 서버가 2,325개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뒤를 이어 미국, 러시아, 홍콩, 네덜란드, 독일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표 4-10〉 불법사이트 서버위치 및 국가별 트래픽 발생국

서버위치		트래픽발생	
국가	사이트 수	국가	사이트수
캐나다	2,325	미국	316
		인도네시아	102
		태국	89
		터키	85
		베트남	76
		중국	69
		프랑스	49
미국	448	중국	117
		미국	29
		인도네시아	8
		멕시코	6
		이집트	5
		스페인	4
러시아	351	미국	34
		러시아	34
		인도네시아	3
		우크라이나	3
		멕시코	2
홍콩	257	중국	111
		미국	2
		대만	2
네덜란드	171	러시아	28
		우크라이나	13
		인도네시아	3
독일	136	인도네시아	10
		우크라이나	8
		이란	7
		미국	6

〈출처: 한국저작권보호원, 주요 저작권 침해국 대상 저작권 보호방안 연구(2021)〉

각 국가의 서버가 위치한 사이트의 트래픽을 분석하면, 트래픽이 1위인 국가가 해당 침해사이트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국가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트래픽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율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토대로 보면 트래픽 발생 사이트가 많은 국가는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터키, 베트남, 러시아, 프랑스, 우크라이나, 멕시코 순이므로, 이들 국가의 저작권 침해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4-11〉 저작권 트래픽 발생 사이트(침해) 상위 10개국

	국가명	트래픽발생 사이트 수
1	미국	391
2	중국	297
3	인도네시아	126
4	태국	89
5	터키	85
6	베트남	76
7	러시아	62
8	프랑스	49
9	우크라이나	24
10	멕시코	8

4. 콘텐츠기업 대상 해외 사무소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설문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저작권 사무소 지역이 확대된다면 어떤 국가의 사무소를 선호하는지에 대해 설문한 결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미주지역을 선호하였다.

〈표 4-12〉 해외사무소 선호지역

지역	국가명
아시아/태평양	인도네시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미주지역	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동/아프리카 지역	나이지리아, 이집트, 튀르예공화국(터키) 아랍에미리트, 남아프리카공화국

5. 종합

BTS로 대표되는 K-POP과 기생충, 오징어게임 등 K-드라마, K-뷰티 등 다양한 장르의 한류 콘텐츠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해외에서 한류 불법복제·표절과 같은 저작권 침해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지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우리기업이 직접 대응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현지에 사무소를 두고 전담인력을 통해 콘텐츠의 불법 유통을 저지하고 저작권 침해에 우리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앞서 저작권 무역수지, 한류지수, 저작권 침해 등을 바탕으로 해외사무소 설치를 고려해야할 국가를 도출하였다.

〈표 4-13〉 무역수지, 한류지수 및 저작권 침해 주요국 요약

구분		국가명
무역수지	저작권 흑자 국가	중국, 영국, 일본, 대만, 아일랜드, 러시아,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브라질, 러시아, 말레이시아, 슬로바키아
	음악·영상 부문 흑자국가	일본, 싱가포르, 미국, 중국, 대만, 스웨덴,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홍콩, 아랍에미리트
한류 현황지수	한류 대중화단계 국가	베트남, 말레이시아, 대만, 인도네시아, 태국, 중국
	현황지수 상승국가 (상승률순)	미국, 영국, 호주, 아랍에미리트, 일본, 인도, 브라질, 대만, 아르헨티나, 태국, 베트남, 프랑스, 중국, 러시아
한류 심리지수	한류고성장국가	인도, 태국,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심리지수 상승국가 (상승률순)	아랍에미리트, 남아공, 호주, 태국, 아르헨티나, 일본, 대만, 미국, 베트남, 영국, 인도, 브라질, 말레이시아, 터키
저작권 침해	저작권 침해 상위 10개국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터키, 베트남, 러시아, 프랑스, 우크라이나, 멕시코
콘텐츠 기업의 니즈	해외사무소가 필요한 국가	인도네시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미국, 캐나다, 멕시코, 나이지리아, 이집트, 터키, 아랍에미리트, 남아프리카공화국

각 기준을 바탕으로 5개 이상 해당하는 국가¹¹⁵⁾는 다음과 같이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태국, 대만, 미국, 일본, 중국 7개국이 포함된다.

〈표 4-14〉 범주 범위에 따른 국가구분

구분	국가명
5개 범주 이상 해당되는 국가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태국, 대만, 미국, 일본, 중국
4개 범주에 해당되는 국가	러시아, 말레이시아, 영국, 인도
3개 범주에 해당되는 국가	브라질, 인도네시아, 터키

115) 각 범주에 대한 중요정도의 구분없이 단순 카운트하였음.

현재 한국저작권보호원은 태국, 베트남, 필리핀, 중국 4개국에 저작권보호 해외사무소를 설치 운영 중으로 5개 범주 이상 해당되는 국가 중에서 베트남과 태국, 중국은 제외시켰다. 또한 한류 현황지수와 한류심리지수의 상승률이 높아 추후 저작권침해 가능성이 높은 미국과 영국, 일본, 말레이시아에는 저작권을 보호해줄 해외사무소가 없는 상황이다. 특히 한국저작권보호원의 해외사무소는 아시아지역에만 위치하여 상대적으로 미주지역과 유럽지역에 대한 지원이 어렵다.

〈표 4-15〉 해외사무소 설립이 고려되는 국가

구분	국가명
1그룹	미국, 일본, 아랍에미리트, 대만
2그룹	러시아, 말레이시아, 영국, 인도
3그룹	브라질, 인도네시아, 터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해외사무소를 현지에 증설하는 방안도 있으나,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해외비즈니스센터나 해외문화홍보원의 재외문화원과 협의를 통해 관련 업무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 후 추후 해당국에서의 해외사무소 증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재 미국, 영국, 일본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해외비즈니스센터와 해외문화홍보원의 재외문화원이 운영 중에 있다.

제5장 결론 및 제언

I. 요약

해외에서의 저작권 보호 체계의 효율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와 주요국(미국, 유럽, 일본)의 해외에서의 저작권 보호체계를 조사하여 비교·분석한 결과, 미국은 정부 전체적 측면에서 지식재산집행조정관을 두고 있으며, 각 부처에는 개별적으로 지식재산 집행 부서라는 내부조직을 두는 전략을 취한다는 점이다. 한편 유럽은 하나의 지역 공동체로서 유럽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EUROPOL, Eurojust 등 관계 기관 및 각 국가별 협력을 통하여 해외에서 유럽연합 체약국들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과 일본은 각각 콘텐츠 및 저작물의 육성, 보호 등의 정책 수립과 지원을 담당하는 정부부처가 중심이 되고, 그 부처를 지원하는 지원기관을 두고 해외에서 자국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다. 한국은 정부부처 산하의 공공기관과 회원사를 가진 민간 기구가 협업하여 해외에서의 자국민의 저작권 보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공공기관을 두지 않고 회원사를 가진 민간 기구가 해당 부처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일본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는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 음악, 게임, 출판 등 다양한 장르의 32개 기업, 12개 권리자 단체 회원, 9개의 창조회원과 함께 해외에서 저작권 보호활동을 한다는 점이다. 즉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보호하는 것이 가능하고, 권리자 집단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해외에서 저작권 보호활동을 하는데 더 용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현재 한국저작권보호원 등 공공기관의 예산을 일부 지원 받고 협업을 하고 있는 저작권해외진흥협회의 회원사를 다양화하고 현재 한류붐을 일으키고 있는 엔터테인먼트사 등 다양한 권리자 또는 권리자 단체를 포함하여 해외에서 협업하여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국내 기관 중 해외사무소를 두고 있는 기관의 해외 사무소 운영 현황을 조사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대부분 운영형태와 방식은 유사하다고 분석되었다.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전문으로 하는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해외지재권실이 있으며,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경우에도 지식재산 상담 및 출원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해외 저작권 보호체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국내외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전문 지원기관으로서 최고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에도 국내 저작권 보호 중심으로 체계가 갖추어 있다고 평가되었다. 그러나 저작권 해외 사무소, 각종 국제교류행사 등도 이관되어 해외에서의 저작권 보호 업무의 비중도 매우 높아졌다. 그러므로 기관 차원에서 해외 저작권 보호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불법복제물신고 COPY112 사이트, 해외 저작권 보호체계구축을 위한 컨트롤 타워의 설치,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의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응, 해외 저작권 보호 상담, 해외 저작권 관련 분쟁정보 등 해외 현지 정보제공체계 구축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분석되었다.

또한 저작권 해외 사무소 직원의 인터뷰 결과와 국내 콘텐츠 기업 관계자에 대한 설문 결과에 따른 한국 정부와 현지정부와의 MOU 등 적극적인 사전 협력 체계 구축, 지원사업의 적극적인 홍보 및 저작권 교육 강화, 현지 정부 및 기관별 대응체계 마련, 국가별 저작권 보호 가이드라인의 개발 및 보급과 같은 수요에도 부응하는 단계별 효율화 방안의 수립도 아울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정부 정책의 관점도 K-콘텐츠의 전 세계적 확산을 통한 경제적·산업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결국 콘텐츠의 불법유통과 침해에 대한 우려에 대한 대책을 강조하고 있다고 평가되었다. 따라서 K-콘텐츠의 확산정책과 함께 보호정책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른 지원기관과 달리 한국저작권보호원은 K-콘텐츠의 국내·외 불법유통과 저작권 침해 등을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 콘텐츠 진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타기관과 협업을 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기조와 대내외적 환경 분석 결과, 해외 저작권 보호 체계의 효율화하기 위한 단계적, 장기적 방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중·단기적으로 (i) 해외 저작권 보호 업무에 대한 충분한 파악 등 내실 강화, (ii) 해외 저작권 보호 및 침해대응 등 침해 대응 등 컨트롤 타워 구축, (iii) 국내 저작권 보호 중심에서 해외 저작권 보호와의 균형을 맞춘 체제로 전환이 중요한 과제에 해당되고 이에 대한 향후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i) 해외 국가의 저작권 정보제공 기반 구축 강화, (ii) 권역별 거점 저작권 해외 사무소 신설/확대가 꼭 필요한 과제가 될 것을 판단되어 이에 대한 향후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파일럿 테스트로서 주요국별 저작권무역수지 및 콘텐츠 수출액, 국가별 한류 지수 현황, 주요국가의 불법사이트 서버위치 및 국가별 트래픽, 콘텐츠기업 대상 해외 사무소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설문을 종합하여 향후 저작권 해외 사무소 확대가능 지역을 도출해 보았다. 그러나 해외 저작권 침해 실태조사 등이 면밀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통계나 지표를 활용하여 파일럿 테스트로서 도출된 것이므로 한계가 존재한다. 향후 보다 정확한 침해실태 조사 등의 자료를 가지고 다양한 변수를 활용해서 다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저작권 보호 인식, 교육수준, 법제도 및 기술적 보호조치의 수준이 높아져 과거보다 저작권 불법유통이나 침해가 감소해 갈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해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콘텐츠의 침해는 다크웹, 딥웹 등 저작권 단속을 무력화하는 기술과 장치의 발전으로 인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해외에서의 우리나라 콘텐츠를 보호하고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역할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II. 제언

‘국내 저작권 보호 중심에서 해외 저작권 보호와의 균형을 맞춘 체제로 전환’을 위한 기관 차원의 TF 구성 등을 통하여 해외 저작권 보호 체계 효율화를 위한 기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대하여, 먼저 중·단기적으로 시급히 논의해야 할 것으로 다음을 제언한다.

첫째, ‘해외 저작권 보호 업무에 대한 충분한 파악 등 내실 강화’이다. 저작권 해외 사무소의 업무에 대한 명확한 이해, 직원의 역량 강화 그리고 향후 효율적인 업무 인수인계 등을 위하여 해외 사무소별로 현지의 특성에 맞는 노하우를 축적하기 위하여 ‘업무 매뉴얼’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의 해외사업부 등 본원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 코트라 등 해외 사무소를 두고 있는 유관기관의 업무 매뉴얼이나 업무방침 등을 조사·분석하여 저작권 해외 사무소의 특성에 맞는 업무 매뉴얼 작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후 각 해외 사무소별로 ‘업무 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저작권 해외 사무소의 성과 향상을 위하여 저작권 해외 사무소의 특정에 맞는 성과지표를 만들 필요가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해외비즈니스센터의 경우에는 관련 성과지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해외 사무소가 있는 유관기관의 성과지표

등을 조사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해외 저작권 보호 및 침해대응 등 침해 대응 등 컨트롤 타워 구축’이다. 해외 저작권 보호 컨트롤 타워 체계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파악될 필요가 있다.

(i) 해외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기관 내의 컨트롤 타워이다. 저작권 보호 내지 침해 대응과 관련해서는 상담 업무, 모니터링 업무, 포렌식 업무 등 여러 가지 업무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기관 내에서 이를 총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이다. (ii) 저작권 해외사무소, 저작권해외진흥협회 또는 국내의 권리자로부터 오는 해외 저작권 관련 업무에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이다. (iii) 해외 사무소를 두고 있는 KOTRA 해외지재권실(해외사무소),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비즈니스센터 등 유관기관을 통해 들어오는 해외에서의 저작권 보호나 침해대응 요청에 대응하는 컨트롤 타워이다.

이러한 3가지 기능을 묶을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결국 위의 ①의 경우 기관내의 업무처리방침이나 처리체계 구축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고, ②의 경우 해외사업부 등에 전담창구를 마련하는 것을 통하여, ③의 경우는 기관과의 업무협약이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국내 저작권 보호 중심에서 해외 저작권 보호와의 균형을 맞춘 체제로 전환’이다. 기관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업무에 해외 저작권 보호에 비중을 강화하여야 한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불법복제물신고 COPY112 사이트에 해외 저작권 침해 관련 신고도 업무범위에 명확히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의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응, 해외 저작권 보호 상담도 가능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저작권 침해대응 종합시스템의 경우 침해발견 후 권리자 통지까지는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처리하고, 경고장 발송 등 이후 처리에 대해서는 민간단체인 저작권해외진흥협회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예컨대, 비용지원 바우처 사업 등)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저작권 보호 상담의 경우에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저작권보호 관련 상담 가능한 창구를 마련하여 보다 해외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현재 국내 저작권 보호 중심으로 되어 있는 구조를 해외 저작권 보호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장기적 방안이다. 첫째, ‘해외 국가의 저작권 정보제공 기반 구축 강화’이다. 현지 해외 사무소 및 콘텐츠 기업 대상 인터뷰 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후속 과제로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현지 국가 정보를 담은 ‘해외 저작권 보호 가이드북’ 제작 및 제공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현지 법률정보, 수사기관 및 절차 등의 정보뿐만 아니라

모니터링 업체정보, 주요 대리인 정보 등 현실적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권역별 거점 저작권 해외 사무소 신설/확대방안’이다. 저작권 해외 사무소를 신설하거나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관 차원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해외 사무소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신설에 필요한 근거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준비와 절차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선행하여야 할 것이 있다. 해외 사무소 설치 근거를 마련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콘텐츠 보호를 위하여 우리나라 콘텐츠가 어느 지역에서 어느 정도 침해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해외 국가를 대상으로 한 콘텐츠 불법유통 실태나 저작권 침해 실태조사’가 중요 과제로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 문화홍보원의 재외문화원이나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비즈니스 센터 등 이미 해외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파견 등의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코트라 해외지재권실, 2021년 IP-DESK 백서, 2022.

해외문화홍보원, 2022년 업무계획 참조.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2022. 7.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자료, 2022. 7.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22 글로벌 한류트렌드, 2022.

한국저작권보호원, 주요 저작권 침해국 대상 저작권보호방안 연구, 2021.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산업의 경제기여도 조사, 2021, 9.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조사, 2021.

_____, 저작권 동향 제11호, 2020. 6, <<http://www.copyright.or.kr>>

Eurojust. (2019). Eurojust annual report 2019. Criminal justice across borders. <<http://www.coda-cj.jp/s/2021jigyohoukoku.pdf>>

일본 경제산업성 자료, <https://www.mext.go.jp/b_menu/shingi/bunka/gijiroku/009/0_30101ja.pdf>

일본 문화청 홈페이지, <<https://www.bunka.go.jp/seisaku/chosakuken/index.html>>

유로폴 홈페이지, <<https://www.europol.europa.eu/activities-services/services-support/>>

유로저스트 홈페이지, <<http://www.eurojust.europa.eu/about/background/Pages/mis sion-tasks.aspx>>

The transposition was due by 10 January 2020. See European Commission (2020).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on an action plan for a comprehensive Union policy on preventing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7 May 2020, <https://ec.europa.eu/finance/docs/law/200507-anti-money-laundering-terrorism-financing-action-plan_en.pdf>

EUIPO, Europol (2019). Intellectual property crime threat assessment 2019.

<https://euiipo.europa.eu/tunnel-web/secure/webdav/guest/document_library/observatory/documents/reports/2019_IP_Crime_Threat_Assessment_Report/2019_IP_Crime_Threat_Assessment_Report.pdf>

EUIPO, International Judicial Cooperation in Intellectual Property Cases (STUDY ON LEGISLATIVE MEASURES RELATED TO ONLINE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S), 2021.

Europol.(2020). Viral marketing: counterfeits, substandard goods and intellectual property crime in the COVID-19 pandemic.

U.S. Chamber of Commerce, Global Intellectual Property Center, “Infinite Possibilities, U.S. Chamber International IP Index” (February 10, 2016),

http://www.theglobalipcenter.com/wp-content/themes/gipc/map-index/assets/pdf/2016/GIPCIP_Index_4th_Edition.pdf.

ITU. (2012). Understanding cybercrime: phenomena, challenges and legal response.

<http://www.itu.int/ITU-D/cyb/cybersecurity/docs/Cybercrime%20legislation%20EV6.pdf>.

European Commission. (2020). Report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Asset recovery and confiscation: ensuring that crime does not pay. 2 June 2020.

https://ec.europa.eu/home-affairs/sites/homeaffairs/files/what-we-do/policies/european-agenda-security/202006_02_com-2020-217-commission-report_en.pdf.

‘해외 저작권 보호 체계 효율화’ 를 위한 콘텐츠 기업 대상 설문조사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해외저작권 보호체계 효율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 중입니다. 이에 해외저작권보호와 관련하여 기업의 애로점과 정부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효율적인 해외저작권보호체계 수립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사의 결과는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질의에 대한 모든 응답과 개인적인 사항은 철저히 비밀과 무기명으로 처리되고 분석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조사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설문조사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수행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객원 전문위원(02-2189-2669)

■ **조사기간**

- 2022년 10월 4일(화)~ 11월 7일(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한국저작권보호원은 해외 저작권 보호 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항목)

수집 항목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분야, 휴대전화번호	답례품 발송 및 설문조사 결과 분석	· [분야] 결과자료 분석 및 보고서 작성시까지 · [휴대폰번호] 상품권 발송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상품권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1. 응답자정보

기업명		응답자 성명	
소속부서/직위		연락처	전화번호 E-mail

2. 기업일반정보

2.1 귀사(귀하)가 종업원수(상주)는 어떻게 됩니까?

- | | |
|-------------|-------------|
| ① 1인 창작자 | ② 2명~10명 |
| ③ 11명 ~ 20명 | ④ 21명 ~ 30명 |
| ⑤ 31명 ~ 40명 | ⑥ 41명 ~ 50명 |
| ⑦ 51명 이상 | |

2.2 귀사(귀하)가 종사하고 있는 콘텐츠 분야는 무엇입니까?

- | | |
|------------|------|
| ① 음악 | ② 영화 |
| ③ 방송 | ④ 게임 |
| ⑤ 출판 | ⑥ 웹툰 |
| ⑦ 기타 _____ | |

2.3 귀사(귀하)가 진출한 국가나 진출예정인 국가는 어디입니까??

진출국가: _____

진출예정국가: _____

3. 해외저작권보호

다음은 귀사의 해외저작권 보호 전반에 관한 질문입니다.

※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지원사업을 포함한 그 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지원사업 및 관련제도 전반에 대해 응답해주시기바랍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해외사무소-태국, 필리핀, 중국, 베트남-에 대한 질문은 이후 진행)

3.1 귀사(귀하)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해외저작권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를 활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 3.1.1번 항목으로) ② 아니오(☑ 3.1.2번 항목으로)

3.1.1. 귀사(귀하)가 활용한 해외저작권 관련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해당란에 표시, 복수응답) (☑ 응답후 3.2번 항목으로 이동)

관련서비스	서비스 설명	확인
저작권 관련 정보 취득	- 자문이나 컨설팅이 아닌 홈페이지, 책자, 전화문의, 방문 등을 통한 정보의 취득	<input type="checkbox"/>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차단	- 온라인 불법 유통 사이트 차단	<input type="checkbox"/>
법제조사 및 대응전략 수립	- 저작권 보호, 합법 유통 및 침해대응 위한 현지 법령 및 대응 전략 수립	<input type="checkbox"/>
저작물 수출계약서 검토	- 수출계약시 저작권 라이선스 설정, 권리양도 등 계약의 적정성 검토	<input type="checkbox"/>
침해대응 기술 적용 방안 검토	- 저작권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워터마크 등) 적용 방안 등 기술 대응 전략 자문	<input type="checkbox"/>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을 위한 저작물성 판단, 실질적 유사성 여부 등 감정	<input type="checkbox"/>
경고장 발송	- 침해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한 경고장 발송	<input type="checkbox"/>
소송 (민·형사, 행정)	- 저작권 침해 분쟁 발생시 현지에서의 소송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input type="checkbox"/>
소송 외 대응	- 저작권 침해대응을 위한 현지 구제조치 및 소송외 분쟁 해결절차 등 대응 조치 비용 지원, 저작권 등록 지원	<input type="checkbox"/>

3.1.2. 귀사(귀하)가 해외저작권보호와 관련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응답후 3.2번 항목으로 이동)

- ① 관련기관의 지원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모름
- ② 원하는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음
- ③ 지원신청절차가 복잡함
- ④ 해외저작권보호 관련 지원서비스의 필요성을 못 느낌
- ⑤ 기타 _____

3.2. 귀사(귀하)가 해외저작권을 보호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 ① 현지 정부 기관별 대응 체계 파악의 어려움
- ② 현지 문화 파악의 어려움
- ③ 현지 기관과의 컨택 어려움
- ④ 현지어 능력자 및 현지 로펌 등을 통하지 않는이상 대응 하기 어려움
- ⑤ 기타 _____

3.3. 귀사(귀하)가 해외저작권 보호를 위해 지원되었으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 ① 국내에서 해외 진출할 때 필요한 지원 서비스 확대
- ② 현지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서비스 확대

- ③ 현지 기관 등과의 교류 협력을 위한 전담 데스크(컨택포인트) 확대
- ④ IP-DESK 등 한국에서 해외에 운영하는 기타 해외 서비스와 연계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 ⑤ 기타:

4. 한국저작권 보호원의 해외저작권보호지원사업

4.1. 귀사(귀하)는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지원하는 “맞춤형 해외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前해외저작권보호 이용권 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4.2. 귀사(귀하)는 저작권보호원의 해외사무소를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 응답후 4.2.1번 항목으로 이동)
- ② 아니오 (☞ 4.3 항목으로 이동)

4.2.1. 귀사(귀하)가 이용한 해외사무소는 어디입니까?

- ① 태국
- ② 베트남
- ③ 필리핀
- ④ 중국

4.2.2. 귀사(귀하)가 이용한 서비스는 무엇입니까?(복수응답 가능)

- ① 침해대응(권리자 피해구제 지원: 경고장발송, 등록지원 등)
- ② 교류협력(국제교류활동: 정기포럼 개최, 인식제고 교육지원 등)
- ③ 이용활성화(해외진출지원: 저작권계약 현지지원, 해외동향정보제공 등)

4.2.3. 귀사(귀하)가 이용한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만족 (☞ 4.3 항목으로 이동)
- ② 만족 (☞ 4.3 항목으로 이동)
- ③ 보통 (☞ 4.3 항목으로 이동)
- ④ 불만족 (☞ 4.2.4 항목으로 이동)
- ⑤ 매우불만족 (☞ 4.2.4 항목으로 이동)

4.2.4. 귀사(귀하)가 이용한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4.3. 해외 저작권 사무소 지역이 확대된다면, 어떤 국가에 사무소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은지? 어디를 많이 이용할 것 같은지?

- ① 미주 (☞ 4.3.1 항목으로 이동)
- ② 유럽 (☞ 4.3.2 항목으로 이동)
- ③ 중동/아프리카 (☞ 4.3.3 항목으로 이동)

- ④ 아시아/태평양 (☞ 4.3.4 항목으로 이동)
- ⑤ 기타 _____

4.3.1 그중 특히 원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미국
- ② 캐나다
- ③ 아르헨티나
- ④ 멕시코
- ⑤ 브라질
- ⑥ 기타 _____

4.3.2 그중 특히 원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영국
- ② 프랑스
- ③ 독일
- ④ 러시아
- ⑤ 스페인
- ⑥ 폴란드
- ⑦ 벨기에
- ⑧ 헝가리
- ⑨ 이탈리아
- ⑩ 기타 _____

4.3.3 그중 특히 원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나이지리아
- ② 이집트
- ③ 튀르키예공화국(터키)
- ④ 아랍에미리트
- ⑤ 남아프리카공화국
- ⑥ 기타 _____

4.3.4 그중 특히 원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현재 해외사무소가 있는 국가 제외)

- ① 일본
- ② 인도
- ③ 인도네시아
- ④ 카자흐스탄
- ⑤ 호주
- ⑥ 기타 _____

5. 관련 지원서비스 요청사항

1. 해외저작권보호를 위해 정부에 요구하고 싶은 정책이나 지원제도가 있다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해외저작권 보호체계 효율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 중입니다. 이에 해외저작권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해외 사무소 직원들의 사업 운영상의 애로점, 보호원 및 정부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효율적인 해외저작권보호체계 수립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사의 결과는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질의에 대한 모든 응답과 개인적인 사항은 철저히 비밀과 무기명으로 처리되고 분석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조사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수행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곽현 전문위원(02-2189-2669)
 - 설문지 제출 이메일 주소: hkwak@kiip.re.kr
- (설문응답지는 상기 이메일 주소로 직접 제출해 주시고, 응답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니 편하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응답자정보

해외사무소 지역		응답자 성명	
연락처		이메일주소	

1 해외사무소에 문의 또는 방문하는 사람들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지?

- ① 현지에서 저작권 관련 정보 획득
- ② 현지에서 발생한 저작권 분쟁 상담(컨설팅)
- ③ 현지기업과의 저작물 계약 관련(라이선싱 등) 상담
- ④ 저작권 침해관련 법적 대응을 위한 자문
- ⑤ 기타 _____

2. 사무소를 방문한 사람들의 요청사항이 해결이 되었나요?

- ① 예 (☞ 2.1번 항목으로 이동) ② 아니요(☞ 3번 항목으로 이동)

2.1 요청사항에 대해 충분히 지원해주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3순위까지 응답.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법 제도적 한계
- ② 국가 문화 특성에 따른 한계
- ③ 예산 부족
- ④ 업무 전담자 부족
- ⑤ 현지어 능력 또는 현지 문화 이해도 부족
- ⑥ 기타 _____

2.2. 실무자 입장에서, 방문자들의 요청사항에 대해 충분히 지원해주기 위해 가장 먼저 보완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3순위까지 응답.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침해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 ② 국가 저작권 보호 체계 가이드북 마련
- ③ 담당자별 업무 히스토리 관리 체계 확충
- ④ 현지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류협력 활동 확대
- ⑤ 등

3. 해외사무소에서 가장 많이 지원하는 서비스는 무엇인지?

- ① 침해대응(권리자 피해구제 지원: 경고장발송, 등록지원 등)
- ② 교류협력(국제교류활동: 정기포럼 개최, 인식제고 교육지원 등)
- ③ 이용활성화(해외진출지원: 저작권계약 현지지원, 해외동향정보제공 등)

4. 해외사무소에서 저작권보호 관련 지원을 위해 현지 국가의 관련기관과의 협력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① 예 (☞ 4.1번 항목으로 이동) ② 아니요(☞ 4.2번 항목으로 이동)

4.1. 현지의 어느 기관과 협력하고 있습니까?

4.1.1 현지 기관과는 협력 업무는 주로 어떤 업무입니까?

4.2. 현지기관과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협력의 필요성을 잘 못느낌
- ② 현지기관이 잘 협조해주지 않음
- ③ 기타 _____

5. 해외사무소에서 저작권보호 관련 지원을 위해 현지의 우리나라 기관과의 협력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① 예 (☞ 5.1번 항목으로 이동)
- ② 아니요(☞ 5.2번 항목으로 이동)

5.1. 현지의 어느 기관과 협력하고 있습니까?

5.1.1 현지 기관과는 협력 업무는 주로 어떤 업무입니까?

5.2. 현지 국내 기관과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6. 현지사무소에서는 제공하지 않은 지원서비스로, 기업(개인)이 요청한 해외저작권 보호 관련 서비스가 있다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7. 사무소 실무자 입장에서 업무수행시 느낀 해외 보호사업 발전 방법 및 기존 사업 업그레이드 방법이 있다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연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들은 연구책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한국저작권보호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출판부/우료

93350



9 788994 560625
ISBN 978-89-94560-62-5